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ural Area of Korea

김기홍 · 허태영 · 황명진

연구보고서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김기홍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가격	8,000원

• É • è M w ´ œ

ISBN 978-89-8187-832-0 93330



머리말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겪어 보지 못한 양상으로 저출산·고령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머지않아 순수 인구 감소국 가로 분류되고, 20~30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한 곳 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기감과 더불어 이민정책의 다변화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거시적인 대외적 변수가 대두되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다인종·다문화사회를 겨냥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을 만큼 빠르고 독특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에 대 한 정확한 인식과 현실에 적합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단일민족·단일문화의 분위기에 젖어있었고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왔던 우리 사회는 이렇게 급속히 전개되는 다문화현상 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문화적·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탈농·이촌, 저출산·고령화 로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객관적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젊음과 고학력, 다 양한 경력·배경을 농촌 마을과 지역사회에 재투입, 협동·상부상조 등 으로 특징지어지는 농촌의 관계자원 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농촌을 대상으로 다문화 현상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인정과 재분배의 관점에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에스니시티 관점의 접목과 함께, 우리 농촌의 다문화가족을 특징짓는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통한 저출산 해소나 가족부양의 도구적 관점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원자료를 재분석 해 양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새롭게 도출, 지속가능한 농촌의 다문화사회를 위해 모델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질적 연구로, 현상학적 방법의 충실한 접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본질과 기대본질을 밝혀냈다는 것은 평가할만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임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5
 I. 서론	 37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	42
 II.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농촌 다문화의 특징	 49
제1절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논의	49
제2절 농촌 다문화의 특징	60
 III. 이론적 배경	 73
제1절 다문화주의의 재 고찰	73
제2절 농촌 다문화가족과 지속가능성	93
 IV. 연구 방법론	 125
제1절 양적 접근	125
제2절 질적 접근	128
 V.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재분석	 135
제1절 기초통계분석	135
제2절 실증분석	137
제3절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140

제4절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145
제5절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형분석	147
제6절 소결	164
 VI.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실태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169
제1절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현상학	169
제2절 자료수집과 본 연구의 분석방법	179
제3절 연구결과	185
제4절 소결	204
 VII. 결론	213
제1절 결과요약	213
제2절 제언	222
 참고문헌	227
 부록	239

표 목차

〈표 2- 1〉 국제결혼 추이와 주요 출신국 인구동향	50
〈표 2- 2〉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	53
〈표 2- 3〉 다문화 정책관련 소관부처와 소관부처별 사업내용	55
〈표 2- 4〉 연도별 다문화지원사업 예산 추이	57
〈표 2-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세부추진사항	58
〈표 2- 6〉 최근 국제결혼 추이	61
〈표 2- 7〉 결혼이주여성 and 배우자의 평균연령	64
〈표 2- 8〉 결혼이민자 성별 출신국별 혼인유형	65
〈표 2- 9〉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다문화가족 등록 장애인	66
〈표 2-10〉 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67
〈표 2-11〉 이혼 · 별거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이혼 · 별거이유	68
〈표 3- 1〉 서구다문화주의 담론의 두 흐름	76
〈표 3- 2〉 이민에 대한 이론	90
〈표 3- 3〉 사회 공간적 관계의 네 가지 핵심적 차원들	98
〈표 3- 4〉 일부 국가의 인종 · 국적별 출산율 차이	102
〈표 3- 5〉 농촌거주인 · 농림어업인과 외국여성 혼인비율	103
〈표 3- 6〉 결혼이주여성의 추정 출산율과 비중	104
〈표 3- 7〉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현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105
〈표 3- 8〉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현 배우자와의 기대자녀수	106
〈표 3- 9〉 여성 결혼이민자의 성별, 지역, 혼인상태 및 출신국별 가족구성	107
〈표 5- 1〉 농촌 결혼이주여성 현황	136
〈표 5- 2〉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0

〈표 5- 3〉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2
〈표 5- 4〉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4
〈표 5- 5〉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6
〈표 5- 6〉	측정 변수의 신뢰도분석	148
〈표 5- 7〉	모형1의 적합도 검정	149
〈표 5- 8〉	모형1에 대한 추정치	150
〈표 5- 9〉	모형2의 적합도 검정	153
〈표 5-10〉	모형2에 대한 추정치	153
〈표 5-11〉	모형3.1의 적합도 검정	156
〈표 5-12〉	모형3.1에 대한 추정치	157
〈표 5-13〉	모형3.2의 적합도 검정	160
〈표 5-14〉	모형3.2에 대한 추정치	161
〈표 5-15〉	모형 결과 비교분석1	162
〈표 5-16〉	모형 결과 비교분석 2	163
〈표 6- 1〉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간의 관계	176
〈표 6- 2〉	Colaizzi의 분석방법	181
〈표 6- 3〉	Giorgi의 분석방법	182
〈표 6- 4〉	연구 참여자의 특성	186
〈표 6- 5〉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범주화 결과	196
〈표 6- 6〉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범주화 결과	204

그림 목차

[그림 2-1]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58
[그림 3-1]	Berry의 새로운 문화 적응유형	83
[그림 3-2]	에스니시티에 기초한 유형화	91
[그림 3-3]	에스니시티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92
[그림 3-4]	베리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도식화	96
[그림 3-5]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경험 과정	100
[그림 3-6]	연구분석틀	121
[그림 5-1]	모형 1의 경로도	151
[그림 5-2]	모형 2의 경로도	154
[그림 5-3]	모형 3.1의 경로도	158
[그림 5-4]	모형 3.2의 경로도	162



Abstract

The study is entitled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ural Area of Korea'. This study focuses on rural community which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 very well and further attempts to find out the alternatives of the problems which take plac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the study tries to objectively understand the reality in which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contribute to overcome the problem of rural exodus, low birth rate and aging in rural area. Especially, the purpose of the report is for the fiscal strength by curtailing the welfare expense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self-relia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rural and local communities. Moreover, the report aims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 resources distinguished by cooperation and reciprocity in rural area by utilizing the merits which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have youthfulness, high education and various background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points out beginning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s the views of social capital theory to heighten the sustainability of rural area as well as the ethnicity theory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earnestly in our society.

To support these arguments the study makes an attempt to modelling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ural Area of Korea' through the statistical raw data of '2009 Fact Finding Survey of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was conducted by KIHAS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We could find out the fact that family relation is most of all important and the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social relation along with the fact that family relation, social relation and government policy positively effect on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Specially, in 3 types modellings of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multi-cultural policies are more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social capital than adding their children and these results are the new plans for realizing practically multi 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tries qualitative research to find out the deep structure of settlement and expectation in the view poi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themselves. We could find out what the essences of settlement and expect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re through the faithful approaches of phenomenological method.

In addition, these approaches of phenomenological method are differentiated from applying partly to the time orientation and space orientation which were integrated in one orientation previously.

The essences of experiences in the study are classified into 12 categories which are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marriage, rural area in Korea, cultural gap, weather disparity, isolation, family conflict, children nurture, phobia of violence, double torture as foreigner, economical difficulty, encounter of helpers, rediscovery of hop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speak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futures and their families, after discovered their hopes. These are mentioned as the essences of expectations. The essences of expectations a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which are the reestablishment of identity, active adaptation, the construction of true multi-cultural society, the desperate regards of families, the paradigm change of multi cultural education, the job opportunity, the community support. The essences of expectation in the view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s from first to last to find out the clu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이해를 위해 동화주의 관점,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동화를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도구적·가부장적 사고에 묶인 인식을 극복하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증진은 물론, 이들의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는 길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강화해 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핵심목적이다.

2.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흐름을 소개하고, 현재 지배적인 특징으로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에 대해 우선 설명하고, 다문화의 배태성(embeddedness)과 다문화 논의에 에스니시티(ethnicity) 이론의 접목 필요성, 성공적 적응에서 성공적 정착으로 전환, 결혼이주여성과 저출산 고령화, 결혼이주 여성과 사회자본,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링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을 위한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통계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분석방향 등에 대해 간단히 요약정리했다.
- 제Ⅴ장에서는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해 모델링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체 15만4,000명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13만1,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중 7만3,000여명에 대한 방대한 조사로 이중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지역에 국한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 AMOS 분석을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 제Ⅵ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지역 1개면(面)을 정한 뒤 그곳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가족들과의 개방형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정착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기대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양적·질적 분석 결과를 재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II.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농촌 다문화의 특징

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논의

가. 다문화사회의 도래

- 우리나라의 다문화현상은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다문화정책도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통계청 인구동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경우 1991년 ‘한국남자+외국여자’는 연간 663건, ‘한국여자+외국남자’는 4,349건으로 월등한 격차로 ‘한국여자+외국남자’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1992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사례가 2,057건으로 급격히 늘고 ‘한국여자+외국남자’는 3,477건으로 줄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 특히 이후 1995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국제결혼 건수가 1만365건이었고, ‘한국여자+외국남자’의 경우는 3,12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두 단계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로 1992년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특징짓는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나. 기존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

-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30여만명은 전체 인구 4,950만명 대비 2.6%에 불과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12%이며 전체 인구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인구 중의 외국인비율이 10%정도에 도달할 때 다문화사회로 인식하는 국제흐름과 비교할 때 통계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다

문화현상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논의 내용은 사회학·정치학·법학·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 최정혜는 2005~2010년까지 발간된 65편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연구’가 23.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연구’와 ‘문화연구’가 각각 18.5%, ‘한국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15.3%,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13.8%,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및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10.8%로 순이라고 밝혔다. 연구방법의 경우 계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 연구는 전체의 1/4정도로 조사됐다.
-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이 하나의 주요 흐름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춰 9개 정부부처에서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내놓으며 적응을 돕고 있다. 예산의 경우도 2006년 12억원에서 2011년 1,162억원으로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각 시군별로 설립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다문화가족관련 모든 내용을 원스톱서비스하기 위해 계속 늘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관련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관련 접근방법이 비효율성에다 지속성이 없어 오는 2018년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현실진단과 함께 이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도출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2. 농촌 다문화의 특징

- 이 같은 현실적인 지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천착했다. 이는 농촌다문화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써 향후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모델링을 하기 위함이다.

- 2010년 출간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 실태를 알아본 결과 그 특징은 관계의 비대칭성(asymmetry)으로 요약됐다. 비대칭성은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각 거래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이 농촌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사이에서 강하게 존재함을 발견했다. 특히 비대칭성은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간의 나이차이, 혼인형태, 장애빈도, 경제상태 등에서 잘 나타난다.
- 비대칭성은 당초 정보나 자원의 불평등에서 기인했지만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인정-투쟁의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자기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통해 주류사회와 관계를 역학적으로 파악하는 에스니시티(ethnicity)에 입각해 재조정됨을 알 수 있다.
- 현재 별거나 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급증하는 것은 일종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나 자원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인정과 분배적 정의가 가능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모색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I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재 고찰

가. 다문화주의: 반다문화주의를 넘어서

-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요 이민국가들의 동화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월 김리카와 실존철학에 기초해 인정의 정치학을 중시하는 찰스 테일러로 대표되고, 양측의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들면서 미국의 9.11테러와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 반다문화주의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문화사회의 실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다문화주의 분위기는 일자리감소와 복지축소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와 맞물려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인적 물적 교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통합된 시각으로 보는 접근이 절실하다.

나. 다문화현상의 배태성

- 인류역사상 단일민족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전쟁·정복·이주·교류·이산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도 순수혈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백의민족 혹은 배달민족으로 일컬어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민족이 다문화성을 갖고 있어 이를 다문화의 배태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다문화주의: 에스니시티(ethnicity)

- 다문화주의의 관심은 무엇보다 주류사회가 중심이 돼 어떻게 이민자나 이주자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이다. 여기에서 베리의 이주민이나 이민자의 정체성 지향·태도적 차원, 테일러와 김리카의 인정·재분배의 관점, 공간을 기초로 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해 다문화주의

를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 ‘ethnicity theory’이다.

- ‘ethnicity theory’은 주류사회의 사회구조와 관계방식에 이민자와 이주민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에스니시티(ethnicity)이론은 소수자(minority)가 어떻게 자신을 위치 지으며, 어떤 정체성과 지향성을 갖고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가를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 에스니시티는 다른 집단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공통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주관적으로 동일시된 집단을 의미하며, 특히 지배집단이나 주류사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종속화되고 단편화된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다.
- 에스니시티의 이론적 관점이 갖는 장점은 인종이 가지는 차별주의의 정치적 색채를 극복하고 정치적·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으로 서 이뤄지는 시민적 민족형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인종·종족·민족을 포괄하는 정치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초개념도 제공한다.
- 이러한 인식은 결혼을 계기로 이주한 뒤 문화적 적응을 거쳐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하는데도 유용성을 갖는다. 특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은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주류사회와 관계를 가지며 어떤 문화적 정체성과 개인적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정착형태가 결정된다.
- 에스니시티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해 다문화사회를 보다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안으로 유형화가 있다. 에스니시티에 기초한 유형화는 정치나 법, 제도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사회구조적 측면과 지역사회·공동체에서의 개인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포함하는 사회관계적 측면을 교차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평등-동화형’, ‘평등-이화형’, ‘계층-동화형’, ‘계층-이화형’이다. 이를 통해 에스닉 그룹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을 한층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2. 농촌 다문화가족과 지속가능성

가. 성공적인 적응에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 1980년대 말부터 시작돼 1990년대 초 본격화된 다문화사회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대책은 이질적인 타자를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생소한 국내의 문화적 조건에 적응시킬 것인가, 즉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의 일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다문화사회를 염두에 둔 각종 정책도 어떻게 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둔다.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겨냥한 노력이라기보다 동화주의의 연장선상이다. 이 관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과 지향성, 즉 에스닉 집단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문화의 일방적인 전파과정에 불과하다.
- 그러나 이들이 실제 밭을 딛고 살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도시이든 농촌이든 지역적 공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 공간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 적응에서 더 나아가 뿌리내리는 과정, 즉 정착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요망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적응’과 ‘정착’을 구분할 뿐 아니라 적응을 ‘시간적 속성’으로 놓고, 정착을 ‘시간+공간적 속성’으로 파악함으로써 다문화현상으로서 정착을 적응보다 한 단계 진척된 개념으로 보고 설명을 시도코자 한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적응(適應)’은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즉 ‘개체가 환경에 대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적응(adjustment)’과 ‘개체가 환경적 조건에 점차 익숙해지는 적응(adaptation)’이다.
- 그러나 문화적 적응을 넘어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이 지역

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응과정에서 더 나아가 정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노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착(定着, settlement)’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불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으로 정의된다.

-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는 적응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자조집단의 형성과 지지망의 확대를 체험하는 곳이며, 또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의 장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는 가까이에서는 개인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 조직과 단체는 물론 본국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모색되는 곳이기도 하다.

나. 다문화가족과 저출산·고령화

- 2010년 발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자세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은 평균 0.9명으로, 농촌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은 1.1명이고 도시로 분류되는 동지역에서는 0.8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자녀수는 현존 자녀수와 추가희망자녀수를 더한 기대자녀수를 통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현 배우자와의 전체 기대자녀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1.7명이고 동 지역은 1.3명이다.
- 이는 본국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다. 당초 저 발전국에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출산율이 본국의 비슷한 연령대의 정도는 아니지만 현 수준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다. 다문화가족과 사회자본

-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실 최근에는 경제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발전’ 보다 종합적이고 합목적인 미래구현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국 다문화사회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각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기 때문에 도래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성과 다문화사회’는 그 자체로 관련성이 높다.
-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기초해 방안을 모색할 때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접근할 경우 구조체계를 논하면서 배제됐던 개인을 부각시킬 수 있고, 제로섬-게임(zero sum-game)으로 인식되는 에스닉 그룹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가족과 주류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관계와 협력, 참여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실제로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수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효라는 전통적 가치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족은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적인 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체 구성의 단위로서의 가족을 지탱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 결혼이주여성은 마을단위에서도 지도자로서, 혹은 마을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모임은 농촌의 자발적 결사체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
- 사회자본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에 국한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각을 가족·마을·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자

본을 한층 두텁게 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재정투입으로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과도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물론 주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다문화교육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라.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구성

-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델은 결혼이주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지역사회가 중심을 잡고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사회의 현안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 지역사회가 결혼이주성들로 인해 태동하는 다문화사회를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면 신뢰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이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곧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한 모델이 된다.

IV. 연구 방법론

1. 양적 접근

- 본 연구에서는 양적접근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재분석했다. 이 원자료는 결혼이주여성 전체 15만 4,000여명 중 7만3,000여명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조사결과다.
-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제한적인 변수만을 선정해 재분석하는 통계적 접근을 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인 만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변수인 국적·학력·연

령·결혼기간·한국어능력·취업상태·생활수준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다.

-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통계에 대한 빈도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의 현재 자녀수와 출산의도, 자녀유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analysi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했다.
-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모델링은 3단계로 나눠 구조방정식 모형인 AMOS 경로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1단계로는 성공적 정착을 알아보는 것으로, 가족과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매개변수로 해서 삶의 만족도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2단계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를 바탕으로 현재 자녀수와 사회참여의지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한 것으로 성공적인 정착, 즉 삶의 만족도를 높여 저출산 고령화 완화와 사회자본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자 했다.

2. 질적 접근

- 본 연구에서는 양적접근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촌지역인 면 단위 1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농촌의 읍·면 단위별로 결혼이주여성은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른다.
-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의 어떤 면 단위의 어느 한 마을에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와 정착했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정착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계적 접근으로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맥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계획하는지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많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 무엇보다 가족관계, 이웃·주민들과의 관계, 모국과의 관계, 이주여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출산과 양육, 사회자본 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 이러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적합성과 접근 용이성, 효용성 등을 고려,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농협다문화대학을 통해 20여명 안팎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인 ○○시 ○○면을 최적으로 판단했다.
- 이곳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8~9개국으로 다양하고 거주 기간도 20여년에서 최근 2~3개월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다. 또한 사과주산지로서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과 농공단지 및 아파트 단지도 인근에 조성돼 있는 등 도시의 속성도 병존하는 곳이다.
- 본 연구에서의 질적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5월16일부터 7월말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면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명과 다문화 가족 22명을 만나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사항과 배우자·시부모 등 가족사항, 본국의 부모와 형제와 관계, 직업경력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핵심질문으로 접근해 갔다.
- 2단계에서는 1차 인터뷰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결혼이주여성 20명으로 대상을 좁힌 뒤 질적연구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전문 면접자에게 의뢰, 추가 면접을 실시했다.

V.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재분석

1. 기초통계분석

- 분석은 SAS 9.1 통계패키지를 활용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주자 2만2,788명의 국적은 베트남이 9,056명(39.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 4,928명(21.63%), 필리핀 2,847명(12.49%)로 전체 5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중학교 6,682명(29.32%), 고등학교 8,807명(38.65%)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은 3,880명(17.03%), 대학원은 243명(1.07%)으로 20% 정도가 고학력자였다.

2. 실증분석

- 전국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경우 출산의도가 ‘있다’ ‘없다’, 현재 출산 여부 즉, ‘출산’과 ‘미출산’의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인 경우 적용되는 분석방법이다.
-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포아송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현재 자녀수는 셀 수 있는 가산형 자료(Count data)로서 일반적으로 포아송분포를 가정한다. 포아송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에서는 종속변수를 포아송분포를 따르는 가산형 자료로 가정한다.

3.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향후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포아송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한국어능력, 취업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해 현재 평균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현재 평균 자녀수가 많았다.

4.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참여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적합성을 판단한 결과 F-value=36.16($p<0.01$)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0378로 본 모형은 3.78%의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 요약하면 몽골, 태국,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여성, 이주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학력일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참여의지가 높은 반면, 중국(조선족), 대만,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의 이주여성으로서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참여 의지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형분석

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모형1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으며,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경로분석은 AMOS 7.0을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가족관계 0.833, 정부지원 0.870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기준인 0.7이상으로 높

게 나타나 가족관계와 정부지원 변수들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회관계 변수는 신뢰계수가 0.607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고려한 결과 가족관계(0.588, C.R=97.835), 사회관계(0.043, C.R=7.066), 정부지원(0.02, C.R=4.695)순으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모형2

-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일반적 사항과 삶의 만족도가 기대 자녀수(현재 자녀수+희망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모형2는 8개의 지표 중 GFI, AGFI 2개만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설정된 모형2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료가 연구목적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모형 3

-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사항, 즉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및 삶의 만족도가 기대 자녀수(현재 자녀수 + 희망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적합 지표인 8개의 지표 중 GFI 1개 지표만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설정된 모형 3.1은 본 연구의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소결

- 모형1에서는 가족관계가 무엇보다 우선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중요성이 큼을 보여준다. 모형2와 모형3의 경우 모형적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2를 통해서는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 생활수준 등을 바탕으로 한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사회참여의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자녀출산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모형3을 통해서는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정부지원 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 변수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의지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혹은 만족도에는 가족관계가 절대적이고, 사회관계나 정부지원도 일정정도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를 모형3.1, 모형3.2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높여 지역사회 유지와 농촌 활성화에는 분명한 효과가 기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모색할 경우 참여와 사회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VI.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실태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1.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현상학

가. 질적 연구의 개요

- 질적 연구는 앞에서 통계적 연구를 통해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후 맥락과 함께 현 시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정착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장의 질적 연구를 통해서 는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서 ‘경험의 본질’과 ‘기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연구목적에 부응코자 한다.

나. 현상학적 접근의 질적 연구방법

1) 질적 접근의 특성

- 오늘날 현상은 다양화되고 변화는 더욱 속도가 빨라져 형식적 적합성을 갖는 방법로만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더욱이 이제는 사회과학 내에서도 객관성은 양적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인식론적 오류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 양적 접근의 한계를 질적 접근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양적이냐 질적이냐, 어느 쪽이 적합성이 높고 유용한 방법이나를 논하기 전에 급변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탐구를 위한 방안으로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2) 현상학의 정의

- 후설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의식의 흐름, 즉 인간의 사유과정을

탐구대상으로 설정했다. 의식의 흐름과 사유과정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의식코자 하는 지향성(orientation)으로 귀결된다. 쉽게 표현하자면 후설의 현상학은 순수한 본질세계를 지향성의 원리에 의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이러한 후설의 현상학적 전통은 질적방법론을 추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받아들여져 현상을 분석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옴니(Omey)의 경우 “현상학은 살아있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실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명상적 사고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다. 또 벤 마넨(Van Manen)은 “각자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생활세계’ 내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과 외양에 대한 연구이고, 그들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해했다.

3) 현상학적 방법론의 이해

- 현상학적 방법론은 사물의 본질 ‘사태 그 자체’를 순수하게 직관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태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선 요구되는 것이 현상학적 판단중지(Epoche, 괄호침), 현상학적 환원이다.
- 현상학적 방법론에서 핵심은 지향성(orientation), 즉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다. 보통 지향성은 어떤 대상(노에마)에 관한 사고작용(노에마)으로, 인간의 경우 반드시 ‘무엇에 관해 의식’을 하는 사고를 뜻한다. 인간의 의식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체험을 통해 명확하게 된다.
- 현상학에서 중요개념인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개인이 사회

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상호주관성은 타자가 자아와 똑같이 주관을 갖고 존재하고, 동시에 타자가 자아와 똑같은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자아의 확신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주관성은 자아와 타자의 단순한 상호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갖고 있는 확신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상호존재에 대해 확신을 인식할 뿐 아니라 객관세계·문화세계·역사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윤리와 엄격성

1) 연구윤리

- 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윤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익명처리를 통한 비밀유지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학문적 용도로만 활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셋째, 본 연구자 외, 연구관계자 소수만 인터뷰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달해 동의를 얻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 자기고찰을 통해 인터뷰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했다. 보다 심도 깊은 차원에서 연구 참여자의 솔직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현장에서 rapport 형성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두고서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2) 엄격성

- 본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바와 링컨(Guba &

Linchon)이 엄격성 척도로 제시한 사실적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 등을 참고했다.

2. 자료수집과 본 연구의 분석방법

가. 자료수집

- 자료수집은 2011년 5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1차 인터뷰가 진행됐고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2차 인터뷰를 진행, 모두 2회에 걸쳐 이뤄졌다. 본격적인 인터뷰 이전에 본국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나 남편, 시부모와 관련된 내용은 사전 인터뷰 형태로 진행해 각 참여자를 둘러싼 전후 맥락과 환경을 파악하는데도 힘썼다.
- 인터뷰 동안 언어적 진술은 물론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 대해 녹음기로 녹취하는 동시에 상황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모든 상황은 방문일지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

나. 분석방법

1) 기존의 현상학적 방법

-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Colaizzi, Giorgi, Benner, Vanen, van Kaam, Moustakas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돼 왔다. 이들이 개발한 현상학적 접근은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크게 나뉘어 i)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피연구자)의 체험을 확보하는 자료수집과정, ii)수집된 연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iii)연구자료 수

집과 분석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2) 본 연구의 분석방법

- 후설은 『경험과 판단』에서 본질직관의 방법으로서 중요한 세 단계를 제시했다. 즉 i) 다양한 변경체를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모두 살피어나가는 과정, ii) 지속적인 일치 속에서 [모든 변경체에 공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직관하는 과정], iii) 차이점들을 배제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직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본질직관 방법은 인간의 본질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지향성의 본질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후설의 본질직관 과정을 ‘지향성’, 즉 ‘의식의 흐름’을 현상학적 접근법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기존의 현상학적 접근법이 연구대상자의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범주화해 주제를 발견하는 것에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작용하는가를 함께 보고자 했다.
- 지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본 연구에 적용했다. 여기에서 시간지향성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규정되고, 공간지향성은 자이지향에서 타지향으로, 집단지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범주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은 상호주관성의 원리를 통해 구현되고 항상 맞물려 작용하는 것이다.

3. 연구결과

가. 연구참여자의 특징

-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모두 22명이었다. 1차 심층면접 후 녹취한 원자료의 필사(transcription)를 거친 후 추가 면접에서는 다문화가족, 즉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 정보제공자를 제외한 결혼이주여성 20명에 대해서는 2차 심층면접을 했다.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20명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적별로 분류하면 몽골 1명, 필리핀 2명, 베트남 9명, 중국 4명(한족 2명, 조선족 2명), 태국 1명, 러시아 1명, 싱가포르 1명, 일본 1명 등이다.

나. 인터뷰결과

1)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구체화되는데 모두 139개 의미단위에서 12가지의 주제 군으로 분류됨을 발견했다. 각 주제군은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갈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가지 주제군은 순서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 정도 주제 군으로 경험이 다양화됨을 의미한다.

2) 결혼이주여성의 기대본질

-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게 되는 기대의 본질은 모두 62개의 의미단위에서 7가지의 주제 군으로 분류됐다. 즉 ‘정체성

의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배려
절실’,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 바뀌야’,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사
회 참여’ 등이다.

4. 소결

- 행정구역인 면(面) 지역 전체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을 심
층면접해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이 같은 질적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선정된 사례지역이 우리나라 농촌 결혼이주여성
의 경험과 기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적합한지의 대표성 문제, 둘째,
한국말에 능숙하고 한국 정서를 잘 아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
이 많이 반영된 점, 셋째, 현상학적 방법론의 절차를 충실하게 따랐
더라도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 그럼에도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양적연구 위주인 현실에서 이들의 경험과 기대본질을 파악
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한 뒤 현상학적 연구에서 중시하는 지향성에
맞춰 이들의 의식세계를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파악코자 했다
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VII. 결론

1. 결과요약

- 앞으로 계속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족은 늘 수밖에 없어 다문화사
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반다문화주의가 강
화되는 등 그동안 고수돼 왔던 다문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스니시티의 관

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에스니시티는 주류사회의 민족이나 국민 등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이나 결혼이주여성 등 에스닉 그룹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주류사회와 보다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착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각을 갖게 한다.

□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도래했고 지금까지의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촌의 다문화현상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비대칭성이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차후 당사자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갈등 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다문화주의의 주요 담론인 인정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노력과 에스니시티 관점에서 접근이 절실하다.

□ 본 논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완화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회자본의 관점은 도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동화주의에 국한된 다문화주의의 인식을 뛰어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국내의 전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13만3,000여명 가운데 7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조사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분석할 경우 어떤 통계적 접근보다 신뢰할 만하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모델의 적합성을 다양하게 검토해 봤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읍·면단위 이하의 농촌에 해당하는 사례 2만2,788명으로 국한해 분석을 진행했다.

□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먼저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국적·연령·거주기간·학력·한국어능력·취업여부

생활수준 등의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그 결과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쳤다.

-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모형의 적합성은 3단계로 나눠 살펴봤다. 즉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1단계, 삶의 만족도가 현재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2단계,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한 3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적합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 하지만 이 같은 통계적 접근에서는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이 모두 만족도 제고와 성공적인 정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이어 사회관계의 강화 필요성도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 특히 모델링 작업을 통해 파악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은 자녀수 증가보다 사회참여 의지를 높여 결국은 사회자본 강화에 훨씬 기여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향후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이들이 겪는 경험의 본질이 무엇이고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을 기대하는가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현상학적 분석을 했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분석결과에 대해 현상학의 핵심인 지향성을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으로 나눠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본질은 경험적 차원과 이들이 경험을 통해 갖는 기대로 크게 내용은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 경험적 차원의 본질은 다시 12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즉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

갈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대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대본질은 ‘정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 배려절실’,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뀌야’, ‘일자리확대절실’, ‘지역사회단체 참여필요’ 등 7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본질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 처음이자 끝이다.

2. 제언

-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구축
 -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웃·마을·학교·사회단체·사회적기업·다문화가족네트워크·자원봉사자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고 다문화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이 곧 아래로부터 상향식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자본 재구축
 -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중점 설명했다. 농촌사회가 유지·발전되려면 일정 정도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족의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

□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 선결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현재 이민청 혹은 인구청 설립을 고려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농촌의 다문화가족 문제만이라도 먼저 해결한 후 앞으로 대두될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농촌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상당수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으로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필요

- 각 사·군 단위에서 설립돼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하는 농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km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접근조차도 불가능하다.

□ 결혼이주여성 도우미, 자원봉사자,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소통하고 언제든지 가족갈등이나 사회적 차별, 경제적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근거리에서 상시접촉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면 단위에 1곳 정도 ‘다문화사랑방’ ‘다문화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 상호주의적 입장에서의 다문화교육으로 이해 제고

- 현재 다문화교육은 일방적인 동화주의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쌍방향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스닉(ethnic) 관점에서 결혼이주성을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 정착에는 가족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연구의 제V장에서 명확하게 검증됐다. 따라서 가부장적, 도구적으로 형성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시부모 등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

-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결혼이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진척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된다.

□ 상시 통합프로그램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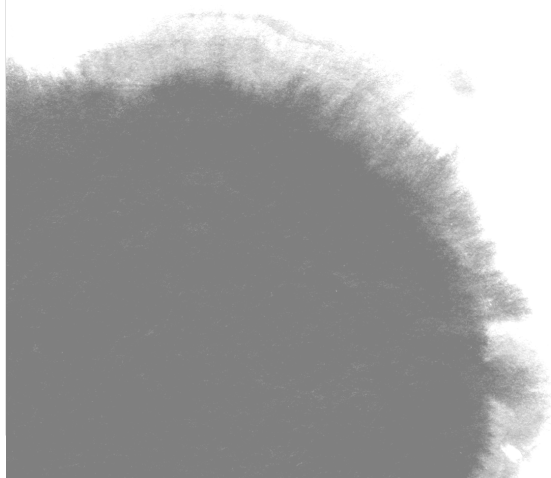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결혼이주여성들은 학력·경제·나이·출신국·종교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보니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적 매개체 없이는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한계가 있고 불안정성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교하고 상시적인 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농촌지역에 정착함에 있어 일정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 양육과 함께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지원하면서 농촌에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는 현실적인 문제다.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정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지는 20년 안팎이다. 다문화사회로 전환한 시점을 1992년 한중수교로 잡는다면 올해로 20년째이고, 외국 인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본격 일자리를 잡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25년 됐다.¹⁾ 국적법이 강화된 1998년을 기점으로 보면 15년에 이른다.

오늘날 외국인과의 결혼은 매우 흔한 일이다. 2005~2010년 통계를 보면 해마다 전체 결혼 건수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15%를 차지할 정도다. 읍·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경우 2008년부터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은 30~40%에 달하는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²⁾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수년전부터 다문화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체 사회에서 고루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인식론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도 많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인식론상의 수준에서는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적 시각이 강

- 1) 최종렬은 충북 옥천군의회가 1993년 조선족여성성과 농촌총각의 결혼을 처음 주선하면서 국내의 다문화정책이 시도되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2010: 246).
- 2) 통계청의 201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농업·어업종사 남성 5,971명 가운데 33.9%인 2,023명이 외국인여성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8%였던 농업·어업종사 국제결혼비율은 2006년 42.5%로 가장 높았고 2007년 41.4%, 2008년 38.3%, 2009년 35.2%, 2010년 33.9%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도 이를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으로 한정하면 37.5%로 높아져 40%에 육박한다.

하게 남아있다는 점이다. 자문화중심주의는 일정부분 모든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사회는 대상을 인식할 때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나누고,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유리하도록 행동하는 경향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론상에서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게 현실적 인식이다. 이는 혈연·지연·학연중심의 연고의식이 우리사회의 기저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정관념에 기초한 사고는 편견으로 이어지고 차별로 발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배제와 폭력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더구나 이런 사고로 인한 사회문제들은 다민족사회,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요구된다.

또, 방법론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문제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 지나치게 외부로 드러난 피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와 관련해 이뤄지는 대책을 보면 편의적이고 임의적이며 인기영합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한국어교육과 문화강좌,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들을 주변화 시키는 각종 행사, 일반적인 통계치에 근거한 다문화 실태연구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담론이 있었다. 하지만, 자문화중심적인 사고의 개선이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정책수립 등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데서 접근방법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진척이란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이제 다문화사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³⁾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농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사실 농촌의 다문화 현상은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질적인 특성의 혼혈아동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의 학교가 늘고 있는 현실은 실상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농촌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 다문화가족은 이중삼중의 편견에 봉착해 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농촌 노총각에게는 ‘무능력하며 지적·신체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등 우리 내부에도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또 농촌의 결혼이민여성에게는 ‘못사는 나라 출신’, ‘돈 때문에 온 사람’이라는 인식 등이 팽배해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다문화가족 내부에서도 따리를 들고 있다. 이는 다문화 가족 내의 심각한 불신·갈등·폭력 등으로 종종 표출되고 있다.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별거와 이혼, 심지어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더구나 국가나 지역사회는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가족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은밀한 개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 속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대해 몰이해의 극치이며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가족의 이해를 위해 동화주의적 관점,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동화를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농촌과 도시가 수렴되는 추세지만 차이도 엄연한 만큼 본 연구에

3) 엄한진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수가 늘면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다문화’ 담론의 확산에 대해 또 다른 압축적 성장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열광의 분위기에서 차분한 성찰과 체계적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2011: 5).

서는 어느 영역보다 연구가 부족한 ‘농촌’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농촌은 젊은 층의 탈농이촌으로 이미 오래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다 후속세대 단절로 공동체 유지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⁴⁾ 농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해 단순히 노총각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이로써 생물학적 욕구충족과 가계의 계승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해 왔다.

근자에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각되다 보니 다문화 가족의 증대가 저출산고령화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새삼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국내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최근 10년 이상 1.2~1.3명 수준에 머물며 머지않아 인구감소는 물론,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층으로 인해 국가체제의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자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해법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거나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다분히 편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사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인구증가나 노동력부족 해결을 위해 도구적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여성론자나 인본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인구감소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

4)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중위연령은 55.7세로 전국 평균 38.1세보다 17.6세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1.8%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1.3%에 비하면 2.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의 30~34세 미혼율은 71.7%로 같은 연령 전체인구의 미혼율 50.2%보다 21.5% 포인트 높았고, 35~40세 미혼율도 42.8%로, 전체인구 26.7%보다 16.1%포인트 웃돌았다. 심지어 생애독신으로 간주되는 45~49세 미혼율은 8.9%에 달해 농촌의 고령화와 함께 후속세대 단절에 따른 위기양상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1).

결혼을 장려하거나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보다 많은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의 전체인구 4,950만 여명 가운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30만 명으로 2.6%에 불과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국내에 체류외국인의 12%, 전체인구 대비해서는 0.3%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고 증폭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인 현안이라면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또한 적절한 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자아실현과 행복증진도 매우 중요하다. 도구적·가부장적 사고에 묶인 틀을 깨고 결혼이주여성과 이민자들의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행복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는 길임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 이민자들이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해체일로인 농촌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강화해 갈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사회자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살펴 앞에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최근 농촌의 결혼이민여성 증가추세는 주춤하지만 수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다. 국내의 여성들이 농촌으로의 결혼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즉 국내 여성들이 농촌 총각들과의 결혼을 기피하다보니 불가피하게도 외국인 여성들을 통한 국제결혼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지원센터가 이들의 정착을 돕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영농교육 등을 통해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농협 등 지역사회 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과거 정부주도의 정착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상황에 적합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농촌의 현실은 일반적인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다. 농촌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방적인 관점에서 적응을 강요당하고 고립돼 있으며 부당할 정도로 감시를 받기도 한다. 또한 못사는 나라 출신이라는 스티그마(stigma)로 인해 인격적 모독 등으로 적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다문화를 통해 공존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되고, 언론에서는 특집기사 등을 통해 한층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농촌 다문화가족이 실제로 처한 본질적 상황은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결혼의 이중성·도구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이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사실 국내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독특하다. 대부분 이주여성들은 애초에 사랑을 매개로 일정기간 동안 교제를 한 뒤 삶의 동반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상황적으로 절박함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선택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돈을 매개로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사된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평균 10살 정도 위인 고령의 남편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 이주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착을 위한 당연한 교육이나 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많은 이주여성들은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있다. 결혼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출산의 압박을 받게 되고, 결혼 직후 출산을 당연시되고 있다.

출산은 가족의 계승차원도 있지만 결혼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고 양육에 몰입하는 구조를 만들며 다분히 결혼자체를 도구화로 흐르게 한다. 결혼과정에서 돈을 매개로 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은 꾸준히 유입되고 이러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은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이는 밖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방식은 구조화되고 그 속에서 불만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나 지역 사회의 관심,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표출되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안돼 일반화되기도 한다. 그러한 양상은 이주여성들의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취업활동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가·가출·귀국·이혼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물론 상당수의 이주여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도구화된 가부장제의 조건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했지만, 삶의 새로운 출발점

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양상의 가족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더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의 탄생’은 초 고령화에다 차세대 유입이 되지 않아 공동체 유지자체가 어려운 농촌마을을 변화시켜가는 핵심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예를 들어 50명이 거주하는 평균 연령이 70대인 마을에서 2~3가구 더 나아가서는 4~5가구 다문화가족의 탄생은 마을전체를 인구구성 면에서는 물론 마을공동체 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만큼 큰 힘을 갖는다. 현재 농촌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추세를 보면 절반 정도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영향력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 현상은 맥락이 다소 다르지만 인구사회학자인 Philip Hauser의 인구내파(population implosion)개념으로도 설명된다.⁵⁾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류가 전 지구적으로 자유화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고국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갖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모한 결혼생활이 아니라 개방체계(open system)속에서 이뤄지는 게 결혼이다.

더욱이 이러한 국제결혼에 비대칭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대칭성을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결혼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대칭성을 바로잡는 노력이 정착과정이고 그 결과는

5) 인구내파(population implosion)란, 특정지역에 인구가 집중하는 인구가동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하우저(Philip Hauser)는 인구내파를 통해 발전도상국의 과대도시(hyperurbanization)나 종주도시(宗主都市)가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에다 인구이동의 지구화로 인구구성의 양적·질적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의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특히 농촌의 마을단위나 특정 지역단위에서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이 집중하면서 공동체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시계열적인 접근이나 질적 연구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명확하게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인구내파를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정도로서 가능성만 제시해 향후 추가연구의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농촌 다문화 사회의 현 주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을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에만 맡겨두기 보다 사회적으로 함께 부담을 공유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선 제Ⅰ장에서 연구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가 도래한 과정에 대한 서술과 함께,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흐름을 소개코자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현상에 대한 특징이 자연스럽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에 대해 우선 설명하고, 다문화현상의 배태성과 에스니시티(ethnicity)에 기반한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적인 적응에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관점의 전환은 물론, 실천방안의 변화를 모색하고 결혼이주성과 저출산 고령화, 결혼이주성과 사회자본,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링 구성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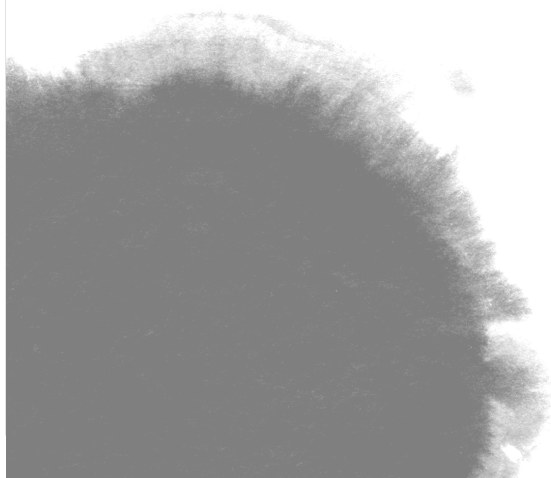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분석방향 등에 대해 요약정리했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관점에서 주요 변인을 파악코자 했다. 통계적 분석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했다.

제Ⅵ장에서는 양적 분석을 보다 심화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시도했다. 질적 연구는 심층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지역 1개면(面)을 정한 뒤 그곳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가족들과의 개방형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정착과정에서 경험의 본질과

기대의 본질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 방안으로 현상학적 방법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다.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양적·질적 분석 결과를 재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코자 했다. 또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를 최대한 끌어내고 이 함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2장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농촌 다문화의 특징



II.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농촌 다문화의 특징

제1 절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논의

1. 다문화사회의 도래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시점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순혈주의를 지향했던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추세에다 3D업종에 종사를 꺼리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인종·종족·민족적 배경을 가진 동남아시아와 중국 조선족 노동자들이 급격히 유입됐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의 경우 국내에서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산업인력 수급차원에서만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이나 법적·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이방인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반해 1990년대 들면서 농촌에서는 ‘노총각 장가보내기’가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다문화사회는 가시화 됐다. 당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농촌총각의 배우자로서 유입되며 다문화사회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성지혜의 대구 효성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과 1998년 김애령의 충남지역연구 등에서 확인된다(김혜순, 2008: 45).

이처럼 우리나라의 다문화현상은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모든 다문화정책도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추진되는 게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결혼이주여성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에 국한해 국내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 인구동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경우 1991년 ‘한국남자+외국여자’는 연간 663건, ‘한국여자+외국남자’는 4,349건으로 월 등한 격차로 ‘한국여자+외국남자’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1992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사례가 2,057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한국여자+외국남자’는 3,477건으로 줄었다. 이때 우리나라 다문화사회를 특징짓는 의미 있는 변화가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후 1995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국제결혼 건수가 1만365건이었고 ‘한국여자+외국남자’의 경우는 3,12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두 단계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로 1992년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특징짓는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표 2-1〉의 통계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 2-1〉 국제결혼 추이와 주요 출신국 인구동향

구분	한국남자+외국여자					한국여자+외국남자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1991	663	224	106	232	101	4,349	2,297	156	1,680	216
1992	2,057	1,223	429	249	156	3,477	1,747	137	1,335	258
1993	3,109	826	1,851	230	202	3,436	1,818	185	1,127	306
1994	3,072	561	2,043	227	241	3,544	1,978	141	1,109	316
1995	10,365	1,412	8,450	188	315	3,129	1,751	207	891	280
1996	12,647	2,370	9,271	228	778	3,299	1,789	191	965	354
1997	9,266	1,075	7,362	213	616	3,182	1,670	151	902	459
1998	8,045	1,004	4,688	1514	848	4,134	1,818	514	981	821
1999	5,775	1,248	2,883	280	1,364	4,759	2,649	234	1,190	722
2000	7,304	1,131	3,586	235	2,352	5,015	2,941	218	1,095	761
2001	10,006	976	7,001	265	1,764	5,228	3,011	222	1,132	863
2002	11,017	959	7,041	267	2,750	4,896	2,377	272	1,210	1,037
2003	19,214	1,242	13,373	323	4,276	6,444	2,613	1,199	1,237	1,395
2004	25,594	2,462	18,257	344	4,261	9,853	3,378	3,621	1,348	1,506
2005	30,719	883	20,582	285	8,969	11,637	3,423	5,037	1,392	1,785
2006	29,665	1,045	14,566	331	13,723	9,904	3,412	2,589	1,443	2,460
2007	28,580	1,206	14,484	376	12,514	8,980	3,349	2,486	1,334	1,811
2008	28,613	1,162	13,203	344	13,904	8,041	2,743	2,101	1,347	1,850
2009	25,142	1,140	11,364	416	12,222	8,158	2,422	2,617	1,312	1,807
2010	26,274	1,193	9,623	428	15,030	7,961	2,090	2,293	1,516	2,062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데 있어 중심축이 되는 결혼이주 여성은 사기결혼 위장결혼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우려로 1998년 국적법이 개정된 것과 함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다.⁶⁾

하지만 2001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은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2005년 정점에 달했던 결혼이주여성은 이후 비록 감소했지만 전체 결혼건수의 10%에 육박하며 국내결혼의 일정한 흐름으로 구조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도 급격히 전개된 게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이민자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서구선진국(OECD)의 경우 이민자의 비율이 10% 수준을 넘기에 이민사회 혹은 다문화사회라고 일컫게 된다는 것이다(윤인진, 2008: 74).⁷⁾ 2007년 8월 국내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후에도 계속 늘어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130여만명이고, 이중 결혼이주여성은 약 15만 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대응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30여만명은 전체 인구 4,950만명 대비 2.6%에 불과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하는

6) 1990년대 국제결혼의 배우자로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언어와 문화, 혈연적 배경이 같아 한국생활 적응의 이점 등으로 인해 선호됐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간과해 많은 부부 갈등을 낳았다(윤형숙, 2004; 임형백, 2009: 62). 특히 중국 조선족 여성 중에는 취업을 위해 위장결혼하거나 결혼 후 가정을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국적법 개정은 불가피했다. 1998년 개정된 국적법은 이전에 한국남성과 결혼할 경우 외국인 신부는 혼인신고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토록 한 내용을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한 후 귀화를 통해야만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결혼이민 대상을 주로 중국조선족에서 찾던 관행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다른 국가의 여성으로 다양화됐다(임형백, 2009: 62).

7) OECD자료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가들 가운데 이민자의 비율은 프랑스 10%(1999), 독일 12.9%(2003), 영국 9.3%(2004), 캐나다 18.9%(2004), 미국 12.2%(2004) 등으로 집계돼 있다(Lemaitre and Thoreau, 2006; 윤인진, 2008: 74, 재인용).

외국인의 12%이며 전체 인구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인구 중의 외국인비율이 10%정도에 도달할 때 다문화사회로 인식하는 국제 흐름과 비교할 때 통계적인 수준에서의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강화되고 있다. 김혜순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 대중화된 것은 2005년말 ~ 2006년 초로 아주 최근이며 그 중심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있다고 지적했다(2008:37). 또 양애경 외는 2007년8월 국내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한층 활발해졌다고 소개하고 있다(양애경 외, 2007).

그간 논의는 사회학·정치학·법학·여성학·사회복지학·철학·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주요 연구흐름을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최혜지, 2009), 부부관계·생활만족도·자녀양육 등 가족을 둘러싼 연구(양점도·김춘택, 2006;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박지영, 2010; 김현숙, 2010; 이창식, 2010),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양순미·최규홍·강경하, 2009; 임형백, 2009; 임형백·이성우·강동우·김미영, 2009; 최병두·임석화·안영진·박배균, 2011), 실태분석과 정책대안 마련(표명환, 2009; 정광호·최슬기·장윤희, 2009; 김승관·김유경·조애자·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10; 홍기원, 2009; 정상기·정윤수, 2010; 이종렬·범령령, 2010), 페미니즘과 여성론(김현미, 2006; 최종렬·최인영, 2008; 김영옥, 2010; 홍지아, 2010),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고찰과 한국사회(김영옥, 2007; 김혜순, 2008; 윤인진, 2008;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9; 김승환, 2010; 서종남, 2010; 이안지영, 2009), 결혼이주여성 출신국 정책·실태분석(김현미·김민정·김정선 외, 2008; 위선주, 2010)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⁸⁾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는 〈표 2-2〉에

8) 최정혜는 2005~2010년까지 발간된 다문화가족 연구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 65편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정리했다. 이러한 연구흐름을 포함해 기존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취약한 인식수준을 현 상황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기여가 인정된다.

〈표 2-2〉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동향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문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결혼 적응 과정과 만족도 연구	(1999)		300	
	(2003)			
	(2004)			
	(2004)			
	(2005)			
	(2005)		8	
	(2006)		160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2006)		38	30
	(2006)		17	
지역사회				

연구'가 23.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연구'와 '문화연구'가 각각 18.5%, '한국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15.3%,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13.8%,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및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10.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의 경우 계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 연구는 전체의 1/4정도로 조사됐다(2010: 79~97).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문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참여연구	(2010)		14	14
	(2003)	()		
	(2005)	()		
	(2006)	()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의 연구	(2006)	()		
	(2007)	()	8	23
	(2008)	()		
	(2008)	()		
	2009 (2010)	()	15 4,000 55.9%	,
	(2007)		6 6 40 110 150	
	(2007)		102	
	(2007)		608	
농촌사회학 회최근연구 동향	(2008)	:	127	
	(2009)		15 10	,
	(2010)		9 46 50 380	,
	(2010)		6	

그동안 다문화 관련 연구는 순혈주의가 강조되던 국내 현실에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있어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9개 정부부처에서 관련 사업명을 정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소관부처와 소관부처별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3〉 다문화 정책관련 소관부처와 소관부처별 사업내용

구분	사 업 명	내 용	프 로 그 램
법무부		•	•
		•	Happy Start(
		•	)'
		•	• 5 20 (Together Day)
		•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구분	사업명	내용	프로그램
문화 체육 관광부	•		
	•		
	•	•	•
	문화		,
	체육	•	•
	관광부	,	•
	•		,
	•		
	•		
	•		
교육 과학 기술부			•EBS
	•		•
	•	•	•
	(	,	•
	과학		,
	기술부	•	•
	•		•
	•		•
	•		•
	•		•
여성 가족부			•
	•	•	•
	•	•	•
	•		•
	•		•
	•		•
	•		•
	•		•
	•		•
	•		•
농식 품부			•
	•	•	•
	•		•
	•		•
	•		•
	•		•
	•		•
	•		•
	•		•
	•		•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다문화관련 예산의 급증에서도 확인된다. 다문화관련 주요예산의 증가실태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2011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억원에 불과했던 관련 전체예산은 2008년 423억원, 2010년 853억원으로 급증했고, 2011년은 1,162억에 달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해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과 예산,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 단위에 1곳씩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⁹⁾

〈표 2-4〉 연도별 다문화지원사업 예산 추이¹⁰⁾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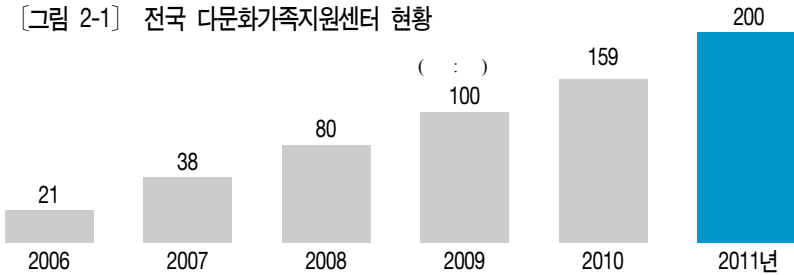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앙정부	12	39	317	436	629	887
지방자치단체			60	143	97	108
시도교육청			46	110	127	167
계	12	39	423	689	853	1,16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도별 증가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21곳에서 2008년 80곳, 2010 159곳으로 확대됐고, 2011년에는 200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추이는 [그림 2-1] 과 같다.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초해 설립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여성가족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전국 20곳에서 설치·운영했고, 농림부는 2007년 방문도우미시스템을 전국 30곳에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농림부의 방문도우미시스템 등을 모두 통합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조직과 기능, 역할을 통합, 전국 80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10) 다문화관련 예산은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워 동아일보 2011년2월8일자 A4면 기사를 참고했다. ‘2011 연중기획 다문화가 힘이다. 달라도 다함께’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 기획의 1부에서 문제는 시스템이다, 인신매매식 중매여전, 보호막 약한 이혼여성, 원스톱지원시스템 미흡, 아직도 높은 행정의벽, 외국인 유학생의 명암, 다문화센터 4년차 직원이 본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했다. 또 2부에서는 학교 밖 맴도는 다문화, 다문화 청소년 세계를 꿈꾼다, 2개국어 능통한 글로벌 인재 꿈 키워줘야, ‘무역전문가 꿈’ 대학 1학년 우즈베크출신 이라나씨, 전국 최대 다문화도시 안산의 3색교육현장, 한국어·모국어 교육의 현주소, 경북문경 ‘베트남 새댁 양선아씨 여섯 식구의 친정나들이 따라 가보나’라는 내용 등으로 9월10일까지 게재했다.

[그림 2-1]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표 2-5>로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에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교육의 경우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은 물론, 부부교육, 시부모 교육과 배우자교육, 결혼이주자교육, 자녀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겪는 고충 등을 해소하고 있고, 국적별 이주여성 모임과 가족통합 등을 위한 사업내용을 담아 지역에서 센터가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모든 내용을 서비스해 갈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과 세부추진사항

	사업영역	대상	사업범주	세부추진내용
필수 영역	한국어교육	결혼 이민자	기초과정 초/중/고급과정 기타과정	· · ·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결혼 이민자	사회교육	· · ·
			역사교육	· ·
			생활교육	· · · ·

	사업영역	대상	사업범주	세부추진내용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
			부부교육	• ,
			시부모교육	• ,
			결혼이민자교육	• , ,
			배우자교육	• , , , ,
			자녀교육	• ,
	상담		가족상담/개인 상담	• , , ,
				• , ,
	자조집단	다문화가족	가족통합	•
			배우자	•
			시부모	•
			통합곡적	• /
			국적별	•
특화영역	정서지원	다문화가족	•	• , , , , ,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	• , , , , ,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가족 지역구성원	•	• , , , , ,
	전문인력양성	지역구성원	•	• , , , , ,

: , 2008

하지만 동아일보의 기획기사는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비효율성에다 연속성·지속성이 없어 오는 2018년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는 난맥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¹¹⁾

동아일보 기획기사는 대안으로서 법무부 산하의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혹은 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처 등을 복합적으로 거론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協治)방식의 접근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제2절 농촌 다문화의 특징

우리나라 다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에 많이 거주하므로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읍면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촌의 전체 결혼 가운데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전체 30~40%에 달할 정도로 빈도가 높다. <표2-6>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최근 얼마나 많이 농촌에 유입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율은 그만큼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갖게 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농촌이 가장 빨리 다문화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하다(임형백, 2009: 756).

- 11) 동아일보에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되는 다문화정책의 문제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중부사업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멘토링-다문화가족 언어교육, 보건복지부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정부는 2009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지속적인 업무조정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경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단지 7곳 외에는 이를 다문화가족 문제 등을 전담할 조직이나 전문인력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다문화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역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넷째, 부처별·지자체별로 일회성 행사중심의 접근이 주다 보니 혼란이 극대화되고 다섯째, 정부정책이 장기적인 비전 없이 추진되다 보니 전체적인 정책방향조차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용어를 여성부는 다문화가족,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법무부는 외국인가정 등으로 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표 2-6〉 최근 국제결혼 추이

구 분		전 국	농 촌			도 시		국 외
			계	읍부	면부	동부		
2005	남편	건수	314,304	55,029	25,038	29,991	244,360	12,288
		한남+외녀	30,719	7,575	2,480	5,095	22,545	332
	아내	건수	314,304	47,096	22,176	24,920	232,113	32,269
		한녀+외남	11,637	1,062	504	557	8,715	1,769
2006	남편	건수	330,634	58,382	26,936	31,446	261,377	9,953
		한남+외녀	29,665	8,746	2,799	5,947	20,470	400
	아내	건수	330,634	48,933	23,834	25,099	249,414	31,375
		한녀+외남	9,094	,842	380	462	6,506	1,729
2007	남편	건수	343,559	59,397	27,914	31,483	274,592	9,520
		한남+외녀	28,580	8,016	2,661	5,355	20,145	415
	아내	건수	343,559	49,816	24,465	25,351	263,686	29,875
		한녀+외남	8,980	,849	421	428	6,332	1,791
2008	남편	건수	327,715	57,035	26,660	30,375	262,357	8,312
		한남+외녀	28,163	7,853	2,741	5,112	19,893	416
	아내	건수	327,715	46,964	22,974	23,990	251,296	29,439
		한녀+외남	8,041	,700	333	367	5,669	1,672
2009	남편	건수	309,759	52,918	25,849	27,069	248,050	8,791
		한남+외녀	25,142	6,839	2,555	4,284	17,846	457
	아내	건수	309,759	43,295	22,033	21,262	240,413	26,051
		외녀+한남	8,158	,737	391	346	5,952	1,469
2010	남편	건수	326,104	56,502	28,280	28,222	261,077	8,525
		한남+외녀	26,274	7,219	2,737	4,482	18,605	450
	아내	건수	326,104	45,933	23,972	21,961	253,053	27,117
		한녀+외남	7,961	696	356	340	5,851	1,414
2011		4						

2011 4
 .
 . 5 ...
 . - : (+)
 . - : (+)
 . > : 2010.07.01 , ,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농촌 노총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냉정한 현실에서 시작됐다. 농촌 노총각 문제는 배우자로서 이들을 선호하는 국내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국내 여성들은 농촌남성들이 도시남성들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갖춰도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 배우자감으로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면서 농촌 노총각 문제는 필연적이었다.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의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커지고, 농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을 배우자로 선호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고 WTO체제의 가동과 함께 농업은 사양산업, 경쟁력 부족으로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부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기피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감정이나 감성보다 합리성과 이성이 지배하는 결혼에서 농촌총각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상황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노총각 문제를 해결방안으로 우선 고려됐던 게 중국 조선족 여성이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언어, 생활방식, 문화 등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어 비교적 자연스런 대안이 됐다. 더구나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은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급증했다. 한중 수교 후 물적자원은 물론, 인적자원의 교류가 확산되면서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은 급속히 확대돼 갔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국내로 국제결혼 해 들어온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4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홍기혜, 2000).

이후 선호되던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위장결혼·사기결혼이 성행하자 1998년 국적법 개정됐다. 이때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 할 경우 혼인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던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라고 해도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 귀화를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의 동의와 자녀 출산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됐다. 이후 우리나라보다 저발전 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급격히 늘었다. 이들은 인종적 차이가 큰 물론이고 한국말이 불가능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심각해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보수적 전통과 자녀출산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농촌사회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¹²⁾

하지만 한국사회는 물론 당사자인 농촌 총각들도 국제결혼을 위한 현실적 절박함이 있었지 이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김영옥은 한국사회가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종족 인구구성원을 지닌 다문화사회로 급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옥 외, 2009).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부에 깊이 침투한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여유도 없이 다문화사회로 전환한 것이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은 최근 수년 동안 농촌지역에서 결혼하는 전체의 건수의 4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고착화됐지만 여전히 남성의 생물학적 욕구해소와 가부장제를 이어가는 도구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활동 강화,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결혼관계의 비대칭성(asymmetry)과 가부장적 사고에 기반을 둔 부부관계는 여전히 확고한 게 현실이다.¹³⁾ 비대칭성은 한국의

12)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생물학적 욕구나 가부장적 권위체제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만은 아니다. 또한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성도 아니다.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거나 비슷한 시점에 많은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남성들의 경제력과 여성들의 성적교환은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 정책과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는 식으로 구조화되는 상황이 었다(이형하, 2010: 16).

13)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각 거래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비대칭성(asymmetry)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보유하는 정보의 분포에 편향이 있어 경제주체 사이에 정보격차가 생기는 현상 또는 그러한 성질을 비대칭성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비대칭성은 미국의 이론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가 1970년 발표한 논문 “The Market for Lemons”에서 처음 등장했다. 조지 애컬로프에 따르면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숨겨진 정보를 바탕으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철환, 2008: 227~237). 특히 이 같은 이론적 관점은 정보의 불균등성이 농후한 동남아시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시장에서도 강하게 작용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경우 보통 합리성과 이성이 지배하는 일

전통적 가부장제가 잔존하는 농촌의 경우, 보다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의 차원은 농촌의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조건이나 내용, 즉 나이·혼인형태·장애빈도·경제상태 등에서 잘 나타난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 나이는 33.3세로 배우자 평균나이 43.2세보다 9.9세나 적었다. 이 중 캄보디아는 평균 17.5세, 베트남은 17세, 필리핀 10세 등으로 편차가 큰데 반해 일본 2.3세, 북미·호주·서유럽의 경우 2세에 불과해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표 2-7〉에 잘 나타나 있다(김승권 외, 2010, 136).

〈표 2-7〉 결혼이민여성과 배우자의 평균연령¹⁴⁾

(단 위 : 세)

구분	여성 결혼이민자			남성 결혼이민자		
	부인 본인(A)	남편(B)	부인과 남편의 연령차이(B-A)	남편 본인(C)	부인(D)	부인과 남편의 연령차이(C-D)
전체	33.3	43.2	6.7	41.6	40.3	1.3
중국(조선족)	39.5	46.2	6.7	45.0	43.2	1.8
중국(한족 등)	33.9	42.7	8.8	41.0	40.6	0.4
베트남	24.3	41.3	17.0	30.1	34.0	-3.9
필리핀	31.7	42.6	10.6	36.8	36.6	0.2
몽골	31.3	41.3	10.0	32.9	39.2	-6.3
태국	34.5	41.6	7.1	39.3	32.8	6.5
캄보디아	23.5	41.0	17.5	30.6	25.0	5.6
일본	40.0	42.3	2.3	48.3	43.8	4.5
북미·호주·서유럽	38.3	40.3	2.0	39.7	36.5	3.2
기타	32.0	40.9	8.9	37.2	37.7	0.5

이러한 나이차는 차후 10~20년 후 농촌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활동이 활발해지는 연령대에 접어드는 데 반해 남성들은 활동이 위축되

반적인 결혼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결혼관계의 비대칭성은 우선 결혼 시 신상 정보가 일방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매매혼 형태를 띠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농촌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간의 근원적 권력비대칭성으로 작용하면서 관계를 특징짓게 되고 향후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좀 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는 연령대로 넘어가면서 농촌사회를 주도하는 세력 중 한 부류로 결혼 이주여성들의 등장이 충분히 예상됨을 보여준다.

〈표 2-8〉 결혼이민자 성별 출신국별 혼인유형

(: %)

구 분	부인, 남편 모두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남편 초혼	부인 남편 모두 재혼	계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65.0	9.3	7.6	18.1	100.0(116,216)
중국(조선족)	49.3	5.5	12.2	33.0	100.0(34,690)
중국(한족 등)	57.6	7.5	10.4	24.6	100.0(32,667)
베트남	80.8	16.9	0.8	1.5	100.0(22,400)
필리핀	85.5	11.7	0.9	1.9	100.0(7,209)
몽골	67.0	13.6	8.1	11.2	100.0(1,671)
태국	77.3	8.2	5.3	9.2	100.0(1,592)
캄보디아	78.9	19.7	0.4	0.9	100.0(2,325)
일본	92.5	2.6	1.4	3.5	100.0(5,022)
북미·호주·서유럽	81.0	10.2	3.7	5.1	100.0(2,114)
기타					100.0(6,526)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65.6	9.6	7.2	17.6	100.0(107,273)
중국(조선족)	50.3	5.6	11.9	32.3	100.0(30,384)
중국(한족 등)	58.0	7.6	10.4	23.9	100.0(30,384)
베트남	80.9	17.0	0.7	1.4	100.0(22,317)
필리핀	85.5	11.9	0.8	1.8	100.0(7,097)
몽골	67.4	13.7	7.8	11.1	100.0(1,652)
태국	77.0	8.2	5.4	9.3	100.0(1,576)
캄보디아	78.9	19.8	0.4	0.9	100.0(2,322)
일본	93.5	2.4	1.4	2.7	100.0(4,703)
북미·호주·서유럽	90.2	4.1	2.5	3.2	100.0(438)
기타	75.5	12.2	4.5	7.8	100.0(4,794)

결혼유형의 경우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반영한다. 중국의 경우 부인재혼+남편재혼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는 여성의 재혼 비율이 아주 낮고 재혼남편과의 초혼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나이차와 함께 국내

남성이 동남아시아 저발전국의 여성을 대상으로 매매혼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박재규, 2005:126).¹⁵⁾ 이 추세는 <표 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10: 329).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배우자의 장애인 비율이 월등히 높다. 장애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결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대안으로 이주여성들과의 결혼을 선호하거나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해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9>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다문화가족 등록 장애인

(: %)

구 분	다문화가족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						
	(분석대상)	등록 장애인 비율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전체결혼이민자									
전체	(115,305)	17.3	4.8	41.5	5.7	14.0	18.1	15.3	10.6
동 지역	(83 ,192)	16.7	5.2	41.3	5.5	13.8	16.9	14.9	11.7
읍·면 지역	(32 ,113)	19.0	4.0	42.0	6.1	14.7	20.6	16.2	8.0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106 ,393)	17 ,9	4.4	42.5	5.7	14.0	18.1	15.5	10.1
동 지역	(75 ,122)	17.3	4.6	42.6	5.5	13.7	16.8	15.2	11.1
읍·면 지역	(31 ,271)	19.3	3.8	42.2	6.0	14.7	20.8	16.2	7.8
남성결혼이민자									
전체	(8 ,913)	10 ,6	14.3	23.2	5.8	14.7	17.8	11.2	20.2
동 지역	(8 ,071)	10.8	14.0	22.7	5.7	15.2	18.9	10.7	20.2
읍·면 지역	(842)	9.1	18.2	28.5	7.0	8.8	5.2	16.5	20.8

:1) 1990

2)

15) 박재규는 매매혼이 성행하는 것을 국제결혼시 많이 소요되는 결혼비용에서 찾고 있다. 매매혼의 성행은 결혼생활 과정에서 한국남성들로 하여금 결혼이주여성들을 평등관계의 배우자로 인식하기보다 소유물 성격을 띤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다(박재규, 2005). 매매혼으로 인한 국제결혼은 차후 인권억압으로 이어져 배우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언어폭언, 외출금지, 의처증으로 인한 학대 등을 빈번하게 발생시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 지역 별로 다른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이 평가한 다문화가족의 경제수준은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 구간에도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이 8%안팎인 것보다 2배정도 높다. <표 2-10>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가족과 비교한 주관적인 평가는 상대적 빈곤감 내지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차원에서 비대칭성만 살펴봤다. 사회적 관계에서나 사회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비대칭성은 차후 적응과정에서 이를 시정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표 2-10〉 결혼이민자의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구 분	최하층 ←			중간								→ 최상층		계수(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결혼이민자														
전체	9.7	5.8	9.5	14.0	14.9	38.1	3.6	2.2	1.2	0.3	0.5	100.0 (127,973)		
동 지역	10.5	6.3	10.2	14.7	13.9	36.3	3.7	2.3	1.3	0.3	0.5	100.0 (92,488)		
읍·면 지역	7.7	4.5	7.7	12.2	17.4	43.0	3.5	2.1	1.1	0.3	0.5	100.0 (35,485)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9.4	5.6	9.3	13.9	15.3	39.1	3.5	2.1	1.2	0.3	0.5	100.0 (116,745)		
동 지역	10.1	6.1	10.0	14.7	14.4	37.4	3.4	2.1	1.2	0.3	0.5	100.0 (82,315)		
읍·면 지역	7.6	4.3	7.6	12.1	17.5	43.3	3.6	2.1	1.1	0.3	0.5	100.0 (3,430)		
남성결혼이민자														
전체	13.4	7.8	12.4	15.1	10.7	28.2	5.6	3.6	2.1	0.5	0.5	100.0 (11,226)		
동 지역	13.6	7.6	12.5	15.1	10.5	27.8	6.0	3.6	2.2	0.6	0.5	100.0 (10,173)		
읍·면 지역	11.7	10.2	11.2	15.6	12.4	32.4	1.9	3.1	1.0	-	0.5	100.0 (1,053)		

: 0-2 , 3-7 , 8-10

비대칭성은 당초 정보나 자원의 불평등에서 기인했지만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투쟁의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자기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통해 주류사회와 관계를 역학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에 입각해 재조정됨을 알 수 있다.

〈표 2-11〉 이혼·별거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별 이혼·별거이유

(: %)

구 분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무능력	학대와 폭력	음주 및 도박	심각한 정신장애 및 기타	계수(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13.2	29.4	7.0	19.0	12.9	8.7	9.8	100.0(3,666)
동 지역	13.2	29.2	7.2	19.3	12.8	8.6	9.6	100.0(3,404)
읍·면 지역	12.2	32.7	4.9	14.8	13.7	9.1	12.5	100.0(262)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12.7	28.4	7.2	19.7	13.7	8.8	9.4	100.0(3,440)
동 지역	12.7	28.1	7.4	20.2	13.7	8.8	9.2	100.0(3,182)
읍·면 지역	12.4	32.6	5.0	14.0	14.0	9.3	12.8	100.0(258)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20.4	44.7	4.9	8.0	-	6.6	15.5	100.0(226)
동 지역	20.7	44.6	5.0	7.2	-	6.8	15.8	100.0(222)
읍·면 지역	0.0	50.0	0.0	50.0	-	0.0	0.0	100.0(4)

: 1) 1990

현재 별거나 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급증하는 것은 일종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나 자원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인정과 분배적 정의가 가능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모색하는 게 절실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¹⁶⁾ 〈표 2-11〉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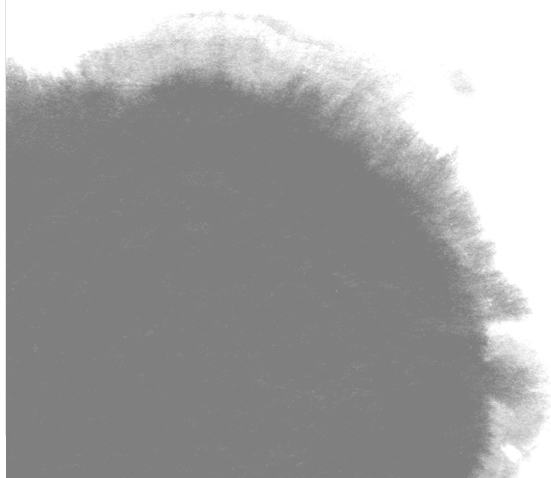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16)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는 2006년 6,136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만 4,319건으로 급증했다. 2010년 전체결혼건수 2만6,274건의 절반이 넘는 55%에 이른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 40.2%, 가족 간 불화 21.9%, 경제적 문제 10.7%, 배우자 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이나 별거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 외에도 가족문제의 경우 밖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보다 문제는 훨씬 심각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측된다.

8.1%, 정신적·육체적 학대 8.1%, 건강문제 0.9%, 기타 13.7%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이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대동소이하다. 특히 이혼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60.7%가 결혼 5년 이내에 이혼하고, 1년도 안 돼 갈라서는 경우도 15.5%에 달한다. 이혼한 다문화가족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4.7년으로 한국인 이혼가정 14.2년보다 10년가량 적게 나타났다(통계청, 2011).

3장

이론적 배경



III. 이론적 배경

제1 절 다문화주의의 재 고찰

1. 다문화주의: 반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다문화주의 논의는 이민국가인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국가들의 다문화주의 초창기는 이민자를 어떻게 사회에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대부분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여기에서 ‘동화’는 1920~30년대 활동한 미국 사회학자인 로버트 파크와 어니스트 버제스의 정의에 바탕을 둔다. 이들에 따르면 동화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감정·태도를 획득하고 이들의 역사와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삶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Gordon, 1964:61~62; 엄한진, 2011: 55 재인용).

고든은 동화에 대해 제1수준, 문화접변(acculturation) : 종교를 제외한 언어·의복·음악 등의 주류문화 채택, 제2수준, 구조적동화(structural assimilation) : 소수민족이 사회단체·친목단체·공적기관·마을공동체·친가족관계에 진입 등 지배집단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도 안으로 편입, 제3수준, 결혼동화(marital assimilation) : 주류민족에서 배우자 선택 및 자녀출산, 제4수준, 동일시동화(identification assimilation) : 주류사회의 가치·상징을 자기 것으로 여김, 제5수준, 태도 수용적 동화(attitude receptional assimilation) : 소수민족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증

이 사라짐, 제6수준 행동 수용적 동화(behavior receptional assimilation) : 차별이 사라짐, 제7수준 시민적동화(civic assimilation) : 지배집단과 가치갈등이 전혀 없음 등 7단계를 거쳐 진전된다고 봤다 (Gordon, 1964:70~71; 엄한진, 2011: 55 재인용 ; 권태환 외, 2009: 266~277).

동화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은 소수민족을 통제하는 국가들에 의해서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 model)로 구체화된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유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태도와 의식 등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면화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가치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강화되기도 한다. 미국의 용광로동화(melting pot assimilation)는 대표적인 동화정책의 하나다.

이 정책은 용광로 속의 쇠가 녹는 것처럼 주류집단의 문화 속에서 소수자(minority)의 문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완전히 흡수될 수 있음을 상정한 것으로, 또 다른 자문화중심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정체성에 착안간다움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적 정책도 정당화하고 소수민족이 갖는 다양한 가치나 장점을 완전히 무시해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구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¹⁷⁾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등 소수자들을 통합시키는데 심각한 한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안적으로 등장한 이념이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이민국인 미국에서 샐러드볼(salad bowl)·무지개연합(rainbow coalition) 등으로 구체화 된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작해 지금까지 반세기 가까이 많은 국가들의 이민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17)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구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노동력 유입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나 이민자를 3D업종 등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한정해 받아들이고, 복지혜택이나 국적·시민권,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권태환 외, 2009: 266).

더욱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지구화(globalization)시대는 ‘이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면서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이주민일 만큼 비중이 커지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할 의제가 ‘이주현상’이며 ‘다문화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오경석 외, 2007: 23).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인 김리카(W. Kymlicka)는 전 세계가 184개의 독립국가로 구성돼 있고 600개 이상의 살아있는 언어집단과 500개 인종집단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언어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문화주의의 시각이 대두되는 과정은 인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김리카는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둘째, 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 인종집단의 권리의식 고양, 셋째, 민주주의의 확립, 넷째, 냉전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 인한 소수 인종집단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의 감소,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의 존재 등이라고 지적했다(Kymlicka, 2005: 31~36; 오경석, 2010; 윤인진, 2008: 77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김리카의 다문화주의 관점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프레이저 등과 함께 재분배의 정치학(politics of redistribution)으로 특징지어진다. 재분배의 정치학은 사회경제적 위계구조에 의해 신분적 위계구조도 종속된다는 맑시즘적 사고에 기초해 경제적 불평등이 제거되면 신분 등 문화적 위계도 해소된다는 것이다(Kymlicka, 2006: 461~463; Fraser, 2000: 110~112; 송재룡, 2009: 79~106 재인용).

이에 반해 캐나다의 철학자 테일러(Taylor, 1992)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다”고 정의했다(윤인진, 2008: 73 재인용). 여기에서 인정의 정치학 개념이 등장한다.

‘인정의 정치학’은 인간의 정체성이 주체와 객체 양자간에 ‘대화적(dialogically)’으로 진행되는 상호인정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타집단으로 부터 동등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는 자아의 정체성 구성개념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시각의 인정의 정치학은 정체성의 정치학으로도 불린다. 더욱이 계몽주의에 기초한 재분배의 정치학을 넘어 등장한 인정의 정치학의 경우 ‘인정’에는 인정하는 주체와 인정을 받는 객체 사이에 권력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거나 도덕적·문화적 상대주의를 야기하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측면은 인정의 정치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자아의 구성과 자아의 도덕적 원천에 대한 문화언어적 공동체주의적 이해를 통해 ‘선한 경쟁의 정치학’ 개념을 도입할 경우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송재룡, 2009: 79~106).¹⁸⁾ 최종렬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재분배의 정치학과 인정의 정치학 담론을 〈표 3-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2009:50).

〈표 3-1〉 서구다문화주의 담론의 두 흐름

	정의의 문제	자기실현의 문제
철학 (규범적 전통)	20 :	: , :
문제와 영역	‘ (the right)’ ‘ (morality)’ :	‘ (the good)’ ‘ (ethics)’ :
적용 범위	:	:
정치학	,	,
대표적인 학자	,	,

18) 여기에서 언급되는 선한경쟁의 정치학의 개념은 인정의 정치학이 함의하는 일종의 해석학적 가치평가의 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담론은 시대적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기도 하다. 즉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유럽·북미·오세아니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이민자를 받아들이며 유입국의 인구학적 변화 뿐 아니라 경제·정치·사회·문화는 물론, 국가정체성까지 지대한 영향을 받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것이다(윤인진, 2008:77).

이민을 받아들이는 유입국, 서구사회가 신규이민자들을 기존의 사회 구조에 새로운 방식으로 통합시키고자 다문화주의는 대안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인 캐나다는 1971년 퀘벡주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분리·독립을 차단하고자 소수인종집단의 문화보호와 평등한 기회확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택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윤인진, 2008:77).

이러한 담론은 1992년 WTO의 타결과 함께 가속화된 전지구화(globalism)의 정당성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충분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인구의 이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고 문화 간의 교섭과 통섭이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일관되게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다문화주의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고취시키고 사회-공간적 결속력을 강화시켜 규범적 이상을 확대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과정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젝(Zizek)은 다문화주의를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이며 ‘부정된, 역전된 자기-준거적 형태의 인종주의’라고 비판했다(김영욱, 2010:36).

특히 세계화가 확산된 후 두 차례의 사건은 다문화현상에 대해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한다. 즉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2001년 9·11테러는

다문화주의 확산에 대한 일종의 이정표로 작용했다.¹⁹⁾

그리고 2009년 세계 경제위기는 다문화주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컬어지는 반다문화주의(anti-multiculturalism) 양상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향후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서구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²⁰⁾

반다문화주의는 관용과 조화, 공존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일자리 감소와 복지축소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문제와 충돌하면서 앞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짐작케 한다.²¹⁾

이주의 확산에 따른 다문화가 보편적 현상이 되면서 복잡성이 증대되거나 다른 극단주의로 흐르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이주문제의 복잡성이다. 이주는 일국의 문제이자 국가 간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이자 개인의 욕망의 문제이며, 계급의 문제이자 인종의 문제이며, 문화적 관용의 문제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진단과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오경석, 2007: 24).

19) 미국의 리얼 아이디 법안, 속지주의 철회 움직임, 영국의 5단계 입국심사제(five-tier system) 등이 대표적인 반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오경석 외, 2007: 23).

20) 반다문화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주목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반 이슬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공존 공생의 실현으로 대안을 찾던 세계 각국은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국가로 평가되던 노르웨이에서 2011년 7월 25일 극우파 테러에 의해 72명의 희생자를 낸 연쇄테러사건은 다문화주의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나라에도 반다문화주의의 목소리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의 ‘다문화정책반대’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 등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반대목소리가 서서히 커져 감을 보여준다(매일경제, 2011년 7월 27일자 A13면).

21) 다문화주의 이후 각국이 이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는 선별주의적 개방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선별주의는 각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2000년 25세 이하 이민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을 막았고, 영국은 2001년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과 2005년 ‘테러방지법’을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해 ‘제로이민국’으로 불릴 정도다. 프랑스는 2003년 11월 ‘이민의 조절, 외국인들의 체류 및 국적 관련법’을 통해 불법이민 단속과 2006년 7월 ‘이민 및 통합에 관한 법’을 통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강화했으며, 미국은 2005년 12월 새 이민법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엄격히 규제했다. 스위스는 2006년 9월 이민법을 개정해 고숙련 노동자로 대상을 제한했으며, 이탈리아도 2008년 5월 출범한 베를루스콘니 4기 정부도 이민자의 불법유입을 차단,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엄한진, 2011: 67~79).

또한 이주의 문제는 근대 민족국가 체제와 그에 상응해서 구성되는 근대사회과학 체계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주가 보편화되면서 그동안 ‘동일한 국적, 단일한 국민정체성, 배타적 시민권, 영토내부에 대한 포괄적인 통치권’으로 압축되는 근대 민족국가의 동질성 가정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를 지탱하기 위한 근대 사회과학의 ‘영토주의’에 입각한 가정 역시 적용성에 한계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백, 2000; 오경석, 2007: 24 재인용).

따라서 오늘날 이주에 따른 다문화주의, 반다문화주의 등 다양한 양상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일국적인 토대에서의 사회통합의 방법론을 찾는 것을 넘어 초국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계와 배타적인 민족국민정체성의 허구, 가부장적 발전 패러다임과 국가중심 안보논리의 폭력성 등 대한 반성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오경석 외, 2007: 24).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주의를 반다문화주의와 대립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문화현상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를 살펴보고 다문화주의로의 통합된 인식과, 일반적인 다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에스니시티 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모색하는 것은 더욱 절실해진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현상의 배태성

이 세상에는 사실상 단일 민족국가가 없다. 실제 단일민족으로 존재하기도 어렵고 한 국가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쟁·정복·이주·교류·이산(diaspora) 등 많은 요인으로 인종과 민족이 서로 뒤섞이는 상황에서 한 민족이 수천 년 이상 순수혈통과 단일문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존재

하는데 있어 이문화(異文化)와의 접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있다(김승환, 2010:76).

이러한 상황은 인류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 ‘배달민족’으로 간주해 왔다. 이 같은 생각은 민족주의라는 상상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화돼 왔던 게 지난 우리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²²⁾ 오랫동안 중국으로부터 침략의 역사와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부각시키고 집단적 정체성을 위해 이 같은 구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²³⁾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배태된 순혈주의에 기초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²⁴⁾ 우리나라의 혈연적 배경을 보여주는 성씨(姓氏)나 역사적 사실, 전통문화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그간의 ‘단일민족’ 혹은 ‘배달민족’이라는 허구에 집착하기보다 우리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온 이문화(異文化)와의 공존과 공생, 상호존중, 관용과 같은 요구가 어떻게 관철됐는가를 찾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²⁵⁾

22) 김승환에 따르면,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거짓이고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도 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적극 부인하지 않은 것은, 첫째, 초자연적인 신화의 세계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고 둘째, 민족통일과 같은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부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셋째, 문화적 우월감 또는 문화적 순혈주의를 유지하려면 단군신화를 통해 민족적 신비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2010: 83~84).

23)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나 문화단일주의보다도 더 강력한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문화순혈주의의 토대인 단군신화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일제식민지하에서 강화됐다는 것이다. 1900년대 초 최남선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민족주의 의식을 계몽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김승환, 2010: 84).

24) 임형백은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초창기에 선호했던 대상이 ‘중국조선족’인 것은 바로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피를 선호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우리 민족의 저변에는 피가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 잠재의식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에서 ‘배태된 순혈주의’로 표현하고 있다(2009: 62).

25) 우리나라는 세계화 혹은 지구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혼종성이라는 미증유의 환경으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07년 국가편찬위원회는 ‘단일민족’ 개념을 폐기했다. 이는 고등학교 국사를 열린 민족주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순혈주의’

아울러 모든 민족에는 다양한 문화가 녹아 있고 기본적으로 다문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문화현상의 배태성(embeddedness)’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²⁶⁾

즉 타인이나 이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모든 나라나 민족의 경우 다양한 언어와 인종, 종족이 접촉하며 공존해왔던 다문화성이나 다문화사회의 모습은 결국 다문화주의가 실제로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²⁷⁾

결국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생존하는 과정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개인들이 이민이나 이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것의 연속이다. 이러한 접촉과정에서 이민자나 이주자는 주류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조사는 공고했던 단일민족의 신화가 기대보다 쉽게 와해되고 있음을 실증해준다. 즉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과거 시점의 경우 응답자의 63.6%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혈통주의’ ‘단일문화’의 교육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것이다(김승환, 2010: 86).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탈북새터민 등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진전됐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한민족(韓民族)이라는 단일민족(single-race nation)이라는 신화에 대한 탈신문화 요 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송재룡, 2009: 85)

26) ‘배태성(embeddedness)’은 미국의 경제사회학자인 마크 그라노베터(M. Granovetter)에 의해서 확산된 용어다. 그라노베터는 ‘경제와 사회’라는 논문을 통해 인간관계가 경제적 거래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경제적 행위의 합리성에 앞서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기 위해 관계의 배태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오늘날 사회현상이나 경제현상, 정치현상 등을 설명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우선해 존재하는 기본원리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개념중 하나이다.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다문화성은 어떤 형태로든 존중돼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문화주의의 배태성’으로 설명코자 한다.

27) 보통 다문화사회란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이고 다문화주의는 이를 견인해 가는 이념중 하나로 정의한다(김혜순, 2008:4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다문화화성’, ‘다문화사회’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받아 들어 이를 문맥에 맞춰 변형해 사용함을 밝혀 둔다.

10.4%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41.2%만이 동의하고, 2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병조 외, 2011: 116~117).²⁸⁾

3. 다문화주의 : 에스니시티(ethnicity)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성은 이처럼 모든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소수자들의 문화를 구별하고 차별하며 배제하는 게 일상화됐고 상당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조차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지 동화주의의 연장선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김영옥, 2010: 36 ; 최현덕, 2010: 261).

그런데 다문화주의의 관점은 무엇보다 주류사회가 중심이 돼 어떻게 이민자나 이주자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주체와 객체의 구분에서 이민자나 이주자는 항상 객체의 범주에 머무르게 되는 인식이 다문화주의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어떤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실천되더라도 주류사회가 갖는 생각과 이민자나 이주자가 기대하는 내용과는 많은 인식의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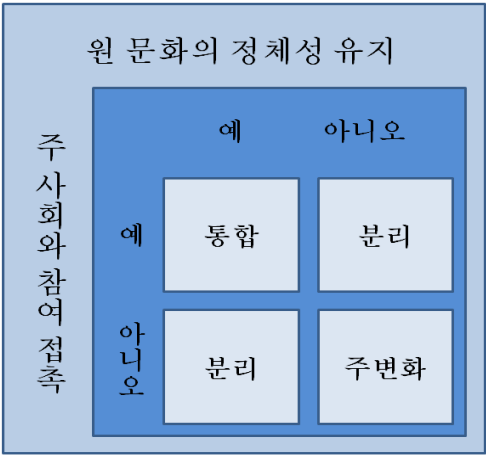
이런 면에서 보면 Berry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rry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주류사회에 대한 이주민의 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 바 있다.

즉 Berry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양상은 이주민이 자신의 원문화

28) 김병조 외는 『한국의 다문화상황과 사회통합』에서 전국 1,1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전에는 우리 국민의 단일민족의식 여부를 파악한 조사결과가 없어 비교할 근거가 없지만, 이 조사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약화됐음을 확인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전개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2011: 114~124).

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도를 뜻하는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와 이주민이 새로 진입한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를 교차시켜 ‘2×2’ 방식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최혜지, 2009: 166). 이는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사회의 참여를 추구하는 ‘통합형(integration)’,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에 소극적이면서 이주문화를 일상화하는 ‘동화형(assimilation)’,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에 가치를 두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분리형(separation)’, 원문화에 대한 애착이 약한 것은 물론, 새 문화의 수용에도 관심이 없는 ‘주변화형(maginalisation)’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3-1] 과 같다.

[그림 3-1] Berry의 새로운 문화 적응유형



이런 접근은 다양한 배경에서 이주하거나 이민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다문화사회의 전개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유용성을 지닌다. 특히 Berry의 경우 이주민이나 이민자가 적응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유형화하면서도 ‘통합형’²⁹⁾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가 구현되는 것으로 보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Berry의 경우 정체성 유지라는 이주자나 이민자의 주관적 측면과 주 사회로의 참여와 접촉의지 내지, 접촉태도 면에서 유형구분을 하고 ‘통합형’을 다문화사회의 이상형으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다문화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와 같은 접근에서는 모든 것이 이주자와 이민자의 의지·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이념세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통합’이라는 의미의 경우 이질적인 요소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취합해 새로운 속성을 발현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통 이해되는 사회과학적 인식틀에서 볼 때 과연 이주자나 이민자의 정체성유지 의지와 태도만으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실현해갈 수 있을지는 더욱 미지수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짚어보며, 어떻게 다문화사회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앞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민자나 이주자, 즉 특정사회의 소수자(minority)를 재분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킴리카의 정치학적 관점과 정체성·상호존중을 중시하는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를 위한 관점이 중심축을 이룬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주자나 이주민은 여전히 논의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되기 때문에 주류사회와 이들을 모두 통합한 논의의 재구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으로

29) Berry의 경우 소수자, 즉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 사회의 성원들과 접촉하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즉 Berry는 적어도 소수자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류사회의 개방성과 관용, 인정과 함께 이민자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없는 상태를 참다운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이렇게 될 때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유용성을 지닌다. 이민자나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은 기본적으로 공간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민이나 이주는 세계화·전지구화의 과정에서 정치·경제구조와 개인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선택·결정이라는 이중의 축을 따라 발생한다. 아울러 다문화공간은 불평등하고 계급적 측면이 내재하며 결국 인정을 위한 정치적 투쟁이 불가피하게 된다(최병두, 2009; 박배균, 2009; 김영옥, 2010: 37 재인용).

‘인정-재분배’의 관점은 이민자나 이주자 등 소수자(minority)가 다문화사회에 적응해 정착하면서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대, 희망을 성취하도록 주류사회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동화주의가 주목하는 것과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부터 확실히 구분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정-재분배의 관점에 기반 하는 이민자와 이주자가 실제로 주목하는 것은 관계가 지배하는 다문화사회보다 서로 다른 특성, 즉 인종·언어·성이 지배하는 공간을 주목하고, 이들은 이러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어떠한 정체성과 지향성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실천해 가느냐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다. 더구나 다문화공간은 세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적 양상과 교류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이런 인식은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원의 재분배도 가능하게 된다는 게 인정-재분배의 관점이다.³⁰⁾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상호문화주의의 관점, 트랜스

30) 김영옥은 다문화주의의 배경과 인정-재분배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주류제도가 다수자에게 이익이 되는 편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편향의 결과로 소수자들의 행위와 정체성에 해를 입힌다는 주장에서 출발,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부정의(不正義)’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 인정투쟁의 관점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주류사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부정을 경험하는 주변화 된 그룹들에 대한 자원의 재분배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재분배’는 포드주의 시대의 도덕철학과 사회적 투쟁에서 중심을 이었던 평등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 분배의 정의를 위한 것이고, ‘인정’은 포스트포드주의·포스트사회주의·지구화시대에 종교·국적·젠더·민족·종족 등을 둘러싼 투쟁이 세분화되

문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김혜숙, 2007:203-218; 최현덕, 2010:263).³¹⁾

여기에서는 Berry의 이주민이나 이민자의 정체성 지향태도적 차원, 테일러와 킴리카의 인정-재분배의 관점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공간을 기초로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해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 ‘ethnicity theory’이다. 사실 ethnicity이론은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 다양한 인종이나 종족 마이노리티(minority)와 주류사회와의 관계와 구조를 보다 역동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주류중심의 공존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상황을 넘어 주류사회의 사회구조와 관계방식에 이민자와 이주민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스니시티(ethnicity)이론은 소수자(minority)가 어떻게 자신을 위치 짓고, 어떤 정체성과 지향성을 갖

고 격렬해지면서 정체성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주요의제가 된다는 것이다(김영옥, 2009:141~142). 엄한진은 인정과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동일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본다. 즉 경제적 위계구조에 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재분배의 정치는 착취, 경제적 주변화, 경제적 박탈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노동분업 재구조화, 자본간 경쟁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신분의 위계(status hierarchy)에 따른 문화적 부정의, 인정의 정치는 문화적 지배(cultural dominance)·불인정(nonrecognition)·경멸(disrespect)에서 기인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체성과 문화의 재평가, 문화의 다양한 의미부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분배와 인정의 차원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두 차원의 정치가 결합된다고 본다. 오늘날 인정의 문제를 무시하기 어렵고 분배의 부정의가 사라진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어 인정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를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엄한진, 2011: 94~96).

- 31) 뱌쉬(Wolfgang Welsch)가 제시한 트랜스문화성(transculturality)이란,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특성들, 말하자면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 온갖 종류의 상품의 경계를 초월한 이동,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주현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즉 국가, 민족, 종족 등을 중심으로 설정된 문화적 경계가 가지는 의미가 극히 축소된 점에 초점을 맞춘다. [트랜스문화성]이란 한 사회 내에도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며,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상이한 요소들이 결합하거나, 엉겨서 새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 차원, 즉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 한 개인차원에서도 발견된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문화적 콘텍스트 속에서 이런 저런 요소들을 취사선택하고 결합해 가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최현덕, 2010: 277).

고 주류사회와 관계하느냐를 보다 역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에스니시티(ethnicity)의 어원은 희랍어 ‘ethnikos’에서 유래하는데, ‘ethnos’는 ‘ethnikos’의 형용사로, ‘민중’ 혹은 ‘국민’을 나타내는 말로, 에스닉 집단(ethnic group)이나 에스닉 정체성(ethnic identity)에서 ‘ethnic’도 같은 어원에서 유래한다(F. W. Riggs, 1985:117~120; 김기홍, 1995:4 재인용).³²⁾

P. van den Berghe는 ‘에스니시티’에 대해 문화적 특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지만(1967: 9~10), 동일한 민족이라고 문화적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M. Weber는 에스닉 집단을 성원들이 신체적 형태나 관습의 유사함 때문에 혹은 식민통치나 이민에 대한 공통된 경험으로 성원들이 갖게 되는 똑같은 출신 배경이라는 공통의 인식에 기초한 주관적 개념으로 보고 객관적 혈연관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M. Weber, 1968: 389).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니시티는 “체형적·문화적 역사성, 혹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재 혹은 상상의

32) 에스닉(ethnic)현상을 다루는 에스니시티(ethnicity) 이론에서 에스닉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보통 민족(nation)이나 종족(race)으로 구별하기도 하면서 상황에 맞춰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민족이나 종족과 달리 에스닉을 족군(族群)이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해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왕푸창, 2008: 10~11).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분야의 연구와 논의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아 적합한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번역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에스니시티와 관련된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있었고, 다문화주의를 연구하면서 제한적으로 소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을 포함해 이질적 타자들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현재 결혼이주여성 이 대표적이고,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새터민이 그들이다. 특히 새터민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체제분단 이후 새로운 역사적 경험을 거쳐 국내에 정착하는 사례로, 향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에 따른 난민급증 등으로 국내의 유입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이들을 적절히 분석하는데도 에스니시티의 관점에 기초한 논의는 어느 때 보다 절실했다.

혈연관계에 대한 주관적 믿음을 가지는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코넬&하트만, 1998; 박종일, 2006:284 재인용).

또한 에스니시티는 공통된 상징을 통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요구하고 표현함으로써 동일한 에스닉 정체성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에스니시티는 일방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F. Barth, 1969). 이러한 접근은 관계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다 커다란 집단의 부분적이고 종속된 것을 함축하게 된다. 모국으로부터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 주류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직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에스니시티는 다른 집단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공통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주관적으로 동일시된 집단을 의미하며, 특히 지배집단이나 주류사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종속화되고 단편화된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 규정된다(김기홍, 1995: 5).

더구나 '에스니시티'는 출신배경·언어·종교·전통 민속 음악·거주지 등 객관적 지표와 정치적 관계, 특정집단의 제도에 대한 충성 등 사회구조적 측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이한 의식(ritual) 등 심리적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E. F. Brogatta, 1992: 575).

이를 종합해 "에스니시티는 주류 집단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혈연·인종·종족 등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고, 주관적 인식으로 동일시되며 특히 주류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으로 종속화되고 단편화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기홍, 1995: 5).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에스니시티'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된다. 역사적 연원이나 공유하는 문화적 특성 뿐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변화로 형성되는 집단을 연구하는 데도 종종 활용된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한국의 동남아노동자'처럼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집단들의 경우처럼 지구화된 맥락에서 정치적·경제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 집단을 한꺼번에 통칭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종일, 2006: 284).

에스니시티의 이론적 관점이 갖는 장점은 첫째, ‘인종’의 미약한 과학적 근거를 넘어서고 인종이 함의하는 우생학적 우열과 차별을 배제할 뿐 아니라 인종이 가지는 차별주의의 정치적 색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 혹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지분을 가지는 포괄적 관계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으로서 이뤄지는 시민적 민족형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셋째, 인종·종족·민족을 포괄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기초개념으로서 에스니시티를 상정해 볼 수 있다(박종일, 2006:284~285).

에스니시티에 대한 인식은 결혼을 계기로 이주한 뒤 문화적 적응을 거쳐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국내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하는데도 유용성을 갖는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독특한 맥락을 갖고 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나라의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이들이 한국의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주류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떠한 문화적 정체성과 개인적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바로 에스니시티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에스니시티의 시각이 갖는 유용성이 있지만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음 <표 3-2>의 이민이론의 구도를 통해 잘 드러난다(A. Portes & R. L. Bach, 1985: 335).

〈표 3-2〉 이민에 대한 이론

영역	정통	비정통		
		A	B	C
이민의 기원	Push-Pull			
이민흐름 안정도				
이민노동의 사용				
개별적 경제이동 결정요소			(ethnic enclave)	
사회문화적 적응		ethnicity	ethnicity	

즉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진전되고 있지만 기존에는 에스니시티를 특성의 집단을 위한 집합적 상승을 위한 도구로 보거나 아니면 반향적 형태로서의 에스니시티에 주목했다. 실제로 이 같은 면이 부각되면서 에스니시티 이론은 이민이론에서 비정통적인 것으로 분류되거나 다문화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자연스럽게 배제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다문화사회 혹은 인정과 재분배를 위한 정치가 지속적 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식과 이론적인 틀은 재평가돼야 한다.

에스니시티 이론에 근거해 다문화사회를 보다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안으로 유형화도 가능하다.

에스니시티의 관점에 기초한 유형화는 정치나 법, 가족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사회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차원이나 개인적 정체성과 지향성을 포함하는 사회관계적 차원을 교차해서 세분화할 수 있다. 33)

33) 이러한 유형화는 앞에서 Berry가 통합형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설명하는 방식과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Berry의 경우 구분은 횡축으로 정체성유지, 종축으로 주 사회에 대한 참여를 위한 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의 행위, 즉 미시적인 부분인 사회관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제도나 시스템 등 거시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Berry의

즉 사회구조적 측면을 종축으로 놓고 사회관계적 측면을 횡축으로 해서 교차하면 보다 명확히 이민자나 이주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 3-2] 와 같이 유형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³⁴⁾

[그림 3-2] 에스니시티에 기초한 유형화

		사 회 관 계 적 측 면	
		이 화	동 화
사 회 구 조 적 측 면	평 등 화	유형 2 : 평등 - 이화형	유형 1 : 평등 - 동화형
	계 층 화	유형 4 : 계층 - 이화형	유형 3 : 계층 - 동화형

즉, ‘평등-동화형’, ‘평등-이화형’, ‘계층-동화형’, ‘계층-이화형’이다. 여기에서 첫째, 평등-동화형은 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 동화를 지향하고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평등한 조건을 갖춰 주류 사회에 완전히 수용된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평등-이화형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 하면서 주류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반해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같

경우 사회 구조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유형화이다 보니 과연 그와 같은 통합을 이뤄가는 방법론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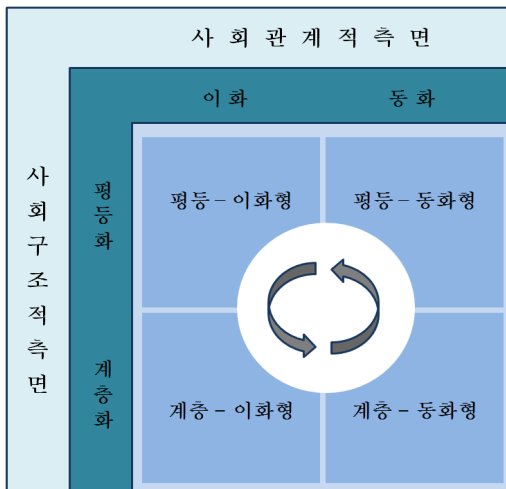
34) 유형화(typology)는 이민자나 이주민 등 에스닉집단이 적응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실태와 차후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유용한 접근방식이다. 유형화를 할 때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두 차원이 있다. 우선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속성을 구분하는 지표 를 통해 제대로 분석대상을 구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구분된 범주가 상호배타적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범주는 분석대상을 얼마나 포괄해 설명하 는가 하는 분석도구로서 효용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속성을 단순화 해 대상자를 특정공간에 위치시켜 봄으로써 질적인 대상을 체계적이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다. 통계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측면을 이해하고 분석대상의 상호관 계 뿐 아니라 변화상을 예측해 보는데도 유리하다(A. H. Barton & P. F. Lazarsfeld, 1993: 117~157; E. A. Tiryakian, 1968; 김기홍, 2005).

은 정도의 법적·정치적 지위를 갖게 된다. 셋째, 계층-동화형은 주류사회의 가치를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차별을 받는 상태다. 넷째, 계층-이화형은 지향성 면에서 자신이 모국으로부터 취득한 가치 등을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류사회의 정치적·법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제돼 차별적이고 고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유형화를 통해 에스닉집단을 분석할 경우 현재의 실태 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을 거쳐 다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에스닉 집단은 사회관계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조건에 따라 위치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정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림 3-3] 과 같이 에스닉시티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소수자로서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데도 매우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림 3-3] 에스닉시티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제2절 농촌 다문화가족과 지속가능성

오는 2018년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9%에 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의 경우에는 더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에 이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7만4,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에서 3.2%에 달하고, 여성농가인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인 비중은 6.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70% 이상이 35세미만의 젊은 층들로, 이들은 50%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져 농업·농촌을 지탱할 핵심 인력으로 부상할 뿐 아니라 이들이 낳은 자녀가 19세 미만 농가인구 중에 약 49%를 차지하면서 다문화사회가 확고히 정착될 것으로 봤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김기홍, 2006: 185).

다문화사회는 하나의 역사적 흐름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다문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정립에서 시작된다.

1. 성공적인 적응에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돼 1990년대 초 본격화된 다문화사회에 대한 그간의 논의와 대책은 이질적인 타자를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생소한 국내의 문화적 조건에 적응시킬 것인가, 즉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의 일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에 진입하면 일률적으로 우리말과 글을 알려주

고 음식 만들기와 예절교육 등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간의 대응방식을 잘 보여준다. 즉 다문화사회를 염두에 둔 각종 정책도 어떻게 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겨냥한 노력이라기보다 동화주의의 연장선상이다. 이 같은 관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과 지향성, 즉 에스닉 집단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우리 문화의 전파과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성공적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말을 잘 하고, 한국음식을 잘 만들며,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이뤄진 다문화 정책은 일부 성공적인 스타를 발굴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발을 딛고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투쟁하며 자신을 찾고 삶을 주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공간적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도시이든 농촌이든 지역적 공간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요구된다.³⁵⁾ 이를 위해 적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논의과정을 알아보고 적응을 바탕으로 공간·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과정, 즉 정착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면서도 동화주의를 암묵적으로 실천하는 연구나 정책은 그간 적응과 정착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적응에 정착의 의미까지 포함시켜놓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응’과 ‘정착’을 구분할 뿐 아니라 적응을 ‘시간적 속성’으로 놓고 정착을 ‘시간+공간적 속성’으로 파악함으로써 다문화현상으로서의 정착을

35)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이제는 다문화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어 권한과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중앙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동아일보, 2011년 7월 20일자).

적응보다 한 단계 진척된 개념으로 보고 설명을 시도코자 한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적응(適應)’은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즉 ‘개체가 환경에 대해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적응(adjustment)’과 ‘개체가 환경적 조건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적응(adaptation)’이다.³⁶⁾ 이러한 ‘적응’은 다문화사회를 논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즉 기존에 자신이 익숙했던 조건에서 생소한 환경으로 옮겨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응에 대한 설명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다. 베이커는 ‘적응’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이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했다(Baker, 1991). 김슨은 ‘두 문화 간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로서, 정치·예술·기술·언어·종교·사회제도의 변화는 물론 대인관계와 심리 내적인 변화’를 뜻하는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접근했다(Gibson, 2001; 김정훈, 2010:3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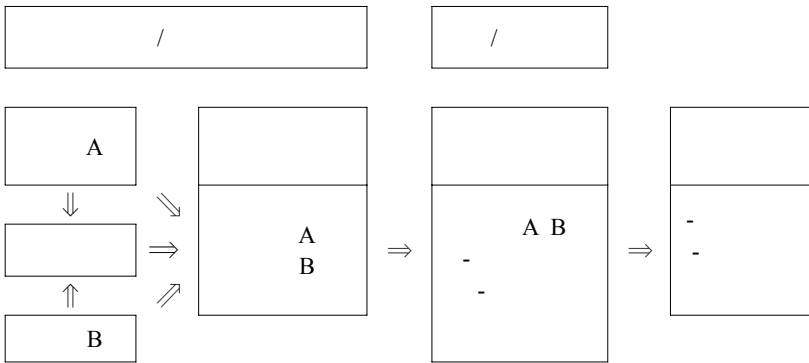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서로 다른 문화체계의 접촉으로 문화요소가 전파되어 새로운 양식의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어떤 형태의 문화라도 진공상태에서 완전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서 소산(所産)과정을 거쳐 나타나고, 이러한 문화는 이질적인 문화와 접촉하며 유사성을 더해간다는 것이다. 적응과정에 일찍이 주목한 학자로는 고든이 있다. 고든에 따르면 이주자의 경우 7단계에 걸쳐 기존사회 일원으로 합치되는 것도 적응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베리도 적응과정을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리는 유형화를 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적응과정은 일률적인 형태의 정형화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와 개인의 욕구·노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했다(Berry, 2002). 베리의 문화적응 이

36) 본 정의는 인터넷 사전들을 통해 발췌한 것으로, 영어 표기를 통해 적응의 차원이 미묘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우선 ‘adjustment’는 상황에 대해 개체가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고, ‘adaptation’은 생소한 환경에 육체적으로 맞춰 생존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베리는 접촉이전, 접촉, 갈등, 위기, 적응의 다섯 단계에서 문화적·행동적 변화를 거쳐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와 같은 적응유형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3-4] 베리의 문화적응 과정에 대한 도식화



: Berry(2002:20)

말코빅과 맨더슨은 특히 이주자의 적응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다. 첫째, 상실 지향적(loss oriented)으로 이주 후에도 거주국가의 삶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다. 둘째, 양가적(ambivalent)으로서, 이는 이주로 인한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을 말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으로서 이민 후에 얻게 되는 이익이 이민으로 인한 불이익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적응이란 이주 전 사회적 불평등, 이민지원, 거주국의 사회자본과 사회적 압박 등의 복합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자의 적응유형은 사회계층보다 이주자의 꿈이나 목표달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Markovic & Manderson, 2000; 김정훈, 2010: 39~40 재인용).

국내에서도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논의는 ‘적응’을 주제로 한 예가 적지 않다. 김현숙의 적응을 둘러싼 선행연구

의 경우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제고, 문화적 차이해소, 스트레스 해소, 연령·연령차이·결혼기간·자녀수 등 인구학적 변인과 학력·소득 등 사회경제학적 변인, 가족형태·배우자의 지지 등 가족변수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현숙, 2010: 135~159). 이처럼 적응을 주제로 한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변수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통해 국내의 주류사회로 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동화주의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소수자의 정체성이나 지향성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응과정에서 더 나아가 정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착(定着, settlement)’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으로 정의된다. 정착은 초국가적 이주의 시대에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초국가적 이주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형성 내지 정착과정은 뚜렷한 공간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습 등(Jessop et al., 2008)은 TPSN차원의 공간적 접근을 제시한다(최병두 외, 2011: 60~92). TPSN는 territory(영역), place(장소), scale(스케일), network(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즉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관계는 ①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역 ②관계들을 국지화 및 지리적 뿌리내림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장소 ③수직적으로 계층화된 차별화를 통해 나타나는 스케일 ④연결성과 결절점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등 네차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Jessop 외, 2008; 최병두 외, 2011: 75). 이는 〈표 3-3〉과 같다.

〈표 3-3〉 사회 공간적 관계의 네 가지 핵심적 차원들

사회 공간적 관계의 차원	사회 공간적 구조화의 원리	사회 공간적 관계의 패턴	이주와 정착의 과정
장소	,	.	.
	,	.	.
	,	.	.
	,	.	.
영역	,	.	.
	,	.	.
	,	.	.
	,	.	.
네트워크	,	.	.
	,	.	.
	,	.	.
	,	.	.
	,	.	.
스케일	,	.	.
	,	.	.
	,	.	.
	,	.	.
	,	.	.

제습의 구분은 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해갈지의 방향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는 적응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자조집단의 형성과 지지망의 확대를 체험하는 곳이며, 또한 문화적 차이와 편견으로 갈등의 장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는 가까이에서는 개인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 조직과 단체는 물론 본국 가족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모색되는 곳이기도 하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머무는 지역은 이제 더 이상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 연계돼 있는 개방적인 곳이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역 차원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작은 실천이 지구적인 결과도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을 결혼이주여성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지역은 탈영토화된 시각에서 정착을 도모 하는 공간이다.³⁷⁾ 김

혜순은 지역밀착 정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에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동시에 거주지역이 결정되고 대부분이 가족 지향적이고 지역친화적일 밖에 없다는 것이다(2008: 66).

이런 지역사회에서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정에 대해 이형하는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즉 자기성장주도형, 현실안주형, 유동형, 사회적 지원기대형이다(이형하, 2010, 182~194).³⁸⁾ 이렇게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체험하며 정착해 가는 과정에 대한 유형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 각종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적응을 유도하

37)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여성을 ‘이주’냐, ‘이민’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래 ‘이민’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가 간 이동으로, 출신국에서 목적국가로 이동한 뒤 보통 영구거주를 목표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거주지를 옮겨가는 다양한 현상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이민’까지 포함한다. 즉 특정한 목적을 갖고 거주지를 국내든 국외든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목적국가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한다는 의미는 희박하다. 따라서 국내에 결혼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여성을 ‘이주’냐, ‘이민’이냐 어느 쪽에 맞춰 볼 것인가는 가치판단과 관련된 문제다. 다분히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수박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을 ‘이민’보다 ‘이주’에 초점을 맞춰 설명코자 한다. 이유는 국제결혼 한 외국인여성들의 경우 사고는 탈 영토화된 관점에서 정체성과 지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국제화된 시각을 갖고 삶의 기회를 모색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족,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지구화가 강화되면서 공존 공생의 생존방식은 탈 영토화된 관점에서의 활동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38) 여기에서 ‘자기성장주도형’은 국제결혼을 주도적으로 선택했고, 결혼 후 부딪히는 현실문제도 많지 않고 지역사회활동 참여도 단순 생계형 이상의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현실안주형’은 국제결혼을 주도적으로 선택했고 결혼 후 부딪히는 현실문제도 많지 않으며 안정적 측면에서 현실을 접근한다.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남편과 시댁식구, 원가족, 자조집단, 직장동료와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많고 사회적 지지내용도 다양하지만 농촌이라는 지역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지속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게 바라보는 유형이다. ‘유동형’은 국제결혼을 미온적인 태도로 접근했고 결혼 후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활발한 상태가 아니며 부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수준이 불충분하며 지속적인 사회활동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가족에 의지하는 수준이 높아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는 지역적인 한계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 낮은 기대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사회적 지원 기대형’은 국제결혼을 부득이하게 선택했고, 결혼 후 부딪히는 문제도 많다. 지역사회 활동참여도 단순 생계형 수준에 머물고 지역사회 참여활동도 부분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더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남편, 시댁식구, 원가족, 자조집단, 직장동료,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적고 사회적 지지의 내용역시 빈약하며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증폭작용을 해 지역사회 활동참여가 어렵다. 때문에 공적 지원체계에 대한 기대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층적 수준에서 높은 기대로 나타나는 유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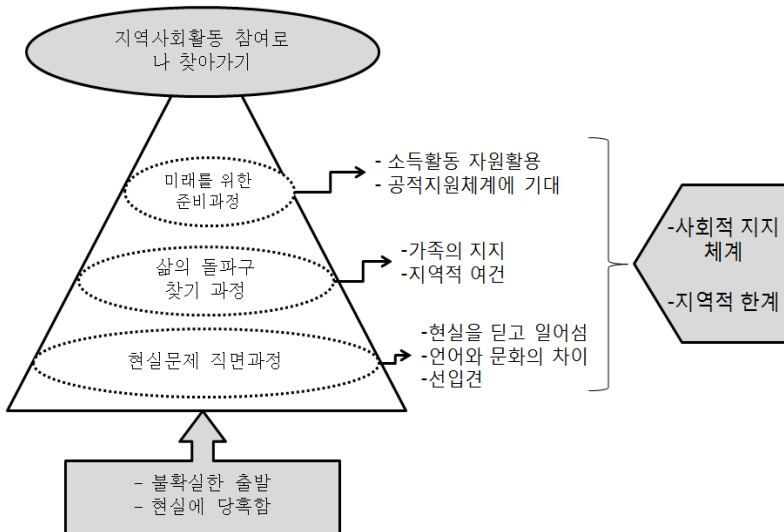
는 동화주의적 접근보다 훨씬 다문화사회의 본모습에 충실한 접근이다.

인간이 지역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가족의 범주를 초월해 관계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족으로부터 얻기 어려운 인간은 가족 이외의 누군가와 접촉하고 관계를 하고 신뢰를 형성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정착은 결국 현실에 대한 자기발견과 신뢰와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문제를 극복하면서 사회활동참여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형하는 이에 대해 그 과정을 [그림 3-5]로 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적응과 함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며 지속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성공적인 정착’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부부관계는 물론, 여타의 가족관계에서 개인적·가족적으로 화목하며,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정체성 유지 및 자아실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림 3-5]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생활경험 과정



2. 다문화가족과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저출산·고령화와 연결시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식상하면서도 새로운 측면이 있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이 다각도로 지적되면서도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은 저출산·고령화에 일정정도 기여를 한다고 당연시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식상한 측면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저출산·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를 검증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인간의 도구화 자체에 대한 언급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민청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그 관련성에 대해 논쟁을 피하거나 과학적 접근을 유보하는 것은 고령화를 둘러싼 접근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살펴보면 이미 정형화된 결혼이주여성과 저출산·고령화 논쟁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그 논의의 출발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는 이민의 출산형태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이민 등을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출산율이 본국보다 낮게 나타난다. 즉, 국제이동자는 이동지역에서 적응이 쉽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해 출산을 연기함으로써 출산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UN, 1956; 이삼식 외, 2007; 117). 또한 출산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국제이동자가 대부분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부부인 경우가 많아 출산수준이 높은 경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표 3-4〉 일부 국가의 인종·국적별 출산율 차이³⁹⁾

(:)

구 분	합 계 출 산 율(TFR)				순이동률 %
	전 체	인 종 별			
미 국	·	1.7,	3.0,	2.4(2003)	3.10('07)
	2.1('07) ·	3.51,	2.26,	1.57	
	2.0('03) *	10		2.86 >	
			2.32		
영 국	1.74('06) ·	1.67,	2.21,		2.18('05)
		·	4.90(1996)		
스위스	1.44('07) ·	1.34,	2.41,		3.58('05)
		1.91(1997)			
독 일	1.37('06) ·	1.39,	2.40(1996)		2.18('05)
이탈리아	1.33('06) ·	1.26,	2.14,	2.60,	2.07('05)
		3.30,	3.40(1999)		

이는 이동 후 일정기간 미뤄왔던 결혼 또는 출산을 함으로써 비이동 인구보다 출산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삼식 외는 이를 통해 OECD 국가의 경우 이민자의 출산력이 비이민자의 출산력보다 높으며 이는 이민자가 이민 전에 속해있던 사회의 출산 행태를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삼식 외, 2007: 118~11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에 의해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다른 나라와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시작된 특징이 있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은 농촌 노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고유특징을 강화하고 있다(임형백 외, 2009; 임형백, 2009).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계층이 저 발전된 국가에서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은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다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전개과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비대칭성이 강한 양상을 보이며 다문화사회로 접어

39) 이 표는 이삼식 외가 정리한 것이다. <http://migrationinformation.org/Resource>,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http://paa2007.princeton.edu/download.aspx?submissionId=70869>를 참고 정리한 것을 옮긴 것이다.

들고 있어 구별된다.⁴⁰⁾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접어든 것은 정부정책에서 기인한다. 최종렬 외에 따르면 정부가 중심이 된 다문화정책의 경우는 이주여성을 통해 무너진 한국의 가부장적 핵가족제도를 지탱하는 하나의 방안이었다.⁴¹⁾ 또한 국제적 인권문제와 관련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핵심에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 줄 인적자원으로 이주여성을 이용하려는 전략도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반이주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나서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빌어 외국인 여성의 완전이주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²⁾

〈표 3-5〉 농촌거주인·농림어업인과 외국여성 혼인비율

연도	총국제결혼건수 (A)	농촌국제결혼 건수(B)	농림어업인 국제결혼건수(C)	구성비(%)	
				B/A	C/B
2006	30,208	8,746	3,525	28.95	40.30
2007	28,580	8,016	3,171	28.05	39.56
2008	28,163	7,853	2,472	27.88	31.48
2009	25,142	6,839	1,987	27.20	29.05
2010	26,274	7,219	2,023	27.47	28.02

40) 양순미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시원을 1990년대 초반 농촌 후계자들의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결혼에서 찾으며,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형성된데다 다문화를 인식하는 관점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다문화를 ‘문화적 격차’나 ‘적응’의 차원으로만 바라볼 뿐 ‘개발가능한 자원적 가치’나 ‘문화산업화 차원’으로의 인식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농민신문 3월18일자 15면).

4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 해 줄 영웅’, ‘돈 때문에 팔려온 불쌍한 여자’, ‘한국남성의 성적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인신매매성 결혼을 한 여자’ 등으로,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영웅’ ‘희생자’ ‘성상품’으로 전형화되고 있다(최종렬 외, 2008: 149~151). 아울러 언론에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2005~2006년 경이다.

42) 1998년 국적법을 개정할 바 있는 정부는 2004년 결혼이주여성 귀화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법을 다시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한국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하는지 아니면 한국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과 한국거주 1년이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충족되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 귀화요건(최소 5년 한국 거주 및 능숙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 등)에 비해 훨씬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최종렬 외, 2008:155).

이러한 양상은 농촌지역에서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농촌에서 결혼하는 남성들의 30~40%가 결혼이주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농촌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인구구성면에서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농림수산물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5%, 2010년 1.8%, 2015년 3.7%, 2020년에는 6.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19세 미만 농가인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2.5%에서 2020년에는 24.5~4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1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5년 후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24.5%를 차지하고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절반 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표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이 농업에서의 역할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향후 농가인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표 3-6〉 결혼이주여성의 추정 출산율과 비중

구 분	전체 농가인구에서 이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여성농가인구에서 이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19세 미만 농가인구에서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1명 출산)	(2명 출산)
2005	0.3	0.5	1.3	2.5
2010	0.9	1.8	7.5	15.0
2015	1.9	3.7	16.0	32.0
2020	3.2	6.2	24.5	49.0

2010년 발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산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김승권 외, 2010).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은 평균 0.9명으로, 농촌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은 1.1명이고 도시로 분류되는 동지역에서는

0.8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자녀수는 현존 자녀수와 추가희망자녀수를 더한 기대자녀수를 통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표 3-7〉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현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구분	현존자녀수 분포					평균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수)	현존자녀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39.3	38.4	18.2	4.1	100.0(120 ,844)	0.9
동 지역	43.1	37.2	16.6	3.1	100.0(86 ,485)	0.8
읍·면 지역	29.7	41.4	22.3	6.6	100.0(34 ,359)	1.1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38.3	39.0	18.6	4.0	100.0(110 ,722)	0.9
동 지역	42.2	38.0	16.9	2.9	100.0(77 ,342)	0.8
읍·면 지역	29.2	41.5	22.6	6.6	100.0(33,380)	1.1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50.3	31.5	13.9	4.3	100.0(10,122)	0.7
동 지역	51.0	30.8	14.0	4.2	100.0(9,143)	0.7
읍·면 지역	43.9	38.2	12.7	5.2	100.0(979)	0.8

현 배우자의 전체 기대자녀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기대자녀수는 1.7명이고 동 지역 1.3명이다. 이 수치는 실태조사 시점인 2009년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을 보면 의미를 갖는다.⁴³⁾ 이 정도의 출산율은 앞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예측치를 근거로 향후 19세 미만 농가인구 중 다문화가족 출신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예측하게 한다.

43)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은 2000부터 급속히 떨어져 2009년 가장 낮은 1.09명을 기록했다. 더구나 이 수치와 다문화가족여성들의 기대자녀수를 비교하면 결혼이주여성 유입을 통한 인구증대 전략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 같은 인구증대 전략을 갖고 정책의 성공을 평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표 3-8〉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현 배우자와의 기대자녀수

(: %)			
구분	평균 현존자녀수	평균 추가희망자녀수	기대 자녀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0.9	0.5	1.4
동 지역	0.8	0.5	1.3
읍·면 지역	1.1	0.6	1.7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0.9	0.5	1.4
동 지역	0.8	0.5	1.3
읍·면 지역	1.1	0.6	1.7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0.7	0.5	1.2
동 지역	0.5	1.2	0.7
읍·면 지역	0.8	0.4	1.2

더욱이 다문화가족의 탄생은 농촌마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은 우리나라 농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이다. 보통 마을은 30여 가구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중 2~3가구에서 5~6가구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될 경우 마을은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계 등으로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⁴⁴⁾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실제로 현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은 평균 0.9명에 불과하다. 이는 본국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다는 것이다. 당초 저 발전국에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정부의 전략대로라면 출산율이 본국의 비슷한 연령대의 정도는 아니지만 현 수준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44) 농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도시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어 다문화가족이 농촌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도시와 크게 다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이 존재함으로써 마을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인구내파(population impuls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양적·질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 자체로 새로운 방법론을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 둔다.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산 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남편과의 나이차, 남편과 시부모의 강요, 경제적 여건, 신체적 상태, 스트레스, 질병, 가족갈등, 배우자부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수를 결정짓는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표 3-9〉 여성 결혼이민자의 성별, 지역, 혼인상태 및 출신국별 가족구성

(: %)

구분		본인	본인+ 자녀	부부	부부+ 본가 가족	부부+ 배우자 가족	부부+ 자녀	부부+ 자녀+ 본가가족	부부+자녀 +배우자 가족	계(수)
지역	동 지역	3.8	3.1	28.3	1.4	8.7	38.3	3.7	12.7	100.0 (76,947)
	읍·면 지역	1.5	2.3	17.2	1.4	13.8	32.2	4.0	27.5	100.0 (32,788)
혼인 상태	유배우	1.1	1.2	26.0	1.5	10.6	37.9	3.9	12.8	100.0 (105,646)
	사별	41.8	58.2	0.0	0.0	0.0	0.0	0.0	0.0	100.0 (981)
	이혼	57.7	42.3	0.0	0.0	0.0	0.0	0.0	0.0	100.0 (2,998)
출신국	중국 (조선족)	5.4	4.6	28.1	1.9	4.4	39.6	5.3	10.8	100.0 (32,208)
	중국 (한족)	3.4	1.9	34.3	1.1	11.7	33.0	2.9	11.6	100.0 (30,585)
	베트남	1.4	1.5	16.4	1.8	17.6	29.4	4.0	27.9	100.0 (23,423)
	필리핀	1.4	3.4	13.9	0.9	9.9	42.4	4.1	23.8	100.0 (7,899)
	몽골	1.5	1.9	22.9	0.7	11.7	40.9	3.0	17.3	100.0 (1,667)
	태국	1.1	2.7	21.8	0.8	8.7	39.3	1.7	24.0	100.0 (1,604)
	캄보디아	1.4	2.7	12.7	0.5	16.1	27.6	1.2	37.8	100.0 (2,418)
	일본	0.3	2.9	14.3	0.2	4.0	56.4	1.0	20.9	100.0 (4,611)
	북미·호주 ·서유럽	2.0	2.0	30.6	0.3	5.2	48.1	1.3	10.5	100.0 (1,377)
	기타	1.5	2.4	20.9	1.1	9.1	43.3	3.2	18.5	100.0 (3,943)

고령화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을 분석하는데 있어 의미를 갖는다. 즉 농촌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정착과정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부부이외 시부모 등과의 동거비율이 41.3%에 달하는 현상이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부부만의 동거가 아니라 시부모의 봉양 등을 위해 효 문화가 강한 베트남·캄보디아 여성들이 선호되는 추세도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다.

여성론자들은 출산율이나 고령화와 관련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이해하는 접근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자본노동이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성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는 분명 새로운 현상이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압도하는 현상으로, 여성들이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는 돌봄 노동, 즉 가사, 육아, 환자봉양 및 성적 봉사 등과 관련된 노동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미, 2006: 14~15; 황정미, 2009).⁴⁵⁾ 이주문제는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이주체제(migration regime), 이주제도(migration regulations), 개별이주자 등 세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주체제는 이주에 관여하는 각국의 법이나 제도의 속성, 송출국과 수용국의 관계, 이주자의 진입을 결정하는 조건과 거주, 고용에 관한 권리들을 규정하는 통치체제를 의미한다.

이주제도는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국가기구와 중개업자, 비공

45) 김현미에 따르면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교부가가치 이윤이 창출되는 영역에만 투자한다는 경제논리로 기존에 육아나 보육, 교육, 노인돌보기 등에 쓰이던 공공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시켰고, 기업도 직원에 지급하던 각종 특별수당을 줄여나갔다. 기존 핵가족이 수행했던 ‘보호’의 역할이 침식되고 가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족의 위기’라는 것이다(Castles and Davidson, 2000). 특히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임금노동시장 진출이 많은 나라들의 경우 ‘돌봄노동의 공동화’를 매우기 위해 임금이 저렴한 다른 나라 여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가족구성권과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이주인력’으로 동원된다고 분석하고 있다(김현미, 2006: 14~15).

식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주산업의 규모가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고 유한 역사, 사회적 정체성, 자원조건에서 이주를 결정하는 개별이주자의 상황을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김현미, 2006: 16).

이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성주의 적 접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혜순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사 회의 가부장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불러들여진 것으로 이 기대와 요구는 이들을 법적·사회적 존재를 규정짓게 된다고 본다(2008: 59).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 족만들기,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이들에 대 한 복지적 시혜는 한국남성과 한국사회에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여성계의 지적은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의 가부장적 성격을 드러내는 핵 심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영옥, 2008). 젠더적 시각에 따른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엄격한 가부장제 가치의 실천자와 각 종 시혜정책의 수혜자로서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유지를 위한 도구적 존재, 한국사회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역할의 담당자로서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위치 지워진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종적 차별과 젠더적 차별의 대 상이 되는 이중의 타자일 뿐으로 간주된다(홍지아, 2010: 644~645).

하지만 여성주의나 젠더적 시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분석했 다기 보다는 다분히 기존체제에 대해 비판적 반성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주를 결정했으며, 이주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부족 하다. 실제로 김현미의 경우 젠더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별이주자의 특수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주 체제·이주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근무 외(2009)는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젠더적 관심사인 가부장제적 관점과 도구적 존재, 정책의 시혜자, 차별적 성역할의 담당자로 국한되는 이해의 방식이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⁴⁶⁾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저출산고령화’의 관련성을 이해할 때조차도 도구적·차별적 관점이나 여성주의에 고착된 접근보다 행위자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결국 에스닉 그룹으로서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족의 정착과정에서 가부장적 관점과 도구적 존재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어떻게 형성하고 활용하는가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길을 비로소 찾을 것이다.

3. 다문화가족과 사회자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 욕구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진보와 생존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의 행동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엄청난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러한 성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

46) 이근무 외는 국제결혼 한 국내 남성 배우자 10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 연구결과 결혼 동기는 도구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후 동업자관계를 거쳐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가치의 비동등성에 따라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며,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이나 도구성까지 강화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문화의 해체를 거쳐 배우자 문화와의 접점에서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디아스포라적 위치, 즉 융합된 형태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2009: 135~162).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해 채택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로 확장됐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환경·정치·경제·사회·문화의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확장된 개념으로써 정착됐다(이상화, 2008; 이수안, 2009:91~92 재인용).

이렇게 채택된 개념 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여러 각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보다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사실 최근에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발전’ 보다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국 다문화사회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각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기 때문에 도래한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성과 다문화사회’는 그 자체로 관련성이 매우 강하고 때문에 선택적 친화성이 높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반다문화주의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어떻게 기존의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구축할 것인가는 많은 나라에서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수안은 지속가능한 사회,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인류의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구성돼야 하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의 구성조건으로서 권력 추구적 무한경쟁 위주의 발전이 지양되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를 여성주의적 가치지향에서 찾기도 한다.⁴⁷⁾

47) 이수안은 무한경쟁적이고 투쟁적인 권력추구가 남성적 가치로서 공격성을 기초로 한다면 여성론자들이 사회구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시하는 여성주의적 가치는 보살핌과 안정성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대표된다는 것이다. 즉 무한경쟁은 형식적 규모의 경제로 이끌고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며 위험의 고조와 함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반면 지속가능한 사회는 안정적이며 위험하지 않으며 복지를 최소의 비용으로 담보할 수

하지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는 그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초점을 두고 모색할 때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⁴⁸⁾ 이행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를 통해 새로운 사회자본의 형성과 확대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체험, 문화적 차이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와의 단절과 배제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10: 18).

따라서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를 유지하고 가계를 계승하는 배타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의 동화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인정-재분배를 성취하는 양측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보다 가치 있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자본의 관점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접근할 경우 구조체계를 논하면서 배제됐던 개인을 부각시킬 수 있고, 제로섬-게임(zero sum-game)으로 인식되는 에스닉 그룹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혹은 다문화가족과 주류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관계와 협력, 참여로 실질적인 의미의 다문화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적 만족이 증시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2010: 91).

- 48) 사회자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 의미와 유사하게 거론한 것은 19세기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자발적인 시민의식, 단체구성 기술이 크게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자본이라는 말이 직접 거론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다. 하니판은 “사회자본을 ‘선의(善意), 동료의식, 사회공감, 사회적 교류’라고 보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Hanifan, 1920). 또한 라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통해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회에 대한 접근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Loury, 1977). 그라노베터는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 개인이 특별한 행위자들의 행동에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Granovetter, 1973). 이처럼 ‘사회자본’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이와 같은 관점은 오늘날 사회자본의 이론체계를 구성하는데 모두 중요한 기초가 됐다. 아울러 이 자본은 화폐나 귀금속, 에너지원 등과 같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지식·업무 경험·기술·문제해결능력 등 특정 사람에게 체화된 총체적인 특성인 인적자본과도 구별된다(김기홍, 2006).

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사회자본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관계가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수준에서 ‘자본’으로 매개될 뿐 아니라 관계자본으로 환원·전환되는 그 과정을 통해 관계양식을 분석하고 있다. 이 접근은 미시적 차원의 행위와 거시적 차원의 구조에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하는 차원으로 기존의 흐름과 구분된다. 관계의 구체성을 사회자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노력은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김기홍, 2006).

Granovetter(1973)를 비롯해 Bourdieu(1983, 1986), Coleman(1988), Burt(1992), Putnam(1993), Fukuyama (1995), Portes(1998), Woolcock(1998), Lin(2001a, 2001b), Narayan(2002) 등 많은 이론가들이 이러한 논의를 주도했고 그 계보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르디외(Bourdieu)와 콜만(Coleman)은 사회자본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부르디외는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나 상호면식이 있어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했다(Bourdieu, 1986: 248). 여기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상호면식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부분이다. 즉 면식과 얹은 일회성이 아니라 동질성과 계급의식, 아비투스(habitus)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콜만은 사회자본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이루기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Coleman, 1990: 32).

콜만에게 있어서 사회구조란 역할에 기초한 네트워크의 체계이다. 이

체계는 신뢰와 규범, 의무와 기대를 공유하는 집단이나 공동체 내에서 작용하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전유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Coleman, 1988: 94~121).

콜만은 모든 사람들은 연결돼 있어서 누구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신뢰와 강한 연대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야말로 사회자본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가족 친족 이웃과 같은 다양한 규모의 공동체 등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푸트남(Putnam)은 사회자본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쓰이는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규범·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가족주의와 같은 문화적 전통도 곧 사회자본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으로서의 교환은 자신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인적자본(human capital) 등이 추구하는 것과 지향성 면에서 구별이 된다.

특히 푸트남의 사회자본에 대한 견해는 기존에 브리디외나 콜만이 가졌던 사회자본의 지평을 넓히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⁴⁹⁾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떤 형태의 신뢰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느냐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을 배타적 형태에서 호혜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당수가 시부모를 모시고 부양하면서 효라

49) 이러한 맥락에서 푸트남은 ‘일반화된 호혜성(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 규범의 개념을 제시한다. 일반화된 호혜성 규범은 시민참여관계망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화된 호혜성에 의존하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보다 더 효율적인데, 이는 현금이 물물교환보다 더 효율적인 것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반화된 호혜성은 집합적 행위의 단초를 제공해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홍현미라, 2006: 69~70).

는 전통적 가치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 내지 공동체 구성의 단위로서 가족을 건전하게 지탱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이수안은 1980년대 이후 결혼이주가 확대되면서 농촌사회에서는 보살핌 노동과 활동을 이주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일방이 어느 일방을 관용하고 보살피는 사회가 아니라 상호관용하고 상호 보살피는 사회원리는 다문화사회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인데 이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약자이자 타자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잘 나타난다는 설명이다(이수안, 2010:108~109)

가족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결혼이주여성은 마을단위에서도 지도자로서, 혹은 마을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례가 주목된다. 마을 공동체가 해체된 가운데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경우 평균 연령이 대부분 70대에 육박하고 현재의 사회발전 흐름과의 격차 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차세대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차세대마저 계속된 탈농이촌으로 마을공동체를 맡아 끌고 갈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극소수는 농촌의 이러한 현실을 직시,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⁵⁰⁾

50)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사례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는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으로 경남 함안군 대산면 금천마을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박복순씨, 일본인으로 전북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오스키 사토미씨, 몽골출신으로 경기도 가족여성국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 아리옹씨, 몽골출신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의원 이 된 이라씨, 필리핀 출신으로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외사계에서 근무하는 아나벨 경장, 전남 목포 해경에 배치돼 배타적경제적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해남군 문화관광해설사로도 활동하는 중국조선족 김영옥씨, 경남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나르지자 두르다리에바씨와 베트남 출신의 당티화씨, 러시아 출신의 고려인 3세로 각국의 전통의상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모델이 된 충북 충주의 박스 베트라나씨, 어울림 텃밭을 만들어 다양한 나라의 채소를 재배한 뒤 판매해 일자리 창출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직은 뚜렷하게 대두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소모임을 통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물론 이런 소모임은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 구성원의 정착을 위한 발판의 역할에 머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주류사회에 소개함으로써 다양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모임은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와 지역을 결혼이주여성의 모국과 연결하면서 네트워크의 접촉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시키는 기회도 될 수 있다.⁵¹⁾

그럼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체성을 살려갈 수 있는 동일 민족 간의 네트워크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제한된 수준에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더구나 여전히 다문화가족 내부에서도 결혼파탄의 우려로 이러한 모임에 대해 부정적이고 전체 사회차원에서도 개인적 영역의 은밀한 부분에 대한 개입에 대한 반발 등으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근무는 보다 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과 같은 정서적 공동체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이러한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심리적 안정의 닻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복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근무, 2009).

김현미는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에 관한 논문에서 한국

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중국 한족 출신 송지위씨 등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51) 윤인진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가 개설한 베트남어 교실에 참여하는 한국인 남편들의 사례를 통해 베트남어를 배우는 한국인 남편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 보다 부부관계가 좋을 뿐 아니라 이들이 노후를 베트남에서 보낼 생각으로 베트남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국제결혼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이 단지 동남아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남성이 아내를 통해 동남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2008: 91).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이며, 향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적·경제적 지원을 확장해내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정책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006, 35).

또한 현재 지역이라는 공간을 두고 펼쳐지는 다문화사회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정국가 출신들이 지배적인 곳도 있지만, 여러 국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고유문화에다 한국문화를 접목하고 있다. 즉 3~4개국, 혹은 5~6개국의 문화가 접목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가 태동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옥은 이주여성들의 모국 센터로서의 ‘아이다마을’에 주목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천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아이다마을사업에 참여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국가·인종·언어의 차이를 넘어 실제로 전혀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다.⁵²⁾

마을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다마을을 통해서 이주여성들은 자조모임을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사회적 가족이 되어주는 친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인천여성의 전화, 2009a:23, 김영옥, 2010:44).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거나 예측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역단위에서 관계의 질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결국 사회자본의 변화, 즉 사회자본이

52) 김영옥은 ‘인천여성의전화’가 운영하는 아이다마을사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국가, 인종, 성별의 경계와 차이를 넘어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일구는 장을 만든다. 둘째, 아시아이주여성들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모국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다. 셋째, 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소통을 도움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살이를 돕는다. 넷째, 아이다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적, 심리적, 경제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인천여성의 전화, 2009:21; 김영옥, 2010: 43~44 재인용).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본래 관계에 기초해서 생겨나는 힘이고 공동체 유지의 원동력이 된다.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자본과 다문화사회의 관련성을 살펴본 박사학위 논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김정훈의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과 사회 적응’(2010)과 이진석의 ‘부산지역 화교의 연결망 변화와 사회자본화’(2009)’ 정도다.

이중 김정훈은 기존에 서구에서 이민자들이 이민국에서 적응하는데 있어 활용되는 사회적 연결망이 국내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어떻게 유용성이 있는가를 통계적 양적조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해 접근했다. 김정훈의 접근은 국내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가족들의 이민이 아니라 단신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형성된 다문화사회에서 그것도 역사적 연륜이 짧아 자체연결망 조차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적 여건에 무리하게 사회자본 이론에 맞춰 분석했다는 점에서 어색함을 드러낸다. 특히 사회자본의 논의를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 자원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자원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원주민들과의 호혜적 관계를 보지 못해 또 다른 적응양식의 한 단면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⁵³⁾ 또 이진석은 부산지역 화교 14명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해 화교들의 사회연결망의 변화와 사

53)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은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김정훈의 접근이 한계가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왔기 때문에 출신국에서 쌓아왔던 사회자본이 상실된 상태에서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를 형성해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강원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가정에서 시부모 봉양과 버거운 농사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고, 공공연하게 돈 주고 사왔다는 말을 배우자나 시부모에게서 듣는 사례도 있었다(김경희 외, 2009: 40).

회자본화 과정의 역동성을 살펴보고 적응과정을 유형화하는 것이었다. 즉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질적 타자 집단인 화교는 여전히 90% 이상이 대만 국적을 갖고 있지만 화교 2·3세대에서 더 나아가 4세대를 형성하며 한국을 더 이상 타향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결망 유형은 ‘강한 유대 안주형’, ‘제한적 유대 확장형’, ‘적극적 유대확장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 역시 에스닉 집단으로서 화교의 배타적인 사회자본에 초점을 맞춘 것에 지나지 않다. 호혜적 차원에 대한 고찰 없이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에스닉 집단으로서 화교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란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정착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관계하며 신뢰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적 활동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동안 논의나 정책방향이 적응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머물러 있었고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은 미담 정도로 취급된 게 사실이었다. 농촌 대상의 연구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라는 독특한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가는 방안이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자본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접근하는 것은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다. 사회자본 관점에서의 접근은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특징인 인간관계, 즉 가족·마을·지역사회 공동체의 자원을 결혼이주성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접목하고 그림으로써 상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고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며 예절을 배우도록 하는 차원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가는 방법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재정투입만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시각과도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일자리와 사회복지혜택을 둘러싸고서 내국인 간은 물론 세대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이미 반다문화주의가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재정투입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자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 적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징이나 마을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교육이 필요하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떻게 한국 내의 다양한 수준의 공간에서 어울리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와 가족, 마을주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4.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구성

동화주의 이후 대안으로 등장한 다문화주의 모델이 최근 경제위기에 다 일자리 부족, 복지예산의 고갈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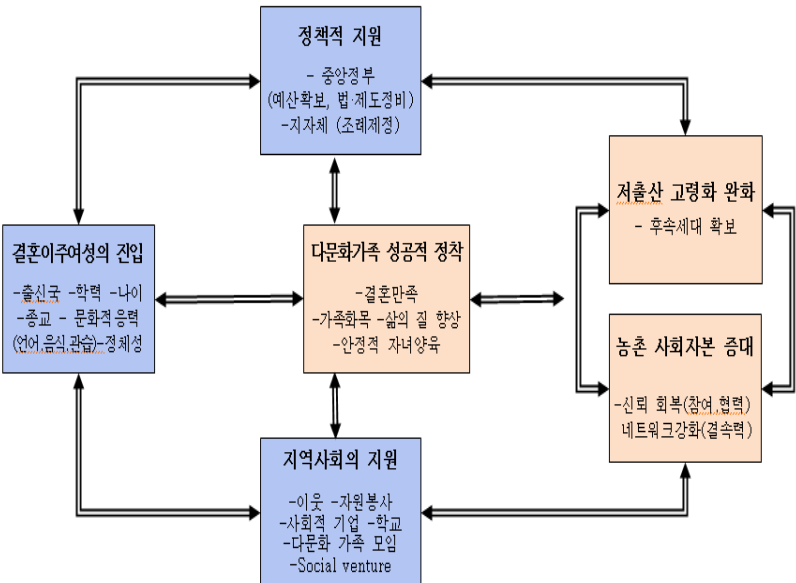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반다문화주의 모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양상이어서 서구식 갈등은 향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델구성’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다문화사회를 표방했지만 내용은 다문화 옷을 입힌 동화주의의 연속에 불과했다. 이는 여전히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여론에 따른 대중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에 초점을 둔 것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은 결혼이

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정책적 지원의 뒷받침 속에 지역사회가 중심을 잡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사회의 현안에 참여토록 이끄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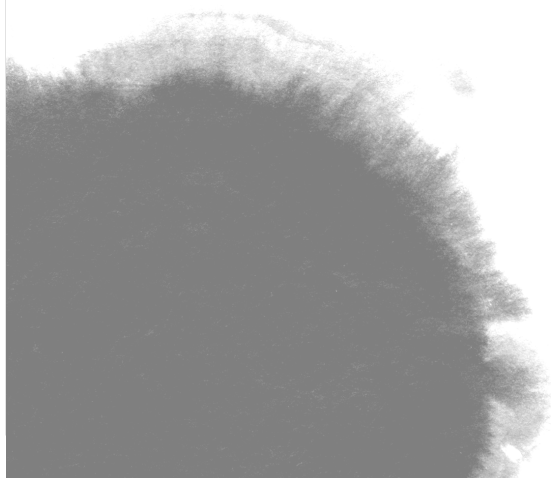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즉 현실적으로 가장 긴급한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결혼이주여성들로 인해 태동하는 다문화사회가 갖는 장점, 즉 사회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효과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이 곧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한 모델이 아닐까 한다. 모델의 구성은 다음 [그림 3-6] 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제Ⅴ장부터 이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한다.

[그림 3-6] 연구분석틀



4장

연구방법론



IV. 연구방법론

제1절 양적 접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농촌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완화와 사회자본 강화, 즉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춰 농촌 다문화가족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에 맞춰 적합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연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모델링을 위한 양질의 통계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더욱이 대표성이 있는 양질의 표본(sample)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어려운 과제다.

다행히 본 연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비교적 방대한 통계적 자료를 축적해 뒀다.

이 통계자료는 행안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2009년 5월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전체 15만 4,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현지에서 살고 있는 13만 1,000여명의 명단을 확인한 뒤 이중 7만 3,000여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확보한 자료이다.⁵⁴⁾

54)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2009년 조사를 거쳐 2010년 펴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5월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16만7,090명이었으나 이중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귀화한 한국인이나 외국인인 경우 등은 제외했다고 밝혀 여러 통계들과 다소 수치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조사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취업, 자녀양육, 건강,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등 다문화사회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김승권 외, 2010:1).

더구나 훈련된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자기기재식 조사법으로 자료를 확보했고, 국가승인통계(제11779호)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통계를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SPSS·SAS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함으로써 별도조사를 거쳐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통계적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물론 본 연구에서 양적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자료형태의 분석을 시도키로 했다.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경우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 농촌의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용은 전국적인 다문화 현상과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 형태다.

물론 도시화의 확산으로 농촌과 도시가 통합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으로 국한시켜 원자료를 재분류한 뒤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링’을 시도코자 했다.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일반적인 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적용했다. 즉 농촌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읍면지역을 말하고, 도시는 동지역으로 구분, 읍면지역에 대한 통계만 별도로 추출, 분석코자 했다.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연구함에 있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오늘날 다문화사회로 진전된 원인이 바로 농촌총각의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시작된 데다 농촌의 경우 인구가 도시보다 현격히 적은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갖는 의미는 도시지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구분해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행안안전부의 다문화가족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

3만 9,275명(23.5%), 경기 4만 4,760명(26.8%), 인천 1만 486명(6.3%)으로 수도권에만 9만 4,521명, 56.6%에 달해 지역적 집중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10: 104).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초점을 농촌으로 국한 한 뒤 향후 지역사회와 마을단위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을 밀착해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모든 항목의 변수를 사용하기보다 제한적인 변수만을 선정해 재분석하는 식으로 통계적 접근을 했다. 즉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주제가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연구인 만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는 변수, 예를 들면 국적·학력·연령·결혼기간·한국어능력·취업상태·생활수준 등의 인구학적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활용했다.

또한 분석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변수는 사실상 실태조사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과 저출산·고령화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있는 변수를 인구학적 변수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정부나 가족지원 등으로 제한해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과 관련된 변수는 〈표 5-6〉에 간략히 정리해 놓았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인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성공적인 정착,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별도의 조사가 필요했으나 기존 연구에서 많이 검토됐던 변수로 대체, 접근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일부 변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실제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대체한 것은 연구의 특성상 불가피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이러한 변수를 바탕으로 사용된 주요 분석으로는 우선 농촌 결혼이주

여성의 인구학적 통계에 대한 빈도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의 현재 자녀수와 출산의도, 자녀유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 analysis)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모델링을 위해 3단계로 경로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1단계로는 성공적 정착을 알아보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가족과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매개변수로 해서 결혼이주여성이 갖는 인구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봤다. 2단계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떻게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현재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봤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한 것으로 성공적인 정착, 즉 삶의 만족도를 높여 저출산 고령화 완화와 사회자본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자 했다. 물론 이 같은 연구모형은 제Ⅲ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그림 3-6]을 세분화해 접근한 것이다.

제2절 질적 접근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시도하는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구축을 위한 모델링은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조사가 아닌 2009년의 실태조사이기에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모델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계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접근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 접근은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갖는 다양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 단위 1곳을 집중적으로 살펴 보고자 했다. 현재 농촌의 읍·면 단위별로 결혼이주여성은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이를 정도로 분포돼 있다. 물론 지역적 여건에 따라 정착해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수는 편차가 큰 게 사실이다.

어떤 지역, 어떤 마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정착하는 공간은 곧 농촌의 어느 면 단위 한 마을이다. 글로벌 한 정치·경제시스템의 차원에서, 즉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자유화라는 국제적 맥락에서 이주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착을 해야 하는 공간은 그야말로 전지구적 양상과는 거리가 먼 지역적 공간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 그것도 어떤 면 단위의 어느 한 마을에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와 정착했는지, 그들이 스스로의 정착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계적 접근으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맥락에서 자녀출산을 받아들이며 자녀양육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많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우리나라 농촌의 한 마을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보통 알찬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적응훈련을 거치면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삶을 지탱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함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관계, 이웃과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모국과의 관계, 이주여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자녀출산과 양육, 사회자본의 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특정지역에 대한 일회적인 조사로서는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급

속히 재편되는 지역, 마을을 횡단적으로는 물론이고 종단적으로도 관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농촌의 특성을 잘 보여주면서도 변화해 가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기에 적합한 특정 지역, 면(面)을 선정했다.⁵⁵⁾

물론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진행되는 다문화사회의 모든 현상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연속성을 갖고서 다문화사회로 재편되는 향후 농촌의 모습을 종합적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해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우선 연구대상지로서의 적절성과 접근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 우선 ○○도내에서 ○○시 ○○면, △△군 △△면, ××군 ××면 등 3곳에 사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 다문화연구의 적합성과 접근 용이성, 효용성 등을 파악해 5월16일부터 8월 초까지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농협다문화대학을 통해 20여명 안팎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인 ○○시 ○○면을 최적지로 판단했다. 더욱이 ○○면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국적이 8~9개국으로 다양하고 거주 기간도 18년에서 최근 2~3개월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해 있어 다문화가족의 정착실태를 살펴보기에도 적합한 것으로 관찰됐다. 무엇보다 사과주산지로서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과 농공단지 및 아파트 단지 등도 인근에 조성돼 있는 등 도시의 특성도 병존하는 곳이다. 앞으로 이러한 특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과정에서 어떤 관련성을 보일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55) 횡단적(橫斷的, cross-sectional)연구란, 조사 등을 할 때 현재 시점에서 사회를 절단하고 그 절단면에서 보여 지는 사회적 여러 인자 사이의 관련성이라든가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특정사회에 대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어서 변화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종단적 연구라고 한다. 따라서 종단적 접근을 시간적 분석법이라고 한다면, 횡단적 연구는 공간적 분석법이라고 한다(김응렬, 2001: 137). 본 연구에서는 우선 횡단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진행되는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자녀출산양육, 네트워크 구축 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차후 계속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가능성을 종단적으로도 파악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질적 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최소한의 주제로 구성된 비 구조화된 면접표에 따라 진행됐다. 질적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의 경우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이는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심층면접 과정에서 특별한 순서가 있거나 반드시 반영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 나에게 결혼은
 - 국제결혼의 동기,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실재 등
- 한국에서의 어려움은
 - 언어, 음식, 종교·문화적 차이, 농촌이라는 특수성 등
- 결혼 후 가족관계는
 - 남편·시부모·친척에 대한 신뢰, 자녀 양육과 기대 등
- 결혼 후 모국의 가족과 관계는
 - 친정부모·형제자매·친척과의 신뢰와 관계정도 등
- 현재 이웃사회적 관계는
 - 이웃 주민에 대한 신뢰, 마을 학교·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
- 다문화가족 간의 관계는
 - 결혼이주여성 간의 교제, 신뢰정도, 네트워크 등
- 자녀수에 대한 만족은
 - 본인이 원하는 자녀수와 출산계획
 -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 고국에서의 평균 자녀수 등
-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실태는
 - 편견·차별·배제의 경험, 본인의 대응방식 등
- 사회자본 확대 방안은
 - 신뢰제고와 지역사회 참여

-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
-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는
 -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신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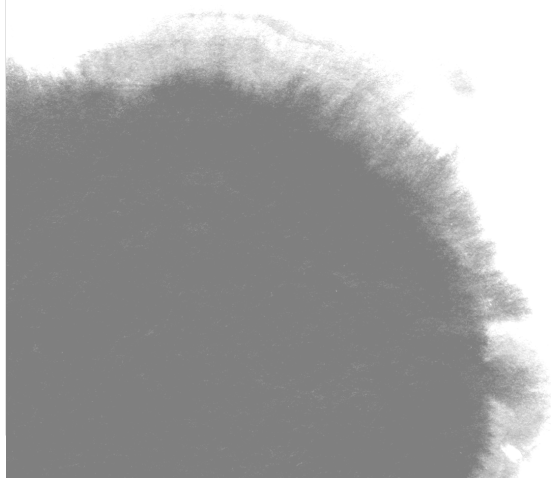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질적연구는 통계적 접근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심층면접(deep interview)에 의해 파악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면접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담아 현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통계적 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이다.⁵⁶⁾ 본 연구에서의 질적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5월16일부터 7월말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면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2명을 만나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사항과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사항, 본국의 부모와 형제와 관계, 직업경력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앞에서 기술한 핵심질문으로 접근해갔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전부 녹취됐고 그 후 모든 내용에 대해 필사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한 뒤 2차 면접에 들어갔다. 2단계에서는 1차 인터뷰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결혼이주여성 20으로 대상을 좁힌 뒤 다문화여성 인터뷰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전문 면접자에게 의뢰, 2011년 8월 16~31일 2차 추가 면접조사를 했다.

56) 심층면담은 피면접자의 삶과 경험, 특별한 사정을 그들의 언어와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연구자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만남(encounters)을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인간적인 대화나 상황의 이해에서 점차 깊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초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밟게 된다(조영달, 2005: 113~141).

5장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분석



V.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분석

제1 절 기초통계분석

다음은 전국의 농촌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의 현황과약을 하고자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이주자 2만2,788명의 국적은 베트남 9,056명(39.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 4,928명(21.63%), 필리핀 2,847명(12.49%)로 전체 5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중학교 6,682명(29.32%), 고등학교 8,807명(38.65%)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은 3,880명(17.03%), 대학원은 243명(1.07%)으로 20% 정도가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 이주자는 7,023명(30.82%)이었고, 과거 한국에서 취업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3,906명(17.14%), 한국으로 이주 후 현재까지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이주자는 1만1,438명(50.19%)에 달했다.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은 31.06년(± 9.12), 평균 결혼기간 5.83년(± 4.28)으로 조사됐고, 한국어 능력을 1:매우 서툴다, 2:서툰 편이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 잘한다고 구분해 조사한 결과 3.08(± 1.07)로 나타나 보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활수준은 0(최하층) ~ 10(최상층)으로 조사한 결과 3.95 ± 1.79 으로 조사돼 중산층 이하의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통계치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1〉 농촌 결혼이주여성 현황

구분		N (%)
국적	중국(조선족)	4928(21.63)
	중국(한족, 기타 민족)	2038(8.94)
	베트남	9056(39.74)
	필리핀	2847(12.49)
	일본	1523(6.68)
	대만	33(0.14)
	몽골	350(1.54)
	태국	521(2.29)
	캄보디아	928(4.07)
	우즈베키스탄	215(0.94)
	러시아	50(0.22)
	기타	299(1.31)
학력	무학	237(1.04)
	초등학교	2648(11.62)
	중학교	6682(29.32)
	고등학교	8807(38.65)
	대학	3880(17.03)
	대학원	243(1.07)
	무응답	291(1.28)
취업상태	현재 일하고 있음	7023(30.82)
	취업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없음	3906(17.14)
	지금까지 없음	11438(50.19)
	무응답	421(1.85)
전체		22788(100)
연령		31.06±9.12
결혼기간		5.83±4.28
한국어 능력		3.08±1.07
생활수준		3.95±1.79

Mean±S.D, N(%)
, 1 : 2 , 3 , 4 , 5
: 0() ~ 10()

제2절 실증분석

이 분석에서는 우선 전국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코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출산의도가 ‘있다’ ‘없다’, 현재 출산 여부 즉, ‘출산’과 ‘미출산’의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향후 출산 의도나 출산 여부와 같이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선형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Y_i)의 조건부 기댓값 $E(Y_i | x_i)$ 은 Y_i 가 1(관심범주: 향후 출산의도 있음, 현재 출산함)을 취할 확률 $\pi(x_i)$ 이기 때문에, 확률의 성질인 $0 \leq E(Y_i | x_i) \leq 1$ 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제약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E(Y_i | x_i) = x_i' \beta$ 이고, 특정한 독립변수들의 값 x_i 를 대입할 때 $E(Y_i | x_i) > 1$ 혹은 $E(Y_i | x_i) < 0$ 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확률에 대한 비합리적인 예측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P(Y_i = 1 | x_i)$ 의 적절한 변환을 통해서 우선 범위가 $-\infty$ 와 ∞ 이 되도록 하고, 확률 $P(Y_i = 1 | x_i)$ 을 다음과 같은 오즈(odds)로 변환한다.

$$\Omega(x_i) = \frac{P(Y_i = 1 | x_i)}{P(Y_i = 0 | x_i)} = \frac{P(Y_i = 1 | x_i)}{1 - P(Y_i = 1 | x_i)}.$$

여기서 오즈 $\Omega(x_i)$ 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확률에 대해 발생될 확률의 비율을 의미한다. 오즈 $\Omega(x_i)$ 의 범위는 $P(Y_i = 1 | x_i) = 0$ 일 때 0에서 $P(Y_i = 1 | x_i) = 1$ 일 때 ∞ 로 변하게 되므로 오즈의 범위는 $0 \leq \Omega \leq \infty$ 이 된다. 이때 오즈에 자연대수(natural logarithm)를

취하면 범위는 $-\infty$ 와 ∞ 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변환을 로짓변환 (logit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 이때 모형은 로짓에 대하여 선형이 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og_e \left[\frac{P(Y_i = 1 | x_i)}{1 - P(Y_i = 1 | x_i)} \right]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k X_{ki} = x_i' \beta \quad (1.1)$$

식 (1.1)을 $P(Y_i = 1 | x_i)$ 에 관하여 정리하면

$$\begin{aligned} P(Y_i = 1 | x_i) &= \frac{\exp(x_i' \beta)}{1 + \exp(x_i' \beta)} \\ &= \frac{\exp(\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1 + \exp(\beta_0 + \beta_1 X_{1i} + \dots + \beta_k X_{ki})} \end{aligned} \quad (1.2)$$

이 되고, 식 (1.2)를 로지스틱 반응함수 (logistic response function)이라고 한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은 선형회귀모형의 제한적인 가정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범주형을 취하는 경우 널리 사용된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의 함수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지 않고, 비선형관계로 가정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동일한 분산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한 오차항의 정규성이 가정되지 않는다. 독립변수들의 척도는 연속형, 이산형, 혹은 혼합형으로 구성될 수 있고 회귀계수의 추정에 최우추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대표본(Large sample)이 되어야 한다.

즉,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에는 선형회귀모형보다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종속변수의 구분을 설명할 수 있는 함수의 추정이다. 범주형 종속변수에 대하여 범주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들의 비선형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의 목적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고, 종속변수의 범주사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최종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는 각 범주에서 속할 확률의 추정 및 예측이다. 추정된 최종모형을 이용, 주어진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 혹은 예측을 하게 된다. 로지스틱회귀모형의 목적은 개별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대응되는 확률의 변화를 오즈비 변화를 통해서 평가하게 된다.

셋째는 범주에 대한 분류로서 주어진 독립변수들의 수준에서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을 비교하여 어떤 범주로 분류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향후 출산의도와 현재 출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성격에 맞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현재 자녀수는 셀 수 있는 가산형 자료(Count data)로서 일반적으로 포아송분포를 가정한다. 포아송회귀모형(Poisson regression model)에서는 종속변수를 포아송분포를 따르는 가산형 자료로 가정한다. 종속변수 Y (현재 자녀수)의 평균을 μ 라 하고, 독립변수를 X 라 할 때, 포아송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Y \sim \text{Poisson}(\mu) \\ \log \mu = \alpha + \beta x$$

위의 포아송회귀모형에서 평균 μ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

$$\mu = \exp(\alpha + \beta x) = e^{\alpha}(e^{\beta})^x. \quad (2.1)$$

위의 식 (2.1)에서 독립변수인 X 값이 1단위 증가하면 종속변수의 평균 μ 는 $\exp(\beta)$ 만큼 증가하므로 $x+1$ 일 때 Y (현재 자녀수)의 평균은 x 일 때의 평균에 $\exp(\beta)$ 배하여 구해진다. 만약 $\beta > 0$ 이면, 독립변수 X 가 증가함에 따라 Y (현재 자녀수)의 평균이 증가하는 반면, $\beta < 0$ 일 때는 반대로 감소하게 된다.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Odds Ratio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절편	1	3.599	0.266	183.723	<.0001			
국적	1	-0.098	0.161	0.368	0.544	0.907	0.662	1.243
	2	-0.022	0.163	0.018	0.894	0.979	0.711	1.347
	3	-0.216	0.157	1.902	0.168	0.806	0.592	1.095
	4	0.001	0.161	0.000	0.997	1.001	0.730	1.372
	5	1.351	0.179	57.124	<.0001	3.862	2.720	5.482
	6	0.714	0.513	1.942	0.164	2.043	0.748	5.577
	7	-0.332	0.201	2.736	0.098	0.717	0.484	1.063
	8	0.242	0.193	1.572	0.210	1.274	0.873	1.860
	9	-0.070	0.175	0.161	0.688	0.932	0.661	1.314
	10	-0.154	0.226	0.466	0.495	0.857	0.551	1.334
	11	0.054	0.378	0.020	0.887	1.055	0.503	2.213
나이	1	-0.076	0.004	464.971	<.0001	0.927	0.921	0.934
결혼기간	1	-0.275	0.009	1012.232	<.0001	0.759	0.747	0.772
학력	1	-0.399	0.252	2.518	0.113	0.671	0.410	1.098
	2	-0.386	0.192	4.046	0.044	0.680	0.466	0.990
	3	-0.278	0.187	2.196	0.138	0.758	0.525	1.094
	4	-0.209	0.185	1.272	0.259	0.812	0.564	1.167
	5	-0.033	0.187	0.032	0.859	0.967	0.671	1.395
한국어 능력	1	-0.096	0.021	20.147	<.0001	0.909	0.871	0.947
취업여부	1	0.182	0.043	17.907	<.0001	1.199	1.102	1.304
생활수준	1	0.050	0.010	22.940	<.0001	1.051	1.030	1.07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 731 , 732 , 733 , 734 , 735 , 736 , 737 , 738 , 739 , 740 , 741 , 742 , 743 , 744 , 745 , 746 , 747 , 748 , 749 , 750 ,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 871 , 872 , 873 , 874 , 875 , 876 , 877 , 878 , 879 , 880 ,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909 , 910 ,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 921 , 922 , 923 , 924 , 925 , 926 , 927 , 928 , 929 , 930 ,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 1071 , 1072 , 1073 , 1074 , 1075 , 1076 , 1077 , 1078 , 1079 , 1080 ,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 1091 , 1092 , 1093 , 1094 , 1095 , 1096 , 1097 , 1098 , 1099 , 1100 , 1101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1107 , 1108 , 1109 , 1110 , 1111 , 1112 , 1113 , 1114 , 1115 , 1116 , 1117 , 1118 , 1119 , 1120 , 1121 , 1122 , 1123 , 1124 , 1125 , 1126 , 1127 , 1128 , 1129 , 1130 , 1131 , 1132 , 1133 , 1134 , 1135 , 1136 , 1137 , 1138 , 1139 , 1140 , 1141 , 1142 , 1143 , 1144 , 1145 , 1146 , 1147 , 1148 , 1149 , 1150 , 1151 , 1152 , 1153 , 1154 , 1155 , 1156 , 1157 , 1158 , 1159 , 1160 , 1161 , 1162 , 1163 , 1164 , 1165 , 1166 , 1167 , 1168 , 1169 , 1170 ,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 1231 , 1232 , 1233 , 1234 , 1235 , 1236 , 1237 , 1238 , 1239 , 1240 ,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 1271 , 1272 , 1273 , 1274 , 1275 , 1276 , 1277 , 1278 , 1279 , 1280 , 1281 , 1282 , 1283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9 , 1290 , 1291 , 1292 , 1293 , 1294 , 1295 , 1296 , 1297 , 1298 , 1299 , 1300 ,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 1431 , 1432 , 1433 , 1434 , 1435 , 1436 , 1437 , 1438 , 1439 , 1440 ,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 1471 , 1472 , 1473 , 1474 , 1475 , 1476 , 1477 , 1478 , 1479 , 1480 ,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 1511 , 1512 , 1513 , 1514 , 1515 , 1516 , 1517 , 1518 , 1519 , 1520 , 1521 , 1522 , 1523 , 1524 , 1525 , 1526 , 1527 , 1528 , 1529 , 1530 , 1531 , 1532 , 1533 , 1534 , 1535 , 1536 , 1537 , 1538 , 1539 , 1540 , 1541 , 1542 , 1543 , 1544 , 1545 , 1546 , 1547 , 1548 , 1549 , 1550 , 1551 , 1552 , 1553 , 1554 , 1555 , 1556 , 1557 , 1558 , 1559 , 1560 , 1561 , 1562 , 1563 , 1564 , 1565 , 1566 , 1567 , 1568 , 1569 , 1570 , 1571 , 1572 , 1573 , 1574 , 1575 , 1576 , 1577 , 1578 , 1579 , 1580 ,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 1641 , 1642 , 1643 , 1644 , 1645 , 1646 , 1647 , 1648 , 1649 , 1650 , 1651 , 1652 , 1653 , 1654 , 1655 , 1656 , 1657 , 1658 , 1659 , 1660 ,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1887 , 1888 , 1889 , 1890 , 1891 , 1892 , 1893 , 1894 , 1895 , 1896 , 1897 , 1898 , 1899 , 1900 ,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 1911 , 1912 , 1913 , 1914 , 1915 , 1916 , 1917 , 1918 , 1919 , 1920 , 1921 , 1922 , 1923 , 1924 , 1925 , 1926 , 1927 , 1928 , 1929 , 1930 , 193								

향후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연령, 결혼 기간,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이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사항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일본 국적의 이주여성은 기타 국적의 이주여성에 비해 향후 출산 의도가 3.86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연령이 많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향후 출산의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향후 출산 의도는 0.972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결혼기간이 1년 증가하면 향후 출산의도가 0.759배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능력을 5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한국어 능력이 한 등급 증가할수록 향후 출산 의도는 0.909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생활수준이 높고, 이주 여성이 취업을 한 경우 향후 출산 의도가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을 9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생활수준이 1등급 높아지면, 향후 출산 의도가 1.0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p<0.01$),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취업하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해 향후 출산의도가 1.19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은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출산의도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을 독립변수로 놓고 현재 자녀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3〉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Odds Ratio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절편	1	2.715	0.281	93.331	<.0001		
	1	-0.307	0.170	3.262	0.071	0.736	0.527 1.026
	2	-0.062	0.172	0.128	0.720	0.940	0.672 1.317
	3	0.114	0.166	0.466	0.495	1.120	0.809 1.552
	4	0.230	0.170	1.821	0.177	1.258	0.901 1.757
	5	0.264	0.190	1.927	0.165	1.302	0.897 1.891
국적	6	0.435	0.615	0.501	0.479	1.545	0.463 5.154
	7	0.017	0.208	0.007	0.934	1.017	0.676 1.530
	8	0.640	0.208	9.523	0.002	1.897	1.263 2.850
	9	0.304	0.187	2.643	0.104	1.355	0.939 1.954
	10	0.085	0.245	0.120	0.729	1.089	0.673 1.761
	11	0.010	0.429	0.001	0.981	1.010	0.436 2.342
나이	1	-0.119	0.003	1192.905	<.0001	0.888	0.882 0.894
결혼기간	1	0.416	0.009	1952.002	<.0001	1.517	1.489 1.545
	1	-0.305	0.273	1.247	0.264	0.737	0.431 1.259
	2	-0.253	0.213	1.421	0.233	0.776	0.512 1.177
학력	3	-0.321	0.207	2.391	0.122	0.726	0.483 1.090
	4	-0.260	0.205	1.610	0.204	0.771	0.516 1.152
	5	-0.163	0.207	0.621	0.431	0.850	0.567 1.274
한국어능력	1	0.243	0.023	114.789	<.0001	1.276	1.220 1.334
취업여부	1	-0.913	0.045	409.714	<.0001	0.401	0.368 0.439
생활수준	1	-0.107	0.011	92.069	<.0001	0.898	0.879 0.918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이 현재 자녀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적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태국 국적의 이주여성은 기타 국적의 이주여성에 비해 현재 자녀가 있을 확률이 1.89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연령이 많고 취업을 한 경우, 또는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현재 자녀가 있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현재 자녀가 있을 확률이 0.888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현재 취업을 한 이주여성은 취업을 하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해 자녀가 있을 확률이 0.401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생활수준을 9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생활수준이 1등급 높아질수록 현재 자녀가 있을 확률이 0.898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또는 한국어 능력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현재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농촌의 이주여성에게 자녀가 있을 확률은 1.5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한국어 능력을 5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한국어 능력이 1단계 높아지면 현재 자녀가 있을 확률이 1.27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p<0.01$).

3.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은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을 독립변수, 현재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포아송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포아송회귀모형을 적용한 결과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한국어능력, 취업여부가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arameter	DF	Estimate (B)	Standard Error	95% Wald Confidence Limits	exp(B)	Chi- Square	Pr > ChiSq
절편	1	0.272	0.100	0.075 0.469		7.340	0.007
국적	1	-0.024	0.062	-0.146 0.098	0.976	0.150	0.703
	2	-0.083	0.066	-0.213 0.046	0.920	1.590	0.208
	3	-0.101	0.062	-0.223 0.021	0.904	2.610	0.106
	4	0.109	0.062	-0.013 0.231	1.115	3.070	0.080
	5	0.317	0.064	0.192 0.442	1.373	24.680	<.0001
	6	-0.121	0.175	-0.465 0.222	0.886	0.480	0.489
	7	-0.017	0.084	-0.182 0.147	0.983	0.040	0.836
	8	0.108	0.073	-0.035 0.251	1.114	2.200	0.138
	9	-0.183	0.074	-0.327 -0.039	0.833	6.190	0.013
	10	-0.014	0.091	-0.192 0.165	0.986	0.020	0.880
	11	0.017	0.162	-0.301 0.334	1.017	0.010	0.917
나이	1	-0.006	0.002	-0.010 -0.003	0.994	14.460	0.000
결혼기간	1	0.042	0.002	0.037 0.046	1.043	350.0	<.0001
학력	1	0.061	0.098	-0.131 0.253	1.063	0.390	0.535
	2	-0.045	0.066	-0.174 0.084	0.956	0.470	0.492
	3	-0.023	0.063	-0.145 0.100	0.977	0.130	0.719
	4	-0.023	0.061	-0.143 0.096	0.977	0.150	0.702
	5	-0.007	0.061	-0.127 0.113	0.993	0.010	0.905
한국어능력	1	0.031	0.009	0.014 0.048	1.031	12.760	<.0001
취업여부	1	-0.046	0.016	-0.077 -0.015	0.955	8.370	0.004
생활수준	1	-0.001	0.004	-0.009 0.007	0.999	0.080	0.78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 261 , 262 , 263 , 264 , 265 , 266 , 267 , 268 , 269 , 270 , 271 , 272 , 273 , 274 , 275 , 276 , 277 , 278 , 279 , 280 , 281 , 282 , 283 , 284 , 285 , 286 , 287 , 288 , 289 , 290 , 291 , 292 , 293 , 294 , 295 , 296 , 297 , 298 , 299 , 300 ,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 351 , 352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 361 ,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 421 , 422 , 423 , 424 , 425 , 426 , 427 , 428 , 429 , 430 , 431 , 432 , 433 , 434 , 435 , 436 , 437 , 438 , 439 , 440 , 441 , 442 , 443 , 444 , 445 , 446 , 447 , 448 , 449 , 450 , 451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 461 , 462 , 463 , 464 , 465 , 466 , 467 , 468 , 469 , 470 , 471 , 472 , 473 , 474 , 475 , 476 , 477 , 478 , 479 , 480 , 481 , 482 , 483 , 484 , 485 , 486 , 487 , 488 , 489 , 490 , 491 , 492 , 493 , 494 , 495 , 496 , 497 , 498 , 499 , 500 , 501 , 502 , 503 , 504 , 505 , 506 , 507 , 508 , 509 , 510 , 511 , 512 , 513 , 514 , 515 , 516 , 517 , 518 , 519 , 520 , 521 , 522 , 523 , 524 , 525 , 526 , 527 , 528 , 529 , 530 , 531 , 532 ,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 581 , 582 , 583 , 584 , 585 , 586 , 587 , 588 , 589 , 590 ,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 619 , 620 ,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 631 , 632 , 633 , 634 , 635 , 636 , 637 , 638 , 639 , 640 , 641 , 642 , 643 , 644 , 645 , 646 , 647 , 648 , 649 , 650 , 651 , 652 , 653 ,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 661 , 662 , 663 , 664 , 665 , 666 , 667 , 668 , 669 , 670 , 671 , 672 , 673 , 674 , 675 , 676 , 677 , 678 , 679 , 680 , 681 , 682 , 683 , 684 , 685 , 686 , 687 , 688 , 689 , 690 ,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 731 , 732 , 733 , 734 , 735 , 736 , 737 , 738 , 739 , 740 , 741 , 742 , 743 , 744 , 745 , 746 , 747 , 748 , 749 , 750 , 751 , 752 , 753 , 754 , 755 , 756 , 757 , 758 , 759 , 760 , 761 , 762 , 763 , 764 , 765 , 766 , 767 , 768 , 769 , 770 , 771 , 772 , 773 , 774 , 775 , 776 , 777 , 778 , 779 , 780 , 781 , 782 , 783 , 784 , 785 , 786 , 787 , 788 , 789 , 790 , 791 , 792 , 793 , 794 , 795 , 796 , 797 , 798 , 799 , 800 , 801 , 802 , 803 , 804 , 805 , 806 , 807 , 808 , 809 , 810 , 811 , 812 , 813 , 814 , 815 , 816 , 817 , 818 , 819 , 820 , 821 , 822 , 823 , 824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 831 , 832 , 833 , 834 , 835 , 836 , 837 , 838 , 839 , 840 , 841 , 842 , 843 , 844 , 845 , 846 , 847 , 848 , 849 , 850 , 851 , 852 , 853 , 854 , 855 , 856 , 857 , 858 , 859 , 860 , 861 , 862 , 863 , 864 , 865 , 866 , 867 , 868 , 869 , 870 , 871 , 872 , 873 , 874 , 875 , 876 , 877 , 878 , 879 , 880 , 881 , 882 , 883 , 884 , 885 , 886 , 887 , 888 , 889 , 890 , 891 , 892 , 893 , 894 , 895 , 896 , 897 , 898 , 899 , 900 , 901 , 902 , 903 , 904 , 905 , 906 , 907 , 908 , 909 , 910 , 911 , 912 , 913 , 914 , 915 , 916 , 917 , 918 , 919 , 920 , 921 , 922 , 923 , 924 , 925 , 926 , 927 , 928 , 929 , 930 , 931 , 932 , 933 , 934 , 935 , 936 , 937 , 938 , 939 , 940 , 941 , 942 , 943 , 944 , 945 , 946 , 947 , 948 , 949 , 950 , 951 , 952 , 953 , 954 , 955 , 956 , 957 , 958 , 959 , 960 , 961 , 962 , 963 , 964 , 965 , 966 , 967 , 968 , 969 , 970 , 971 , 972 , 973 , 974 , 975 , 976 , 977 , 978 , 979 , 980 , 981 , 982 , 983 , 984 , 985 , 986 , 987 , 988 , 989 , 990 , 991 , 992 , 993 , 994 , 995 , 996 , 997 , 998 , 999 , 1000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1008 , 1009 , 1010 , 1011 , 1012 , 1013 , 1014 , 1015 , 1016 , 1017 , 1018 , 1019 , 1020 , 1021 , 1022 , 1023 , 1024 , 1025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 1031 , 1032 , 1033 , 1034 , 1035 , 1036 , 1037 , 1038 , 1039 , 1040 , 1041 , 1042 , 1043 , 1044 , 1045 , 1046 , 1047 , 1048 , 1049 , 1050 , 1051 , 1052 , 1053 , 1054 , 1055 , 1056 , 1057 , 1058 , 1059 , 1060 , 1061 , 1062 , 1063 , 1064 , 1065 , 1066 , 1067 , 1068 , 1069 , 1070 , 1071 , 1072 , 1073 , 1074 , 1075 , 1076 , 1077 , 1078 , 1079 , 1080 , 1081 , 1082 , 1083 , 1084 , 1085 , 1086 , 1087 , 1088 , 1089 , 1090 , 1091 , 1092 , 1093 , 1094 , 1095 , 1096 , 1097 , 1098 , 1099 , 1100 , 1101 , 1102 , 1103 , 1104 , 1105 , 1106 , 1107 , 1108 , 1109 , 1110 , 1111 , 1112 , 1113 , 1114 , 1115 , 1116 , 1117 , 1118 , 1119 , 1120 , 1121 , 1122 , 1123 , 1124 , 1125 , 1126 , 1127 , 1128 , 1129 , 1130 , 1131 , 1132 , 1133 , 1134 , 1135 , 1136 , 1137 , 1138 , 1139 , 1140 , 1141 , 1142 , 1143 , 1144 , 1145 , 1146 , 1147 , 1148 , 1149 , 1150 , 1151 , 1152 , 1153 , 1154 , 1155 , 1156 , 1157 , 1158 , 1159 , 1160 , 1161 , 1162 , 1163 , 1164 , 1165 , 1166 , 1167 , 1168 , 1169 , 1170 , 1171 , 1172 , 1173 , 1174 , 1175 , 1176 , 1177 , 1178 , 1179 , 1180 , 1181 , 1182 , 1183 , 1184 , 1185 , 1186 , 1187 , 1188 , 1189 , 1190 , 1191 , 1192 , 1193 , 1194 , 1195 , 1196 , 1197 , 1198 , 1199 , 1200 , 1201 , 1202 , 1203 , 1204 , 1205 , 1206 , 1207 , 1208 , 1209 , 1210 , 1211 , 1212 , 1213 , 1214 , 1215 , 1216 , 1217 , 1218 , 1219 , 1220 , 1221 , 1222 , 1223 , 1224 , 1225 , 1226 , 1227 , 1228 , 1229 , 1230 , 1231 , 1232 , 1233 , 1234 , 1235 , 1236 , 1237 , 1238 , 1239 , 1240 , 1241 , 1242 , 1243 , 1244 , 1245 , 1246 , 1247 , 1248 , 1249 , 1250 , 1251 , 1252 , 1253 , 1254 , 1255 , 1256 , 1257 , 1258 , 1259 , 1260 , 1261 , 1262 , 1263 , 1264 , 1265 , 1266 , 1267 , 1268 , 1269 , 1270 , 1271 , 1272 , 1273 , 1274 , 1275 , 1276 , 1277 , 1278 , 1279 , 1280 , 1281 , 1282 , 1283 , 1284 , 1285 , 1286 , 1287 , 1288 , 1289 , 1290 , 1291 , 1292 , 1293 , 1294 , 1295 , 1296 , 1297 , 1298 , 1299 , 1300 , 1301 , 1302 , 1303 , 1304 , 1305 , 1306 , 1307 , 1308 , 1309 , 1310 , 1311 , 1312 , 1313 , 1314 , 1315 , 1316 , 1317 , 1318 , 1319 , 1320 , 1321 , 1322 , 1323 , 1324 , 1325 , 1326 , 1327 , 1328 , 1329 , 1330 , 1331 , 1332 , 1333 , 1334 , 1335 , 1336 , 1337 , 1338 , 1339 , 1340 , 1341 , 1342 , 1343 , 1344 , 1345 , 1346 , 1347 , 1348 , 1349 , 1350 , 1351 , 1352 , 1353 , 1354 , 1355 , 1356 , 1357 , 1358 , 1359 , 1360 , 1361 , 1362 , 1363 , 1364 , 1365 , 1366 , 1367 , 1368 , 1369 , 1370 , 1371 , 1372 , 1373 , 1374 , 1375 , 1376 , 1377 , 1378 , 1379 , 1380 , 1381 , 1382 , 1383 , 1384 , 1385 , 1386 , 1387 , 1388 , 1389 , 1390 , 1391 , 1392 , 1393 , 1394 , 1395 , 1396 , 1397 , 1398 , 1399 , 1400 , 1401 , 1402 , 1403 , 1404 , 1405 , 1406 , 1407 , 1408 , 1409 , 1410 , 1411 , 1412 , 1413 , 1414 , 1415 , 1416 , 1417 , 1418 , 1419 , 1420 , 1421 , 1422 , 1423 , 1424 , 1425 , 1426 , 1427 , 1428 , 1429 , 1430 , 1431 , 1432 , 1433 , 1434 , 1435 , 1436 , 1437 , 1438 , 1439 , 1440 , 1441 , 1442 , 1443 , 1444 , 1445 , 1446 , 1447 , 1448 , 1449 , 1450 , 1451 , 1452 , 1453 , 1454 , 1455 , 1456 , 1457 , 1458 , 1459 , 1460 , 1461 , 1462 , 1463 , 1464 , 1465 , 1466 , 1467 , 1468 , 1469 , 1470 , 1471 , 1472 , 1473 , 1474 , 1475 , 1476 , 1477 , 1478 , 1479 , 1480 , 1481 , 1482 , 1483 , 1484 , 1485 , 1486 , 1487 , 1488 , 1489 , 1490 , 1491 , 1492 , 1493 , 1494 , 1495 , 1496 , 1497 , 1498 , 1499 , 1500 , 1501 , 1502 , 1503 , 1504 , 1505 , 1506 , 1507 , 1508 , 1509 , 1510 , 1511 , 1512 , 1513 , 1514 , 1515 , 1516 , 1517 , 1518 , 1519 , 1520 , 1521 , 1522 , 1523 , 1524 , 1525 , 1526 , 1527 , 1528 , 1529 , 1530 , 1531 , 1532 , 1533 , 1534 , 1535 , 1536 , 1537 , 1538 , 1539 , 1540 , 1541 , 1542 , 1543 , 1544 , 1545 , 1546 , 1547 , 1548 , 1549 , 1550 , 1551 , 1552 , 1553 , 1554 , 1555 , 1556 , 1557 , 1558 , 1559 , 1560 , 1561 , 1562 , 1563 , 1564 , 1565 , 1566 , 1567 , 1568 , 1569 , 1570 , 1571 , 1572 , 1573 , 1574 , 1575 , 1576 , 1577 , 1578 , 1579 , 1580 ,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 1641 , 1642 , 1643 , 1644 , 1645 , 1646 , 1647 , 1648 , 1649 , 1650 , 1651 , 1652 , 1653 , 1654 , 1655 , 1656 , 1657 , 1658 , 1659 , 1660 ,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 1691 , 1692 , 1693 , 1694 , 1695 , 1696 , 1697 , 1698 , 1699 , 1700 , 1701 , 1702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 1711 , 1712 , 1713 , 1714 , 1715 , 1716 , 1717 , 1718 , 1719 , 1720 , 1721 , 1722 , 1723 , 1724 , 1725 , 1726 , 1727 , 1728 , 1729 , 1730 , 1731 , 1732 , 1733 , 1734 , 1735 , 1736 , 1737 , 1738 , 1739 , 1740 , 1741 , 1742 , 1743 , 1744 , 1745 , 1746 , 1747 , 1748 , 1749 , 1750 , 1751 , 1752 , 1753 , 1754 , 1755 , 1756 , 1757 , 1758 , 1759 , 1760 , 1761 , 1762 , 1763 , 1764 , 1765 , 1766 , 1767 , 1768 , 1769 , 1770 , 1771 , 1772 , 1773 , 1774 , 1775 , 1776 , 1777 , 1778 , 1779 , 1780 , 1781 , 1782 , 1783 , 1784 , 1785 , 1786 , 1787 , 1788 , 1789 , 1790 , 1791 , 1792 , 1793 , 1794 , 1795 , 1796 , 1797 , 1798 , 1799 , 1800 , 1801 , 1802 , 1803 , 1804 , 1805 , 1806 , 1807 , 1808 , 1809 , 1810 , 1811 , 1812 , 1813 , 1814 , 1815 , 1816 , 1817 , 1818 , 1819 , 1820 , 1821 , 1822 , 1823 , 1824 , 1825 , 1826 , 1827 , 1828 , 1829 , 1830 , 1831 , 1832 , 1833 , 1834 , 1835 , 1836 , 1837 , 1838 , 1839 , 1840 , 1841 , 1842 , 1843 , 1844 , 1845 , 1846 , 1847 , 1848 , 1849 , 1850 , 1851 , 1852 , 1853 , 1854 , 1855 , 1856 , 1857 , 1858 , 1859 , 1860 , 1861 , 1862 , 1863 , 1864 , 1865 , 1866 , 1867 , 1868 , 1869 , 1870 , 1871 , 1872 , 1873 , 1874 , 1875 , 1876 , 1877 , 1878 , 1879 , 1880 , 1881 , 1882 , 1883 , 1884 , 1885 , 1886 ,							

기간이 1년씩 증가할수록 평균 자녀수는 1.04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한국어 능력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평균 자녀수는 1.03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현재 취업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해 현재 평균 자녀수가 0.955배로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주여성에 비해 현재 평균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현재 평균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다음은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을 독립변수, 사회참여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서 사회참여의지 항목은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외국 출신주민으로서의 의견제시 문항으로 각각 3점 척도(1: 참여하지 않음, 2: 참여, 3: 적극참여)로 측정되었으며, 두 문항의 평균값으로 사회참여의지를 측정하였다. 사회참여 의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적합성을 판단한 결과 $F\text{-value}=36.16(p<0.01)$ 으로 나타나 적합하여 다중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text{adjusted-} R^2$)는 0.0378로 본 모형은 3.78%의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5-5〉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95% Confidence Limits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Pr > t-value
절편	1	2.220	0.066	2.090 2.350		33.520	<.0001
국적	1	-0.143	0.042	-0.225 -0.060	-0.092	-3.400	0.001
	2	-0.018	0.043	-0.103 0.066	-0.008	-0.430	0.669
	3	0.017	0.041	-0.064 0.098	0.013	0.410	0.678
	4	-0.017	0.042	-0.099 0.066	-0.008	-0.400	0.692
	5	-0.029	0.045	-0.116 0.059	-0.012	-0.650	0.518
	6	-0.298	0.129	-0.552 -0.045	-0.017	-2.310	0.021
	7	0.121	0.054	0.015 0.226	0.024	2.240	0.025
	8	0.182	0.050	0.085 0.280	0.044	3.660	0.000
	9	0.115	0.047	0.022 0.207	0.034	2.420	0.016
	10	-0.175	0.061	-0.295 -0.056	-0.027	-2.880	0.004
	11	-0.241	0.105	-0.447 -0.035	-0.018	-2.300	0.022
나이	1	-0.005	0.001	-0.006 -0.003	-0.069	-6.320	<.0001
결혼기간	1	-0.001	0.002	-0.003 0.003	-0.002	-0.210	0.837
학력	1	-0.300	0.066	-0.428 -0.171	-0.046	-4.570	<.0001
	2	-0.308	0.048	-0.402 -0.213	-0.149	-6.370	<.0001
	3	-0.245	0.047	-0.337 -0.154	-0.171	-5.240	<.0001
	4	-0.123	0.046	-0.213 -0.033	-0.093	-2.670	0.008
	5	0.006	0.046	-0.085 0.096	0.003	0.120	0.904
한국어능력	1	0.025	0.006	0.014 0.036	0.041	4.480	<.0001
취업여부	1	0.001	0.011	-0.020 0.022	0.001	0.070	0.942
생활수준	1	-0.005	0.003	-0.011 0.000	-0.015	-1.990	0.046

F-value:36.16(p<0.01), adjusted- R^2 : 0.0378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1 , 2 , 3 , 4 , 5 , 6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사회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적,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생활수준이 사회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적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몽골(0.024, $p<0.05$), 태국(0.044, $p<0.01$), 캄보디아국(0.034, $p<0.05$) 국적의 이주여성은 기타 국적의 이주여성에 비해 사회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조선족)(-0.092, $p<0.01$), 대만(-0.017, $p<0.05$), 우즈베키스탄(-0.027, $p<0.01$), 러시아(-0.018, $p<0.05$) 국적의 이주여성은 기타 국적의 이주여성에 비해 사회참여 의

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회귀계수로 각 변수들의 상대적인 사회참여의지에 대한 증감을 나타낸다.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사회참여 의지는 -0.00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회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력을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고학력자에 비해 사회참여 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무학(-0.046, $p<0.01$), 초등학교(-0.149, $p<0.01$), 중학교(-0.171, $p<0.01$), 고등학교(-0.093, $p<0.01$), 대학현재(0.0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이 1단위 증가하면 사회참여 의지는 0.0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생활수준이 1단위 높아질수록 사회참여의지는 -0.005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를 요약하면 몽골, 태국,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여성, 이주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참여의지가 높은 반면, 중국(조선족), 대만,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이 이주여성,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참여 의지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절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형분석

1.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형1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로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적, 연령,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여부, 생활수준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으며,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경로분석은 AMOS 7.0을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경로분석에 앞서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변수

측정 문항의 구성과 각 변수의 신뢰도를 측정하고자 Cronbach's alpha 값을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넓은 의미에서 측정의 오류발생이 없는 정도로 연구대상의 응답결과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느냐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신뢰도 측정방법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적일관성방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0.7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5-6〉 측정 변수의 신뢰도분석

변수	측정문항	Cronbach's α
가족관계		0.833
사회관계	1 1 1 1 1	0.607
정부지원	(,)	0.870

위의 〈표 5-6〉에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가족관계 0.833, 정부지원 0.870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기준인 0.7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가족관계와 정부지원 변수들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회관계 변수는 신뢰계수가 0.607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의 〈표 5-7〉과 〈표 5-8〉은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모형의 다양한 적합지수

를 제시하였으며, 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림 5-1] 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림 5-1] 과 같이 설정된 모형1을 적용한 결과 다음 <표 5-7> 과 같은 적합지수를 얻었다. $\chi^2=1002.32$, $df=6(p: 0.00)$, $RMR=0.069$, $RMSEA=0.089$, $GFI=0.988$, $AGFI=0.911$, $NFI=0.955$, $NNFI=0.955$, $CFI=0.955$ 로 나타나 모형 적합 지표인 8개의 지표 중 5 개 지표만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모형1의 적합도 검정

적합 지수	χ^2	df	χ^2/df	RMR	RMSEA	GFI	AGFI	NFI	NNFI	CFI
평가 기준			≤ 3	≤ 0.05	≤ 0.05	≥ 0.9	≥ 0.9	≥ 0.9	≥ 0.9	≥ 0.9
측정값	1002.3	6	167.0	0.07	0.089	0.988	0.91	0.955	0.955	0.955

연구모형 1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의 <표 5-8> 과 같다. 각 변수의 유의성은 C.R(critical rati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C.R>1.96$ 인 경우 각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종속변수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가족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형에 포함된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여부 및 생활수준의 5가지 일반적 특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 중 결혼기간 (-0.172 , $C.R=-20.977$), 직업여부(-0.071 , $C.R=-9.327$), 학력(-0.044 , $C.R=-5.898$)의 순으로 가족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생활수준 (0.157 , $C.R=21.596$), 한국어능력(0.139 , $C.R=17.596$)은 가족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도록 가족관계

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어능력(-0.061, C.R=-7.488), 결혼기간(-0.025, C.R=-3.017), 직업여부(-0.020, C.R=-2.591)의 순으로 사회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력(0.102, C.R=13.291), 생활수준(0.064, C.R=8.553)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정부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한국어능력(-0.315, C.R=-44.021), 결혼기간(-0.232, C.R=-31.191), 직업여부(-0.089, C.R=-12.990)의 순으로 정부지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0.023, C.R=3.426)은 정부지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원 요구가 더 커짐을 의미한다.

〈표 5-8〉 모형1에 대한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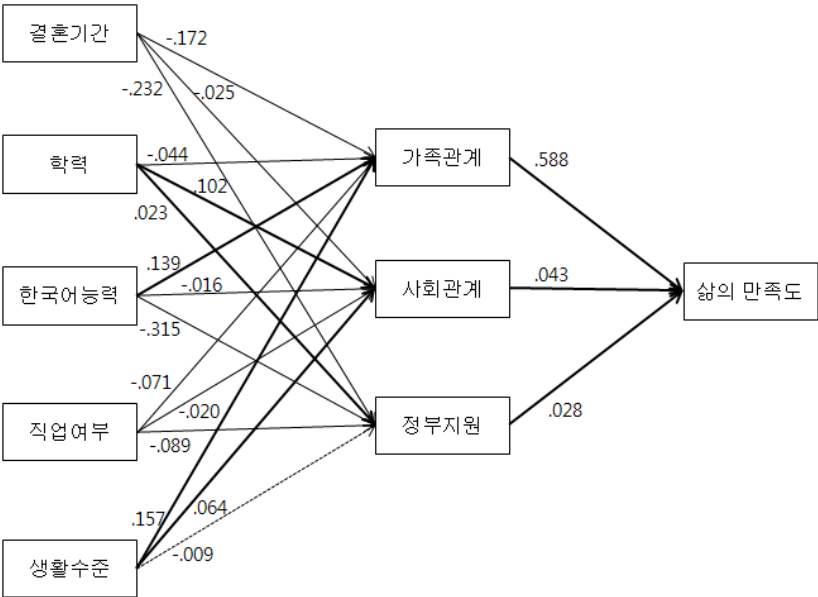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C.R.
가족관계	결혼기간	-0.031	0.001	-0.172	-20.977**
	학력	-0.035	0.006	-0.044	-5.898**
	한국어능력	0.099	0.006	0.139	17.596**
	직업여부	-0.116	0.012	-0.071	-9.327**
	생활수준	0.068	0.003	0.157	21.596**
사회관계	결혼기간	-0.006	0.002	-0.025	-3.017**
	학력	0.108	0.008	0.102	13.291**
	한국어능력	-0.058	0.008	-0.061	-7.488**
	직업여부	-0.044	0.017	-0.020	-2.591*
	생활수준	0.037	0.004	0.064	8.553**
정부지원	결혼기간	-0.063	0.002	-0.232	-31.191**
	학력	0.028	0.008	0.023	3.426**
	한국어능력	-0.340	0.008	-0.315	-44.021**
	직업여부	-0.222	0.017	-0.089	-12.990**
	생활수준	-0.006	0.004	-0.009	-1.331
만족도	가족관계	0.722	0.007	0.588	97.835**
	사회관계	0.040	0.006	0.043	7.066**
	정부지원	0.023	0.005	0.028	4.695**

* p<0.05, ** p<0.01

마지막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고려한 결과 가족관계(0.588, C.R=97.835), 사회관계(0.043, C.R=7.066), 정부지원(0.02, C.R=4.695)순으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와 정부지원에 비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5-1]의 경로도에서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각각 나타내며, 가는 실선은 부의관계, 굵은 실선은 정의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5-1] 모형 1의 경로도



2.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형2

다음의 〈표 5-9〉와 〈표 5-10〉은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일반적 사항과 삶의 만족도가 기대 자녀수(현재 자녀수+희망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모형의 다양한 적합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 삶의 만족도 및 기대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림 5-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림 5-1]과 같이 설정된 모형2를 적합한 결과 다음 〈표 5-9〉과 같은 적합지수를 얻었다. $\chi^2=1161.023$, $df=10$ ($p: 0.00$), $RMR=0.152$, $RMSEA=0.094$, $GFI=0.979$, $AGFI=0.923$, $NFI=0.854$, $NNFI=0.592$, $CFI=0.854$ 로 나타나 모형 적합 지표인 8개의 지표 중 GFI, AGFI 2개 지표만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설정된 모형 2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사용한 것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반영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모형 2의 적합성을 차치하고 연구모형 2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0〉과 같다. 각 변수의 유의성은 C.R(critical rati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C.R>1.96$ 인 경우 각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기간(-0.183, $C.R=-19.073$), 학력(-0.119, $C.R=-13.600$), 직업여부(-0.031, $C.R=-3.418$)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

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생활수준(0.222, C.R=26.400), 한국어능력(0.124, C.R=13.804)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사회참여의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025, C.R=2.798), 기대 자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농촌 거주 이주여성일수록 사회참의 의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표 5-9〉 모형2의 적합도 검정

적합지수	χ^2	df	χ^2/df	RMR	RMSEA	GFI	AGFI	NFI	NNFI	CFI
평가기준			≤3	≤0.05	≤0.05	≥0.9	≥0.9	≥0.9	≥0.9	≥0.9
측정값	1161.0	10	116.1	0.152	0.094	0.979	0.923	0.854	0.592	0.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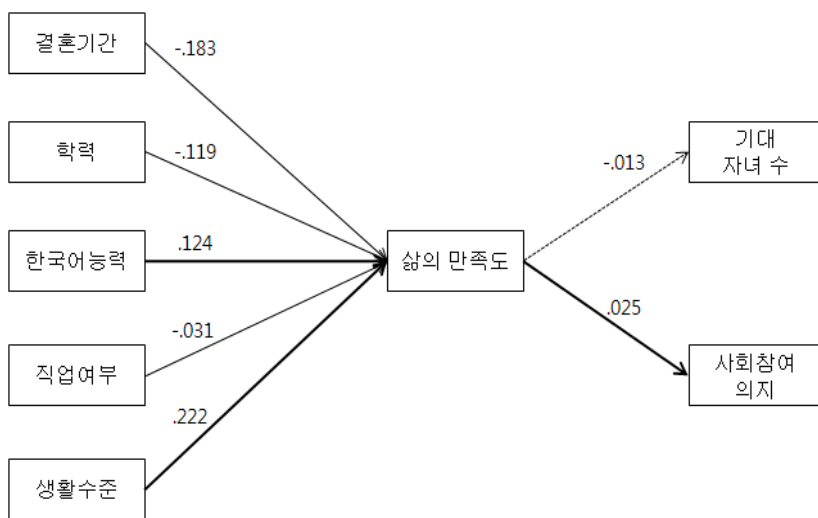
〈표 5-10〉 모형2에 대한 추정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C.R.
삶의 만족도	결혼기간	-0.039	0.002	-0.183	-19.073**
	학력	-0.116	0.009	-0.119	-13.600**
	한국어능력	0.116	0.008	0.124	13.804**
	직업여부	-0.063	0.018	-0.031	-3.418**
	생활수준	0.118	0.004	0.222	26.400**
기대 자녀수	삶의 만족도	-0.013	0.008	-0.013	-1.496
사회참여 의지	삶의 만족도	0.017	0.006	0.025	2.798**

** p<0.01

다음의 [그림 5-2]의 경로도에서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 가는 실선은 부의관계, 굵은 실선은 정의관계를 나타낸다. 점선으로 표시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를 기입한 것이다.

[그림 5-2] 모형 2의 경로도



3.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모형3

다음의 <표 5-11> 과 <표 5-12> 는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및 삶의 만족도가 기대 자녀수(현재 자녀수 + 희망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의 다양한 적합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 삶의 만족도 및 기대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림 5-3] 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림 5-3] 과 같이 설정된 모형3.1를 적합한 결과는 다음 <표 5-11> 과 같다. 모형의 적합 지수는 $\chi^2=1959.290$, $df=16$ ($p: 0.00$), $RMR=0.121$, $RMSEA=0.099$, $GFI=0.973$, $AGFI=0.890$, $NFI=0.893$, $NNFI=0.635$, $CFI=0.894$ 로 나타나 모형 적합 지표인 8개의 지표 중 GFI 1개 지표만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 설정된 모형 3.1은 본 연구의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1의 적합성 결과를 차치하고 연구모형 3.1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2〉와 같다. 각 변수의 유의성은 C.R(critical rati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C.R > 1.96$ 인 경우 각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종속변수 가족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기간(-0.183, $C.R = -18.426$), 직업여부(-0.065, $C.R = -7.030$), 학력(-0.054, $C.R = -5.959$)의 순으로 가족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어능력(0.160, $C.R = 17.143$), 생활수준(0.152, $C.R = 17.552$)은 가족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어능력(-0.057, $C.R = -5.923$), 결혼기간(-0.028, $C.R = -2.697$)의 순으로 사회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력(0.098, $C.R = 10.411$), 생활수준(0.063, $C.R = 6.987$)은 사회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정부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기간(-0.325, $C.R = -36.051$), 한국어능력(-0.269, $C.R = -31.907$), 생활수준(-0.032, $C.R = -4.014$)의 순으로 정부지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직업여부는 정부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고려한 결과 가족관계(0.583, $C.R = 80.344$), 사회관계(0.044, $C.R = 5.973$), 정부지원(0.041, $C.R = 5.646$) 순으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와 정부지원에 비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만족도를 고려한 결과 사회관계(0.084, C.R=9.344)는 기대 자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관계가 활발할수록 기대 자녀수가 많아짐을 의미하고, 반대로 정부지원(-0.031, C.R=-3.468)은 기대 자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기대 자녀수가 적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삶의 만족도를 고려한 결과 만족도(-0.034, C.R=-3.210)는 사회참여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지원(0.234, C.R=26.952), 사회관계(0.103, C.R=11.884), 가족관계(0.06, C.R=5.606)는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사회관계가 활발할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참여 의도가 높아지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11〉 모형3.1의 적합도 검정

적합지수	χ^2	df	χ^2/df	RMR	RMSEA	GFI	AGFI	NFI	NNFI	CFI
평가기준			≤3	≤0.05	≤0.05	≥0.9	≥0.9	≥0.9	≥0.9	≥0.9
측정값	1959.2	16	122.4	0.121	0.099	0.973	0.890	0.893	0.635	0.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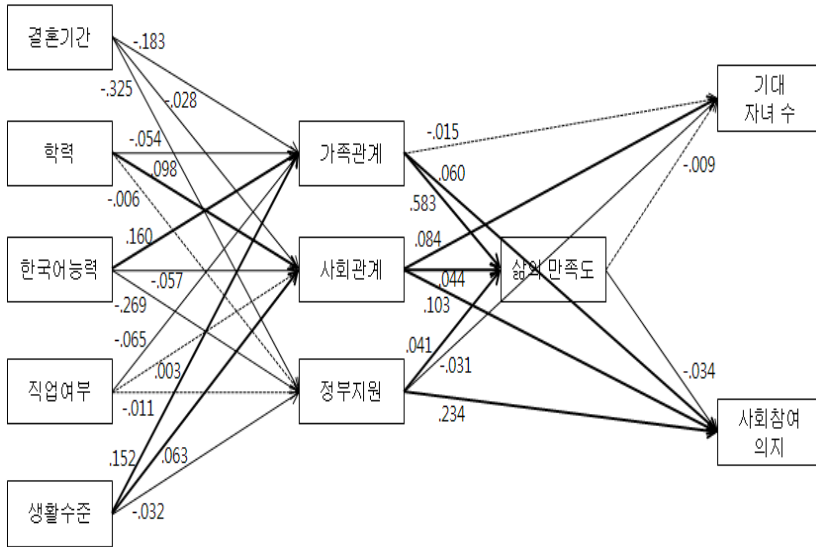
〈표 5-12〉 모형3.10에 대한 추정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C.R.
가족관계	결혼기간	-0.031	0.002	-0.183	-18.426**
	학력	-0.041	0.007	-0.054	-5.959**
	한국어능력	0.117	0.007	0.160	17.143**
	직업여부	-0.106	0.015	-0.065	-7.030**
	생활수준	0.064	0.004	0.152	17.552**
사회관계	결혼기간	-0.006	0.002	-0.028	-2.697**
	학력	0.100	0.010	0.098	10.411**
	한국어능력	-0.056	0.010	-0.057	-5.923**
	직업여부	0.008	0.021	0.003	0.362
	생활수준	0.035	0.005	0.063	6.987**
정부지원	결혼기간	-0.080	0.002	-0.325	-36.051**
	학력	-0.006	0.009	-0.006	-0.685
	한국어능력	-0.288	0.009	-0.269	-31.907**
	직업여부	-0.026	0.020	-0.011	-1.325
	생활수준	-0.019	0.005	-0.032	-4.014**
만족도	가족관계	0.743	0.009	0.583	80.344**
	사회관계	0.041	0.007	0.044	5.973**
	정부지원	0.036	0.006	0.041	5.646**
기대 자녀수	가족관계	-0.019	0.013	-0.015	-1.389
	사회관계	0.076	0.008	0.084	9.344**
	정부지원	-0.026	0.007	-0.031	-3.468**
	만족도	-0.009	0.011	-0.009	-0.832
사회참여 의지	가족관계	0.052	0.009	0.060	5.606**
	사회관계	0.067	0.006	0.103	11.884**
	정부지원	0.139	0.005	0.234	26.952**
	만족도	-0.023	0.007	-0.034	-3.210**

** p<0.01

다음의 [그림 5-3]의 경로도에서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각각 나타내며, 가는 실선은 부의관계, 굵은 실선은 정의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5-3] 모형 3.1의 경로도



다음의 <표 5-13> 과 <표 5-14> 는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및 삶의 만족도가 기대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본 모형 3.2는 모형 3.1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던 일반사항의 직업여부를 제외하고 설정한 모형이다.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모형의 다양한 적합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 삶의 만족도 및 기대 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림 5-3] 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림 5-3] 과 같이 설정된 모형3.2를 적합한 결과 다음 <표 5-13> 과 같다. 모형의 적합 지수는 <표 5-13> 에서와 같이 $\chi^2 = 1861.12$, $df=14$ ($p: 0.00$), $RMR=0.132$, $RMSEA=0.103$, $GFI=0.972$, $AGFI=0.890$, $NFI=0.886$, $NNFI=0.634$, $CFI=0.886$ 로 나타나, 모형 3.1과 마찬가지로 모형 적합 지표인 8개의 지표 중 GFI 1개 지표만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설정된 모형 3.2는 본 연구의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2의 적합성 결과를 차치하고 연구모형 3.2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4〉와 같다. 각 변수의 유의성은 C.R(critical rati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C.R>1.96인 경우 각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종속변수 가족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기간(-0.204, C.R=-21.317), 학력(-0.058, C.R=-6.341)의 순으로 가족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생활수준(0.156, C.R=17.908), 한국어능력(0.154, C.R=16.542)은 가족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뛰어날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어능력(-0.057, C.R=-5.921), 결혼기간(-0.027, C.R=-2.726)의 순으로 사회관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력(0.099, C.R=10.565), 생활수준(0.063, C.R=6.972)은 사회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정부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기간(-0.330, C.R=-39.437), 한국어능력(-0.271, C.R=-32.369), 생활수준(-0.032, C.R=-4.034)의 순으로 정부지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모형 3.1의 결과 정부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모형 3.2에서 정부지원과 학력의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을 고려한 결과 가족관계(0.583, C.R=80.344), 사회관계(0.044, C.R=5.973),

정부지원(0.041, C.R=5.646) 순으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관계는 사회관계와 정부지원에 비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만족도를 고려한 결과 사회관계(0.084, C.R=9.344)는 기대 자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관계가 활발할수록 기대 자녀수가 많아짐을 의미하고, 반대로 정부지원(-0.031, C.R=-3.468)은 기대 자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기대 자녀수가 적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 삶의 만족도를 고려한 결과 만족도(-0.034, C.R=-3.210)는 사회참여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지원(0.234, C.R=26.952), 사회관계(0.103, C.R=11.884), 가족관계(0.06, C.R=5.606)는 정부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사회관계가 활발할수록,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참여 의도가 높아지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13〉 모형3.2의 적합도 검정

적합 지수	χ^2	df	χ^2/df	RMR	RMSEA	GFI	AGFI	NFI	NNFI	CFI
평가 기준			≤3	≤0.05	≤0.05	≥0.9	≥0.9	≥0.9	≥0.9	≥0.9
측정값	1861.12	14	132.937	0.132	0.103	0.972	0.890	0.886	0.634	0.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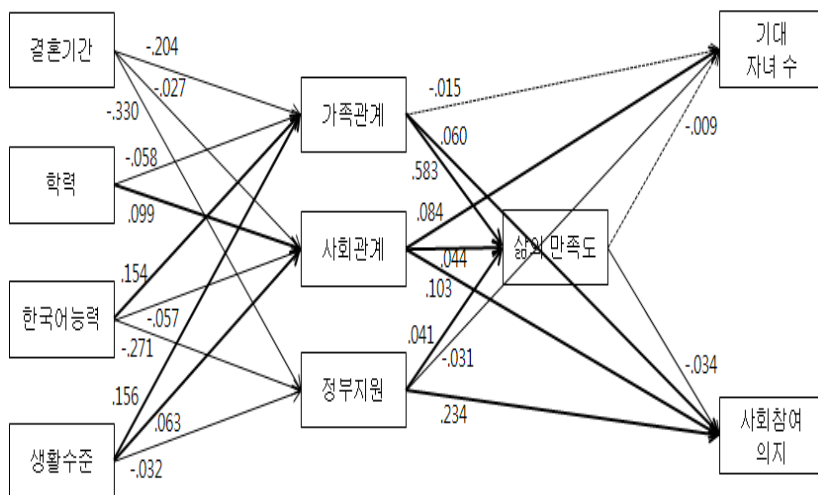
〈표 5-14〉 모형3.20에 대한 추정치

종속변수	독립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C.R.
가족관계	결혼기간	-0.034	0.002	-0.204	-21.317**
	학력	-0.044	0.007	-0.058	-6.341**
	한국어능력	0.113	0.007	0.154	16.542**
	생활수준	0.065	0.004	0.156	17.908**
사회관계	결혼기간	-0.006	0.002	-0.027	-2.726**
	학력	0.101	0.010	0.099	10.565**
	한국어능력	-0.056	0.009	-0.057	-5.921**
	생활수준	0.035	0.005	0.063	6.972**
정부지원	결혼기간	-0.081	0.002	-0.330	-39.437**
	한국어능력	-0.289	0.009	-0.271	-32.369**
	생활수준	-0.019	0.005	-0.032	-4.034**
만족도	가족관계	0.743	0.009	0.583	80.346**
	사회관계	0.041	0.007	0.044	5.973**
	정부지원	0.036	0.006	0.041	5.646**
기대 자녀수	가족관계	-0.019	0.013	-0.015	-1.389
	사회관계	0.076	0.008	0.084	9.344**
	정부지원	-0.026	0.007	-0.031	-3.468**
	만족도	-0.009	0.011	-0.009	-0.832
사회참여 의지	가족관계	0.052	0.009	0.060	5.606**
	사회관계	0.067	0.006	0.103	11.884**
	정부지원	0.139	0.005	0.234	26.951**
	만족도	-0.023	0.007	-0.034	-3.210**

** p<0.01

다음의 [그림 5-4]의 경로도에서 실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각각 나타내며, 가는 실선은 부의관계, 굵은 실선은 정의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5-4] 모형 3.2의 경로도



4.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모형 간 비교

본 연구에서 분석된 3개의 모형을 비교하면 다음 <표 5-15>와 <표 5-16>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5-15> 모형 결과 비교분석1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목 적			
특 징			

〈표 5-16〉 모형 결과 비교분석 2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결혼기간	가족관계	(-)		(-)
학력	가족관계	(-)		(-)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		(+)
직업여부	가족관계	(-)		(-)
생활수준	가족관계	(+)		(+)
결혼기간	사회관계	(-)		(-)
학력	사회관계	(+)		(+)
한국어능력	사회관계	(-)		(-)
직업여부	사회관계	(-)		(-)
생활수준	사회관계	(+)		(+)
결혼기간	정부지원	(-)		(-)
학력	정부지원	(+)		(-)
한국어능력	정부지원	(-)		(-)
직업여부	정부지원	(-)		(-)
생활수준	정부지원	(-)		(-)
가족관계	삶의 만족도	(+)		(+)
사회관계	삶의 만족도	(+)		(+)
정부지원	삶의 만족도	(+)		(+)
결혼기간	삶의 만족도		(-)	
학력	삶의 만족도		(-)	
한국어능력	삶의 만족도		(+)	
직업여부	삶의 만족도		(-)	
생활수준	삶의 만족도		(+)	
삶의만족도	현재자녀수		(-)	(-)
삶의만족도	사회참여의지		(+)	(-)
가족관계	현재자녀수			(-)
사회관계	현재자녀수			(+)
정부지원	현재자녀수			(-)
가족관계	사회참여의지			(+)
사회관계	사회참여의지			(+)
정부지원	사회참여의지			(+)

(+): / (-): / (-):

제6절 소결

본 분석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의 저출산 고령화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며 더 나아가 농촌 사회자본의 강화에 기여하는 바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실시됐다.

본 분석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했다.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모형1〉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

- 결혼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지원에 대해 부정적 특성이 강화된다.
-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관계에 적극적이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민감한데 반해 가족관계는 좋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 한국어 능력이 떨어날수록 가족관계는 좋아지는 데 반해 사회관계는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정부지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특성이 강화될 수 있다.
- 직업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에 대해 모두 불만이 높아진다. 이는 취업을 한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을 말해준다.
- 생활수준은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경향을 드러낸다.
- 특히 이러한 독립변인을 기반으로 정적으로 혹은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관계와 정부지원은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특히 가족관계는 무엇보다 우선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중요성이 큼을 모형 1을 통해 확연히 파악할 수 있다.

〈모형2〉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정할 수 있다.

- 결혼기간이 길고 학력이 높고 직업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이에 반해 한국어능력이 뛰어나고 생활수준이 높을 때는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 결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취업, 생활수준 등을 바탕으로 한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사회참여의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자녀를 출산하는 데는 오히려 부적으로 영향을 보이고 있다.

〈모형 3〉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정부지원 등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이러한 변수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의지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 이에 반해 가족관계의 특성은 이주여성들의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고 정부지원도 그다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델링을 종합하면 결혼기간이 오래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일수록 농촌에 정착하면서 스트레스와 불만족 등이 높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회관계가 활발해지거나 정부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정정도 경제적 생활수준이 뒷받침돼야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관계나 사회관계면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혹은 만족도에는 가족관계가 절대적이고, 사회관계나 정부지원도 일정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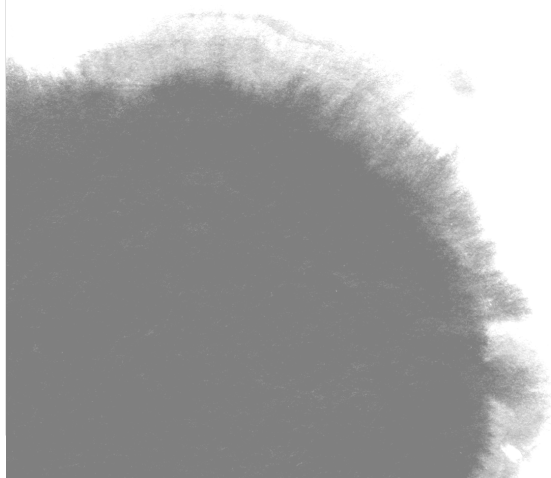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들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를 [그림 5-3] 과 [그림 5-4] 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부 지원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높여 지역사회유지와 농촌 활성화에는 분명한 효과가 기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모색할 경우 참여와 사회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에서 변수간의 관련성이나 각 변수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경로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가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 연구 원자료를 사용함에 기인한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단순히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조사한 것에 그치지 않아, 본 연구의 목적인 농촌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설문지를 체계적으로 작성,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명확히 한다면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면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6장

결혼이주여성의 정착 실태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VI.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상태 파악을 위한 질적 연구

제1 절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현상학

1. 질적연구의 개요

제V장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통계자료를 근거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링을 시도했다.

다양한 통계적 변수를 찾아 일반화에 초점을 맞춘 모델링작업은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해 감에 있어 의미 있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의미가 확인된 변수의 활용은 반다문화주의가 대두되는 등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은 물론, 궁극적으로 본 연구대상인 농촌지역의 사회자본 확대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연장선상으로 제VI장에서는 농촌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처한 여건과 어떤 경험을 통해 현재 정착상태에 이르렀고, 어떤 상황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농촌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를 시도했다.

질적 연구는 앞에서 통계적 연구를 통해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후 맥락과 함께 현 시점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정착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향후 사회자본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

화사회 구축을 위한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는데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 본 장의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무엇보다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연구목적에 부응코자 한다.

2. 현상학적 접근의 질적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질적 접근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지 그 경험의 내용과 의미들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는 오직 한 가지 진실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연역적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하려는 양적연구가 아니라 진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귀납적 성격의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현상학적 접근법’을 통해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체험하는 경험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지향성과 기대를 갖고 지역에 뿌리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⁵⁷⁾

57) 질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접근법으로는 ①문화기술지(ethnography), ②민속학적 방법론(ethnomethodology), ③근거이론(grounded theory), ④생활사연구(life history), ⑤현상학적 접근법(phenomenological approach)이 있다. 이중 문화기술지는 주로 참여관찰을 통해 인간집단의 문화적 생활양식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민속학적 방법론은 사회학자인 Garfinkel(1967)에 의해 체계화됐는데, 현상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영향을 받아 일상적 사회현상을 문맥적으로 파악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즉 강조점은 신의할 수 있는 지식의 경우 이론적 틀 안에서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진다는 관점으로, 주로 체계적인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과 같은 형태로 발전했다. 근거이론은 조사목적이 이론개발에 있으므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일 반화된 이론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거대이론(grand theory)’과 상 대되는 이론으로서 현실 밑바닥으로부터 구축된 이론이라고 해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명명됐다. 생활사연구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연 구자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자료출처로는 자전·전기·일가·편지·수

가. 질적 연구의 특성

현상학적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질적 방법론이 대두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객관성·정확성·실증성·인과성을 찾고자 사회과학은 지금까지 인간행동을 포함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자연과학적 접근법인 양적 접근을 주요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당초 사회현상은 이 같은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이제는 사회과학에서도 방법론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절대적인 도구로 수용되고 있고, 이를 위해 보다 엄밀하고 보다 형식적 적합성을 찾는 접근법이 계속 모색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현상은 다양화되고 변화는 더욱 속도가 빨라져 형식적 적합성을 갖는 도구로만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게 사실이다. 또한 사회과학 내에서도 객관성은 양적 방법 하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절대론적 시각은 인식론적 오류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최원기, 1998: 245~246).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 접근의 한계를 질적 접근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양적이냐 질적이냐, 어느 쪽이 적합성이 높고 유용한 도구냐를 따지기 전에 급변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탐구를 위한 방안으로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진다. 이분법적인 관점을 뛰어넘기 위해 유용성이 증대되는 질적방법론의 특성은 양적방법론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해진다.

즉 질은 양으로 환원되기 이전의 상태로서 ‘개별적 사물의 고유 속성’인 것에 반해, 양은 ‘비교와 특징을 통해 인식되는 관계의 속성’이다.

참·유서·사진 등 다양하다. 현상학적 접근법은 수학자인 Husserl의 영향을 받아 Schütz와 Weber가 체계화한 것으로, ‘논리적 구축물’에 지나지 않는 과학적 세계가 일상적 생활세계에 우선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유적(類的)연구를 본질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의식의 흐름 가운데 소멸해 버리는 단일인식 현상은 현상학적 논구의 대상이 아니다(Husserl, 1950)”는 지적에 근거해 체계화된 방법론이다(최종혁, 2009: 30~34).

또한 사물을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질적 연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개념·범주·표준·척도 등 인위적인 개념을 최소화하는 인식방법을 사용하고 자연언어(natural language)에 주로 의존한다. 이에 반해 양적 연구는 수식·도형·각종 척도 등 표준화가 용이한 인공언어(artificial language)에 의존한다. 아울러 질적 관찰은 어떤 것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양적 관찰은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등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은 차이를 드러낸다(조용환, 2000: 15; Kirk & Miller, 1994: 11; 최종혁, 2009: 23 재인용).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사회로 진입한 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정착해 가는 결혼이주여성은 물론 그 가족의 경험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생각, 기대 등을 파악하는 방안으로서 질적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확인시켜 준다.

나. 현상학의 정의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1764년 람베르트가 처음 사용한 후 칸트, 헤겔 등에 의해 사용됐고 후설에 의해 체계화됐다(엔조 파치, 2001: 9). 후설의 현상학(phenomenology)은 ‘본질을 직관하는 의식에 관한 학’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본질이란 사태 ‘사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된다.⁵⁸⁾

보통 현상이란 나타난 것 혹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만, 후설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의식의 흐름, 즉 인간의 사유과정을 탐구

58) 현상학에서 말하는 ‘본질’은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는 어떤 이념, 즉 언어의 의미다. 본질과 구별되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말한다. 본질과 사실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실은 언어로 구술되고 언어는 의미를 갖게 되며 이 의미가 본질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책상’과 일반적인 의미의 ‘책상’으로 사실과 본질은 구별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과 본질은 구별되면서도 불가분리성(不可分離性)을 갖게 된다. 이처럼 언어로 구술되는 사실의 의미는 직관의 작용에 의해 본질을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竹田靑鳳, 1990: 57~60).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과 사유과정은 감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의식코자 하는 지향성(orientation)으로 귀결된다.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후설의 현상학은 순수한 본질세계를 지향성의 원리에 의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상학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순수한 의식이 지향하는 인간 세계의 이념적인 존재들의 구조에 관한 학으로, 이 존재의 구조는 인간의 순수 의식체험과 그 의식체험에 속에서 지향된 형상속에 있는 것이다.

후설의 현상학은 막스 베버의 이해(Verstehen)의 개념을 받아들인 슈츠에 의해 현상학적 사회학으로 거듭나면서 사회과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러한 후설의 현상학적 전통은 질적방법론을 추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받아들여져 현상을 분석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옴니(Omey)의 경우 “현상학은 살아있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실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명상적 사고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다. 또 반 마넨(Van Manen)은 “각자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생활세계’ 내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과 외양에 대한 연구이고, 그들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해했다. 더글라스와 무스타카스(Douglas & Moustakas)는 철저한 자기탐구, 타인과의 대화, 경험의 창조적 표현 등을 통해 포괄적인 지식을 생성하는데 관심을 가진 바 있다(최종혁, 2009: 34).

다. 현상학적 방법론의 이해

현상학(phenomenology)은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적(類的)연구를 본질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의식의 흐름 가운데 소멸해 버리는 단일인식 현상은 현상학적 논구의 대상이 아니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최종혁, 2009: 30~34). 즉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 즉 ‘사태 그 자체’를 순수하게 직관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태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선 요구되는 것이 현상학적 판단중지(Epoche, 괄호침),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이다. 현상학적 판단중지는 세상 속에서 대상에 대해 상식에 기초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태도(natural attitude)나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take for granted)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고 기존의 가치관과는 다른 엄밀한 사고를 바탕으로 사물이나 사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후설이 현상학적 방법의 특징으로 간주하는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환원’은 질적 연구에서 수집할 자료와 관련해 연구자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당연시하는 태도 등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대상과 사태 그 자체에 관한 원자료를 수집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이남인, 2005: 94~95).

후설의 현상학은 이분법이나 결정론과 상대론, 일원론과 다원론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현상의 이해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모든 상상 가능한 관점을 포함할 수 있게 해준다(최원기, 1998: 250). 이러한 접근은 대상, 더욱이 질적 분석에서 인간에 대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부터 파악하는 기반이 됨으로써 보다 완벽하고 역동적이며 생동감 있는 인식을 하는 힘이 된다. 아울러 이분법적인 접근은 현상과 본질 모두를 볼 수 있게 한다. 다양성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합리적인 관점은 그 자체가 다양성을 배제한 하나의 획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용한 분석틀로 인

식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최원기, 1998: 253).

다양한 배경에서 출발해 수많은 경험을 거쳐 정착에 이르지만 그 비가시적인 속성으로 예측이 어려운 다문화사회의 현상을 파악하는데도 현상학적 방법론이 유용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판단된다.

현상학적 방법론에서 핵심은 지향성(orientation), 즉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다(이남인, 2005: 97). 보통 지향성은 어떤 대상(노에마)에 관한 사고작용(노에시스)으로, 인간의 경우 반드시 ‘무엇에 관해 의식’을 하는 사고를 뜻한다. 인간의 의식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러한 의미는 체험을 통해 명확해진다.

체험을 통해 명확해지는 의미를 탐구하는 의식을 지향성이라 할 때 지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시간지향성(orientation temporelle)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지향성(orientation spatiale)이다. 여기에서 시간지향성은 첫째,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에 의한 시간적 질서의 측면에서의 시간관과 둘째, 의식 속에서의 시간, 즉 시간이 통과하는 장소에서 현재의 상황이 강조되는 시간, 셋째, 물리적 시간개념을 뛰어넘어 시간이 갖는 의미를 보다 포괄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시간성을 포함한다(최원기, 1998: 261).

공간지향성은 인간과 사회의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개인과 다른 개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이뤄지는 거대한 공간이 곧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 자아,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 자아와 타인간의 관계 등에 의해 자아지향성, 타자 중심적 자아지향성(집단 내 자아 지향성), 타자지향성과 집단지향성으로 나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최원기, 1998: 262).

이렇게 구분되는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은 실제로 현상에서는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러한 관련성으로부터 집단의식, 공유정서 등 가치관의 변동성 등을 예측해보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 관계는 〈표

6-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최원기, 1998: 262).

〈표 6-1〉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간의 관계

	시간 지향성	공간 지향성
다차원적	’ ’	
3차원적	’ ’	()
일차원적		

지향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질적 접근으로서 현상학적 방법론에 있어 적응과정이든 정착과정이든 주체들의 의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를 통해 주체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의 의미있는 시도이기도 하다.

현상학에서 ‘지향성’과 함께 중요개념인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상호주관성은 타자가 자아와 똑같이 주관을 갖고 존재하고, 동시에 타자가 자아와 똑같은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자아의 확신을 말한다.

특히 상호주관성은 자아와 타자의 단순한 상호관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갖고 있는 확신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함께 자아와 타자의 상호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竹田靑鳳, 1990: 127~132). 이러한 상호주관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는 자아를 둘러싼 세계의 존재를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호주관성에 의해서 객관세계·문화세계·역사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현상학에서 관심을 두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竹田靑鳳, 1990: 221~222).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은 이처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엄밀한

인식으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확대,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접근방법이 가능함을 열어주는 것이다. 즉 현상학적 환원을 통한 초월적 현상학은 바로 상호주관성이 있기에 보편적인 의미의 사회를 이해하는 기제를 갖게 된다. 아울러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한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상호주관성은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연구윤리와 엄격성

가. 연구 윤리

본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양해 하에 진행된 인터뷰라도 참여자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정보와 진술에 대한 비밀유지와 학문적 목적 외에는 절대 활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셋째, 본 연구자는 철저한 자기고찰로 감정과 편견, 선입견이 개입되는 것을 막는데 힘쓴다. 이는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접근방법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됐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심도있는 차원에서 연구 참여자의 진심과 격의 없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rapport 형성에도 최선을 다한다. 넷째, 상호주관성에 바탕을 둔 이해를 통해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자제함으로써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⁵⁹⁾ 끝으

59)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결혼 이후에도 본국으로의 송금하는 형태, 남편이나 가족내부의 말 못할 상황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존심 등과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무리한 진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로 인터뷰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연구 참여자나 지인 등을 통해 2~3차례 확인, 부족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진실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나.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바와 링콘(Guba & Linchon)이 엄격성 척도로 제시한 사실적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 등을 참고했다. 여기에서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인 신뢰성(credi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는가, 현상에 대해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는가를 말한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또 다른 상황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일반화·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감사(audit)’를 통해 확보코자 했다.⁶⁰⁾ 감사(audit)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지만 질적연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질적 연구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일관되게 연구가 진행되는가 등 과정에 대한 관찰과 감시, 조언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연구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층면접과 결과분석 등에 있어 편견이나 선입견

60)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떻게 농촌에서 어떤 경험과 기대를 갖고 정착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행정 구분상 농촌에 속하는 특정 1개 면(面)을 선정했다. 물론 특정 1개면이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기대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실태를 지역단위에서 연구하는데 용이한 접근성과 효율성, 학문적인 성과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참고로 해서 사례지역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농촌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다양한 출신국가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존재하는 지역, 거주기간이 10여 년 이상 오래된 사례부터 최근 수개월에 지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는 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했다. 더욱이 면지역 전체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교류하면서 앞으로 신뢰와 네트워크, 즉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를 심층적이고 시계열적으로 분석코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됐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또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해결코자 했다.

제2절 자료수집과 본 연구의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첫째,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관할 구역 내에 대해 대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특정한 단위에서 관할 지역 내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제공자를 만나 사전에 다문화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주자 명부를 작성했다. 둘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인터뷰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한 뒤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정했다. 특히 약속을 정하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뒤 보호자와 협력자로서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합석을 선택토록 해 보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다. 셋째, 연구참여자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풍부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비밀보장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필요한 연구임을 밝히고 최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자료수집을 위한 방법은 비 구조화된 개방형의 질문을 한 뒤 연구 참여자가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구술하는 심층면접 방식을 취했다. 인터뷰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윤리적 내용이 포함된 연구동의서에 서명하고 상호 문제인식을 공유한 뒤 동의하에 진행됐다. 그리고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초기 분석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인터뷰를 이어갔다. 보통 1회 인터뷰 시간

은 한 사람당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됐다. 따라서 언어소통이 잘 안되거나 별다른 특이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초기에 인터뷰를 종료했다. 자료수집은 2011년 5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1차 인터뷰가 진행됐고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로 추가인터뷰를 진행, 모두 2회의 인터뷰를 걸쳤다. 본격적인 인터뷰 이전에 본국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나 남편, 시부모와 관련된 내용은 사전 인터뷰 형태로 진행해 각 참여자를 둘러싼 전후 맥락과 환경을 파악하는데도 힘썼다. 그리고 인터뷰 동안 언어적 진술은 물론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 대해 녹음기로 녹취하는 동시에 상황에 대한 별도의 기술을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모든 상황은 방문일지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 구술된 내용의 녹취본은 필사(transcription)과정을 거쳐 별도 보관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분석방법

가. 기존의 현상학적 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 보통 개인적 삶의 경험과 생활세계(life world) 이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체험 내지 경험에 초점을 맞춰 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목적에 따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자체를 본질로 규정해 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대부분 진행돼왔다.

이러한 현상학적 체험연구방법은 콜라찌(Colaizzi), 지오르기(Giorgi), 베너(Benner), 바넨(Vanen), 반 캄(Van Kaam), 무스타카스(Moustakas)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돼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중 콜라찌(Colaizzi)의 경우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 하에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콜라찌(Colaizzi)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해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경험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참여자로부터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제에 그 의미가 반영되어 주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하다. 콜라찌(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르면 보통 7단계로 나뉘지는데, <표 6-2>와 같다.

<표 6-2> Colaizzi의 분석방법

Colaizzi의 분석방법
1.
2.
3.
4.
5.
6.
7.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은 심층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대한 구조적 진술에서 개인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독특한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에서 통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제공된 원자료의 충실한 언어적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독특한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이는 <표 6-3>과 같다.

〈표 6-3〉 Giorgi의 분석방법

Giorgi의 분석방법	
1.	,
2.	,
3.	.
4.	.
5.	.

연구자의 분석방법을 통합한 방법도 등장한다. 스테빅-콜라찌-킨(Stevick-Colaizzi-Keen)의 방법을 수정한 무스타카스(Moustakas)의 분석절차도 마찬가지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연구자는 개인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찾고 의미있는 진술을 나열하며(자료의 수평화), 각각의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 다루며 반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진술을 목록화 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이 진술들은 의미단위로 분류하고 이 단위들을 나열하며 축적적 예를 포함하여 일어난 경험의 조직적 기술을 한다. 셋째, 연구자는 자신의 기술을 반성하고 상상적 변형, 또는 구조적 기술을 사용하여 가능한 모든 의미와 다양한 관점들을 찾고 그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현상에 대한 준거들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구성한다(Creswell, 1998/2005: 185; 강진숙 외, 2009: 23~24 재인용).

크레스웰(Creswell)은 질적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과정의 타당화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화 검증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 과정을 평가하며, 연구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는 방법을 검토한 뒤 자료해석에 있어서도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간의 자가보고와 상호평가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계속 비교하고 구성된 의미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결과를 다시 제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재확인하게 된다는 설명이다(1998/2005: 194; 강진숙 외, 2009: 23~24 재인용).

나. 본 연구의 분석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Colaizzi, Giorgi, Benner, Vanen, Van Kaam, Moustakas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돼 왔다. 이들이 개발한 현상학적 접근은 앞에서도 일부 서술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크게 나눠 i)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피연구자)의 체험을 확보하는 자료수집과정, ii)수집된 연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iii)연구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이남인, 2005: 94).

실제로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학자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통합한 뒤 변형된 접근을 하되 대동소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가능한 한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갖는 태도와 의견, 입장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로 파악,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다른 질적 연구와 차별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에 더해 후셀이 제시한 방법에 보다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 후셀은 『경험과 판단』에서 본질직관의 방법으로서 중요한 세 단계를 제시했다. 즉 i)다양한 변경체를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을 모두 살펴나가는 과정, ii)지속적인 일치속에서 [모든 변경체에 공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직관하는 과정], iii)차이점들을 배제하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직관하는 과정이다. 이

러한 본질직관의 방법은 인간의 본질뿐 아니라 다양한 지향성의 본질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남인, 2005: 99).

이러한 지적에 근거해 후설의 현상학과 그의 접근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성을 탐구하는 데는 기존의 연구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이 지향성은 곧 ‘무엇에 관한 의식’이고, ‘의식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지향성에 대한 설명은 물론, 지향성을 파악하는 노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⁶¹⁾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향성’, 즉 ‘의식의 흐름’을 현상학적 접근법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현상학적 접근법이 연구대상자의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범주화해 주제를 발견하는 것에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연구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작용하는가를 함께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지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시간지향성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규정되고, 공간지향성은 자이지향에서 타지향으로, 집단지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범주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은 상호주관성의 원리를 통해 나타나고 항상 맞물려 작용하는 것이다.

61) 사실 국내의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는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분석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최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성향숙(2010), 홍성하(2010), 윤명숙 외(2010) 등이 최근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연구에서는 이전부터 다양하게 현상학적 접근이 활용되고 있다. 강진숙 외(2009)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상학적 접근의 핵심인 지향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본질로서 경험의 나열에 그치고 있어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 농촌이라는 환경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체험하는 여러 가지 양상과 함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재구성해 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으로서, 소수집단으로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제3절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특징

연구참여자는 정보제공자로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인 2명과 결혼이주여성은 20명 등 모두 22명이다. 결혼이주여성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몽골 1명, 필리핀 2명, 베트남 9명, 중국 4명(한족 2명, 조선족 2명), 태국 1명, 러시아 1명, 싱가포르 1명, 일본 1명 등이다. 이들 20명의 나이는 최소 21세에서 최대 51세이고, 남편들은 최소 37세에서 최대 58세까지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평균나이는 31.9세이고 이들의 배우자는 46.7세로 14.8년의 격차를 보였다. 거주기간은 최소 40일에서 최대 18년까지 다양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수는 임신상태 1명, 1명은 9명, 2명은 4명, 3명은 1명이었고 한명도 없는 경우는 4명이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중 완전 취업상태는 3명으로 모두 신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고, 6~7명 정도는 이웃들의 농사를 돕거나 식당 등에서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며 용돈을 버는 상태였다. 20명 중 남편이 사업을 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앞으로 정규적인 일자리에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표 6-4>와 같다.

〈표 6-4〉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출신국적	나이	결혼 기간	학력	남편특성			시부모 동거여부	자녀수
					나이	학력	직업		
1		30	4		42				(4) (2)
2		24	3		38				(3, 1)
3		34	5		55				
4	()	38	10 10		48				(1)
5	()	28	2011, 3 (3)		39			(),	(1)
6		28	6 6		53			,	(6)
7		70							
8		57							
9		27	3 6		47			(73),	(3) ()
10		22	3 2		37			(70),	(3), 1
11		40	16		50		80 ,		(16,14) , (10)
12		24	2		47		,	80, 76	(2), 1
13		21	1		47		,	75	
14		26	6		42		,		(6, 4)
15		38	10		43		,	71 ,	(11, 9)
16		36	14	,	51		5,000	74 ,	(13)
17		35	8		47		()		(8)
18	3	39	16	()	58				(16)
19		39	5		41		()	(75),	(2)
20		51	18		54		,		
21		36	2 1		52		,	72	(1)
22		21	40		43		()		

2. 인터뷰 분석결과

심층면접을 통해 녹음된 인터뷰 결과는 연구 참여자별로 필사과정을 거쳐 각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만을 선별한 뒤 연구방법론에 기술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류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과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로 각각의 경험적 진술들을 대분류 했다. 그리고 대분류 한 뒤 연구참여자들의 지향성을 파악코자 종축(縱軸)으로는 시간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배치하고, 횡축(橫軸)으로는 각자의 경험을 하위범주와 범주로 나눠 공통적인 체험으로부터 속성을 도출해 추상화하며 설명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먼저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구체화되는데 139개의 의미단위와 12가지의 주제군으로 분류됨을 발견했다. 각 주제군은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갈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가지 주제군은 순서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단지 이 정도 주제군으로 경험이 다양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국제결혼

국제결혼을 주제로 분류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범주로는 ‘취위

진 국제결혼'과 '국제결혼경로의 다양화'이다.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 <11> “국제결혼이 아니라…거창한 생각은 아니예요. 한국이래도 같은 민족 이니까…”
- <10> “이모 소개로…여기 한국 남자 사랑스럽고, 뭐 잘 해주고 뭐 그래서 여기 결혼 했어요.”
- <17> “뭐 소개로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했어요.”
- < 5> “소개로…따뜻한 사람… 이거 뭐야… 한국남자 어떤 남자…좋아요.”
- < 9> “남편 친구소개로…”
- <22> “사촌동생 소개로…”
- < 2> “결혼회사 통해서 많이 하니까…”
- <13>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 <15> “통일교…한국은 하는, 저기 하는, 하느님 땅…”

2) 농촌이해

‘농사일의 어려움’으로 범주화되는 이 주제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농촌 공간이 결혼 전 고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함께, 농사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한국은 잘산다고 해서 결혼해 왔는데 기대만큼 잘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과 농사에 참여하는 과정은 여성으로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 <14> “잘 살아요. 조금 잘 사는데 큰 차이 없어요.”
- <11> “조금 어려웠죠…농사짓고 이러는 게 저기했죠.”

3) 문화적 어려움

문화적 어려움에 관한 주제는 ‘음식’ ‘언어’ ‘생활방식의 차이’로 나뉘었다. 음식의 경우 맛이 너무 매워 적응에 어렵거나 음식자체를 만들지 못해 겪는 고통이었다. 또 언어는 ‘말 자체가 어렵다’ ‘겁이 난다’ ‘말이 안 통한다’ ‘머리 아프다’ ‘답답하다’ ‘쓰기 어렵다’ ‘뜻을 모르겠다’는 등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방식 차이에서는 ‘인사법

이 다르다’ ‘식사예절을 모른다’ ‘지저분하다’ ‘항상 먹을 것을 대접해야 한다’ ‘항상 양말을 신어야’ 등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 <1> “처음엔 너무 매워 힘들었어요. 고추장 같은 거…너무 입이 얼얼하고…안괜찮아요 그리고 고기 많이, 밀가루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어서 너무 안 맛있어요.”
- <14> “네. 처음에는 조금 먹었기 힘들었는데, 2년간 베트남 음식 먹었어요.”
- <16> “필리핀 사람 매운 거 못 먹어요. 전혀 없어요.”
- <9> “한국말 빨리 배우고 싶는데… 답답하고 속상해요.한국말 어려워요. 답답해요. 바빠요. 많이 바빠요. 한국말 못하면 한국생활 못해요…답답해요…한국말 어려워요. 너무 심심해요. 너무 너무 답답해요.”
- <3> “힘들었어요. 많이…하늘만큼 땅만큼 많이요. 음식도 못 먹고 한국말도 안통하고”
- <1> “어려운 것은 많지요…시아머님, 시아버님 같이 사니까 내 뜻대로 잘 할 수 없어서… 나갈 때도 이야기해야 되고 같이 안 먹고 먼저 밥 드셔야 하고 나는 나중에 먹고… 한국은 시어머니 잘 들어야 한다고…”
- <3> “베트남도 하지만 하는 방법이 달라요. 인사하는 것도 달라요. 베트남은 별로 안 친하면 인사 안하는데 한국은 항상 인사해요…다른 것이 많아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 <15> “저는 지저분해서 싫어요. 한국에 와서 힘들었어요. 함께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음식도 안 맞아서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젓가락 넣어서, 여러 사람이 젓가락 넣어서 먹잖아요.”
- <1> “한국에 손님 오면 항상 먹는 것 줘요…필리핀 조금 그러고 안줘도 돼요…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말 항상 신고…필리핀은 안 신어요. 한국사람 많이 오시면 부끄러워요.”

4) 기후차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된 여성들의 경우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기후차이에 따른 고통은 이들에게 거의 문제가 안됐다.

- <15> “겨울 때, 추울 때는 진짜…”
- <16> “말하기…온도 조금…겨울 같은 거…”

5) 고립감·교류단절

이 범주에는 ‘소극적인 인식’ ‘사람이 없음’ ‘서로 믿지 못함’ ‘고국

에 갈 수 없음' 등으로 나뉘어진다. 소극적 인식에는 괜히 주눅이 든다든가 다른 이주여성에게 무관심하다든가 바쁜 일상으로 신경 쓸 시간조차 없다 등의 반응이다. 또한 사람이 없다는 범주에는 젊은 사람,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마을 등 인근에서 찾지 못하는데 따른 단절감이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터놓기 어려운 상황과 자칫 흥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었다. 고국에 갈수 없다는 범주에는 친정을 도울 수 없다는 죄책감과 함께 친정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의 반응으로 특징지어진다.

<12> “한국인 친구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아기 있으니까 친구 조금 있어도 돼요. 친구는 나중에 애기 커서 그 때 만나도 괜찮아요. 아기가 좋아요.”

<18> “옆집 할머니 밖에...”

<9> “너무 심심해요. 너무 너무 답답해요.”

<11> “아무리 애기 많이 해도 고향에 있는 친구처럼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7> “지금 사람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하는 사람이 어딴어요.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말하면 흥이 되요.”

<1> “친정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 병원에 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싶는데 속상해요.”

<9> “네,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아파서 용돈 드리고 싶어요. 못해요. 속상하고 아파요.”

<1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집 생각나서 울었어요. 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6) 가족갈등

이 주제에는 ‘남편과의 갈등’과 ‘고부갈등’으로 요약된다. 남편과의 갈등은 남편의 무시, 무관심, 부부싸움, 소리지름 등으로 표출됐고, 고부갈등은 시어머니의 의심, 참견, 말 안함, 말 안 통함, 기분 상함 등으로 나타났다.

<15> “처음에 막악 화가 많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당신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그랬어요.”

<15> “한국말도 중요하고 한국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해요. 시어머니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어주고 가장 많이 가슴 아파요. 무시하는 것 싫어요. 자꾸 쳐다보고…”

<17> “시댁의 ‘시’자도 싫어요.”

<9> “엄마는 맛없다고 나 안 먹어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방에 그냥 들어가고…말 안 해…나도 말 안해…기분 많이 상해…나빠…난 물 많아서 맛없어요…엄마는 울어요.”

7) 자녀문제

자녀문제와 관련한 범주는 ‘저출산’과 ‘자녀걱정’으로 나뉜다. ‘저출산’의 경우 출산못함, 학원도 못보냄, 학습지도 못함 등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자녀걱정과 관련해서는 놀릴까봐 걱정, 외국인 죄책감, 자녀 위해 국적취득, 이름을 바꿈, 잘 버텨줘야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없는 구조와 아이들 때문에 국적과 이름을 바꾸는 등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시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17>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또 애가 혼자면 외롭고 하니까. 근데 우리상황에서는 꿈도 안 꾸요.”

<14> “신랑이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저도 직장 없으니까 애기 키우는 거 때문에…”

<1> “그런데 걱정이 돼요… 한국 초등학교생들이 보통이 아닌데 외국아이들이라고 놀리고 괴롭힐까봐… 그래서 똑똑하게 키우려고요. 아빠도 나 이 많아서, 나는 조금 걱정이예요. 잘 모르니까 커서 엄마한테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마음이 아플까봐…”

<14> “애들 학교 가기 때문에…한국 국적 취득…”

<17> “우리 애만 잘 하고… 공부 잘 하고 잘 커지고… 우리 애만 바르게 나가고 부모가 못해주니까… 난 그것 밖에 없어요. 난 어떻게 되도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애만 잘 크면 난 상관없어요. 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있으니까…우리 애만 잘 컸으면…우리 애만 문제없이 잘 크면 난 더 이상 바랄게 없어요.”

8) 두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은 폭력에 대해서도 특별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실

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음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했다. 이들은 평온한 듯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폭력적 상황에 일말의 두려움을 보이는 상황이다.

<16>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요. 걱정이 돼요.”

9)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정착과정에서 표면화됐든 표면화되지 않았든 다양한 차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주제에는 ‘무시와 차별’, ‘이상한 시선’, ‘편견과 고정관념’, ‘불편한 차이’ 등으로 범주화된다. 무시와 차별에서는 지랄한다고 하거나 외국인이라고 깔봄, 돈을 적게 주거나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상한 시선의 경우 수근거림, 은근한 따돌림, 자모회에서의 거리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는 것 등으로 인해 불편을 당하는 상황이다. 편견·고정관념과 관련해서는 본국을 안 밝히거나 색안경을 끼고 봄, 중국제 무시 등의 하위범주로 세분화됐다. 중국제 무시의 경우 제품은 물론 이러한 고정관념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1> “남의 나라에 와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무시하고, 지랄하느냐고 돈도 안 주면서 소리 지르고…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외국 사람이라고 조금 주고 돈은 더 받아요.”

<11> “한국인 친구 사귀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벽이 있고…”

<1> “임신했을 때 한 날은 다문화센터에 가려고 버스에 탔는데 아기 데리고 너무 힘들어서 학생한테 자리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외국인 아줌마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안 비켜주고…”

<17> “다들 은근히 그런 느낌…은근히 뭔가 그런 느낌…꼭 싸우지 않아도

여자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그리고 누구한테 지지 않겠구나…그렇게 봐요.”

<11> “특히 아이들 학교 다니면 학교 자모들하고 거리가 많이 있고 외국인 엄마라고 조금 이상하게 해요. 기분 나빠요.”

<15> “외국 사람으로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데 가서는 우리 또 머리끝까지 쳐다봐요.”

<15> “저 그 때, 그 때 제가 아주… 상처 받은 것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했죠? 일어나서 나가면 ‘어찌고저 찌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아. 이게 한국, 한국, 한국 아줌마… 한국 사람들…”

<17> “거기서나 여기나 다 비슷하고 똑같고… 사람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인데…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무엇을 못하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문화가 틀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이 참 이상해요. 다르다고 나뉘어지는 것이 기분 나빠요.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10) 경제적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첩첩산중이다. 그 가운데 가장 옥죄는 어려움은 경제적 궁핍함이다. 이 주제는 ‘빠듯한 생활’, ‘미안함, 속상함’이라는 하위범주로 나뉜다. 빠듯한 생활로 인해 여행을 갈 수 없거나 남편실업상황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친정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마음의 부채까지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17>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게 힘든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경제력요… 경제력이 안정되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가 힘들게 하면 막 화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한이 되고… 예전에는 우리 신랑이 잘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그래서 나도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하는데 입장이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다 해야 하고 생활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9> “엄마 아빠 아파서 용돈 드리고 싶어요… 못해요…속상하고 아파요.”

11)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결혼이주여성들은 계속 밀려오는 어려움을 인해 고통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고마운 사람들도 만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정착에 도움을 주는 주체로는 ‘가족’, ‘이웃’, ‘지역단체’, ‘이주여성동료’, ‘직장의 도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나뉘고 있다. 하위범주로는 신랑이 잘 해줌, 남편의 따뜻함, 친정식구 도와줌, 딸래미 같다고 함, 전화해도 괜찮음, 주변에서 언니가 도와 줌, 고모가 다 얘기해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의 범주에는 잘 해줌, 이웃이 가르쳐 줌, 정이 많음으로 분류됐고, 지역단체의 경우 농협에서의 도움이 눈에 띄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농협다문화대학 등을 통한 정착지원이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여성과의 교류에서는 주변의 많은 중국 사람과 베트남 친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등이 도움이 됐다. 직장의 경우 말을 배울 수 있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동료부터도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는 아주 제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 <10> “남편이 잘해주니까 내가 빨리 한국생활 더 배우고 싶어요. 처음 음식 못 먹었어요…하지만 신랑이 잘했어요. (문화) 많이 달라요. 하지만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할 거예요. 신랑이 너무 잘 해줘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신랑이 엄마, 아빠 많이 도와 줬어요. 베트남 내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수술 안하면 죽는데 신랑이 천 만원 줬어요. 동생 살았어요. 신랑하고 착해요. 베트남 가요.”
- <4> “아주 좋아요. 남편이 맘이 좋아요. 따뜻해요. 따뜻한 사람…마음 좋아요. 한국말 배우고 해요. 남편이 다문화센터 같이 가요.”
- <12> “오빠가 많이 잘해요. 행복해요. 엄마, 아빠 다 잘해줘요. 친정 엄마 처럼…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면 딸내미 같다고 해요. 너무 친하다고…”
- <3> “주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요. 너무 고마워요.”
- <14> “너무 다 잘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쳐 주니까 고맙게 생각해

- 요.”
- <17> “한국 사람들이 정은 있더라구요. 조금 외국…그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 <12> “농협 상무님도 도와주고… 행복해요. 많이…”
- <4> “동료 많이 있어요. 중국사람 조금…베트남 사람 많아요. 이야기해요. 조금…한국말하고…중국사람 만나면 중국말로 해요. 남편 어때요?? 남편 이야기해요. 남편 이야기만해요.”
- <1> “우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좋고 모르는 것들 물어보고 많이 도움이 돼요.”
- <16> “직장에서 한국문화, 한국말 배웠어요. 아이 낳고 집에만 있으면 한국말 못 배워요. 한국말 배우고 경제적으로 도와요. 만약에 집에만 있으면 안돼요. 다른 사람 못 만나요. 직장 가면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말 배우고 다른 사람 문화도 알아요. 이야기하고 말 많이 하고…아기 낳고 집에 있으면 신랑만 있으니까 빨리 못 배워요. 한국말 신랑하고 똑같이 않아요. 한국 사람들 다 달라요. 신랑하고 발음도 틀리고 말도 틀려요.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 <12> “아… 거기 센터에서? 말 많이 배워요. 좋아요.”

12) 희망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행복의 재발견으로 구분되는 범주에는 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며 새로운 각오로 구체화되고 있다.

-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구들에게 한국말과 한국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어요. 처음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친구도 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요. 어떻게 사는지 방법도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말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 <15> “행복하려고 많이 열심히 해요. 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면서 살고 있어요.”
- <10> “내가 이왕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래야 돼요. 신랑이 잘 해 주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아기와 신랑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직면했던 경험의 본질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공간지향성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하위범주	범주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게 되는 기대의 본질은 모두 62개의 의미단위를 통해 7가지의 주제군으로 분류됐다. 즉 ‘정체성의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배려 절실’,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 바뀌야’,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1) 정체성의 재정립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생활세계(life world)에서 다양한 정착경험을 거치며 무엇을 수용하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야할지 모색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거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타인과 관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때로는 ‘확 들이 받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곳곳한 인내심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애쓰고 있다.

<3> “가정은 내가 직접 만들고 가꿔야 돼요. 내 가정은 내가 만들고 행복도 만들어 가고 싶어요…누가 만들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15> “지금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야 행복해요.”

<17> “음 저는 그냥 뭐… 내가 무슨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런 바른 원칙을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밖에 없었어요. 내가 행동을 똑바르게 남에게 손가락질 안하면 누가 날 어찌 그러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7> “나 없을 때 모르지만…처음에 같군다 하잖아요. 자기들 끼리 그러는 것…저는 직선적으로 짜증나게 하면 확 들이 받아요.”

<9>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신랑은 노우…”

<17>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을 것 참고 너그러워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인내력이 생겼어요. 이 문화를 참고 견뎌 내야겠다고…”

2) 적극적인 적응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낯설고 물 설은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른다. 이들은 그래서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혹은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적응에 속도를 낸다.

- <11> “무조건 알아야 하니까 언어가 통해야 돼요. 언어가 통해야 생활을 하든 적응을 하든 하니까...언어와 생활습관 필요...”
- <9> “아니요, 안 해요.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한국말 배워야지요.”
- <9> “내가 한국말 배워야 해요. 어려워요. 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 아기 크니까 한국말 빨리 배워야 돼요. 혼자 빨리 배워야 돼요.”
- <3> “한국에서 내가 사니까 내가 배워야지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사람 만나면 베트남 말을 안 하니까 한국말 배워야 해요.”
- <15> “내가 한국에 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 돼요.”
- <1>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한국문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 <12>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배워지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배워야 돼요.”

3)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영원한 ‘이질적 타자’가 아니라 ‘다르지만 공존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서 이들은 많은 회의를 갖게 된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일방적인 동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주의 입장에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해 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습이나 말, 태도가 다른 자녀들을 한국인으로서 똑같이 대우해

주길 원하고 있다. 자신의 모국문화를 소개하고 싶은 욕구도 적잖이 갖고 있었다.

- <1>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몽골은 못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달라요.”
- <11> “한국의 문화만 짝~ 이러는 분위기인데, 필리핀 이런 데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거든요. 자꾸 이렇게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문화 배워라 그러면 그게 안 받아 지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가르쳐서(손뼉을 치며)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여기만 받아들여라, 이 사람만 모르는데…”
- <1> “한국사람, 몽골사람 나누지 말고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 받아 주고 이해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 <15> “아니, 똑 같은 한국 사람인데 좀 양해 해 주고, 이해 해 주고, 도와 주고 그런…”
- <15> “뭐 TV나오는 거나 그런 거, 뭐…음… 자기 자녀, 자기 애기 다문화 애기 많잖아요. 학교에서… 잘 놀 수 있게끔, 잘 이해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똑 같이 한국사람 같이 놀고 그런 거…”
- <11> “가끔 중국에서 결혼하고 온 사람들이 왜 나만 한국말, 한국문화 배우라고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신랑은 우리말, 내 나라 문화 하나도 모르면서 나만 적응하고 배우라고 하니깐 억울하고 답답하데요.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렇데요.”
- <11> “일단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만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결혼하는 여성들의 문화나 언어를 남편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훨씬 생활하기 편할 것 같아요.”
- <15> “한국사람 좀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 <15> “태국 문화와 태국에 대해서 알려줘 보고 싶어요.”

4) 가족의 배려절실

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동안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다문화가족들은 새삼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남편이 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다.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정적인 가족부양은 물론 자녀양육에도 동참하기 기대하고 있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배려할 줄 아는 시어머니를 요구하고 있다.

- <11> “여자들은 어차피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는 하나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 <22> “아... 싸우지도 않고 서로 얘기하고 때리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 <15> “아이 아빠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속상해요. 아기 아빠가 안가르쳐 줘요. 아기들에게 좀 공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숙제하고 공부할 때 아기 아빠가 관심 갖고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 <1> “신랑은 아기들한테 책 안 읽어줘요.”
- <13>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몰라서요.”
- <16> “가족하고 신랑요...가족이 좀 더 이해하면 도움 되어요. 가족들이 같이 같이 배워서 같이같이 생활하고 같이같이 배워요.”
- <9(남편)> “엄마가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엄마와 동생들 속을 모르잖아...내가 속 터져...힘들다고 나도...”

5)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뀌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교육관련 가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원수가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 위주가 되다보니 적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제대로 교육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소수자 속의 더욱 많은 소수자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임시적·형식적·기본적·일방적인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은 무엇보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너무 멀거나 불편한 교통편 때문에 제대로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내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18> “러시아 책이 없어요.”

<18(남편)>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각 언어별로 통합이 잘 안돼요. 국가에서도 중국 쪽에 위주로 되다보니깐 선생님들이 뭐 인터넷

찾고 별짓거리를 다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러시아어를 좀 한다고 해서 남편도 있다고 해서 한국말로 할라니깐 또 안되더라구요.”

<18> “나요 너무 시끄러워요 공부 못해요.”

<8> “지속적으로 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그냥 많이 하잖아요.”

<9(남편)> “다문화센터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왔는데 형식상 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남편으로 보기에 많이 미흡하지…왜냐하면 글씨가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과 다르니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생활에 필수적인 것…그게 더 필요해…양식…생활양식이 필요해…”

<18:(남편)> “그게 안 맞아요 그게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들어가면 그 수준에 맞지만 이 사람은 이정도 고도 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같이 나가니깐 싫어하는 거예요.”

<9> “처음에 한 번요. 너무 멀어요. 다문화센터 안 가요. 너무 멀어요. 답답해…답답해…”

<3> “다문화센터는 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1> “근처에서 한국말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센터는 너무 멀어요. 버스 타고 교통 나빠요. 아기도 돌인데 너무 멀어요. 혼자 다니는 것 자신 없어요. 공부 안했어요.”

<11> “맞아요. 멀기도 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신랑이 태워다 줘야 하는데 힘들어요.”

<11> “신랑이 왔다갔다 데려갔다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개의 일이지않아요.”

<10> “다문화센터는 안 가요. 바쁘고 거기가 멀어서 힘들어요. 농협에서 하는 다문화대학은 갔어요…가깝게 있고 데리러 와요.”

<16> “다문화센터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너무 멀어요. 교통 많이 불편해요.”

<9(남편)> “가까이서 배울 수 있어야 돼…”

<19(남편)>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차를 또 태워다주고 뭐 또 이래야 하니깐…”

6) 일자리 확대 절실

결혼이주여성들의 또 다른 간절한 문제는 ‘일자리’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통역사라든가,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 유치원선생님 등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무리가 없는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농공단지 등에 일자리가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야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를 못 내고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자녀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웃 일손 돕기나 식당 아르바이트는 힘도 들지만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적지 않은 경우 여성들이 경제적 빈곤상태인데 남편이 실직상태거나 신용불량자, 혹은 농사거리가 없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서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구들에게 한국말과 한국 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어요…”
- <1> “통역해서 배워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친구가 공장에서 일해요. 나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요.”
- <5> “한국말 공부하고 나중에 미용실 해요. 하고 싶어요. 심심하니까…”
- <18> “일단은 경제적으로 저기 하나까, 뭐 일자리 같은 거 해주고 또 그거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능력 같은 거 갖춰 주게끔 해주는 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사일은 신랑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신랑이 그 능력이 안 되면 여자 혼자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 <15> “선생님. 교육 받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되면 자격증 선생님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어린이집 해서 일 할 수 있냐,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자격증만 있어도 누가 나 써 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 했어요.”
- <2> “나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요. 친정 도와주고 싶어요.”
- <13> “아기 낳고 7살에 학교에 가니까 일하고 싶어요. 안 힘든 일로…”
- <9> “회사 가고 싶어요.”
- <10> “나중에 애기 크면 직장 다니고 싶어요.”
- <12> “네. 신랑 도와서요, 일 다니고 싶어요. 가만있으면 누가 돈 주냐…”
- <14> “근데 나라에서 좀 우리 외국사람 이니까 좀 공장에나 만들어서, 가까운데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주말 일 안하구요, 그냥 평일만. 평일 회사에나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구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우리집은 일 하고 싶은데, 할 일이가 없는 거예요.”
- <18(남편)> “우리는 스스로 ○○시내 어디 그… 아니래도 다른 일을 할 때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뭘 알선할 수 있는… 알선해 주고… 뭐 있으면 좋죠 뭐… 그랬으면 여기에 있었을지도 몰라. 직업이 있으면…”

<14> “그 신랑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힘들고…”

7) 지역사회단체 참여 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 이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은 바로 지역사회다. 이웃이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회사, 농협 등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나마 농협 다문화대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친목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는 지역사회의 참여로 이어지며 성공적 정착으로 이끌어 가족 못지않은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면(面) 단위이든 마을(村)단위이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생긴다면 이 같은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농협은 가깝게 있고 여행도 보내줬어요…결혼해서 5년 됐는데 여행 처음 갔는데 너무 좋아요. 경북궁도 가고…연수원…”

<18(남편)> “여기 그 ○○면이면 ○○면. 면 단위 정도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지… 그러면 노인회관처럼 장소가 제공이 돼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교류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 문화라던가… 지금 ○○시청에서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주기적으로 계속 있으면 뭐 누가 꼭 몇 월, 몇 일 모이자 이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서 서로 나누고 쓰면 자기들이 암튼 여기 보니까 베트남 꽤 많은데, 서로 위로가 되지 않겠냐고…”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직면했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기대의 본질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6〉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범주화 결과

시간 지향성 ↓	공간지향성→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하위범주	범주	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절 소결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결혼이주여성 정착경험의 본질’과 ‘결혼이주여성의 기대 본질’로 각각의 진술들을 대분류 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지향성을 파악코자 종축으로는 시간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배치하고, 횡축으로는 각자의 경험을 하위범주와 범주로 나뉘

공통적인 체험으로부터 속성을 도출해 추상화하며 의미를 확대, 설명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한 개인이 특정사회에 이방인으로 유입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 문화적 충격과 갈등, 절망과 포기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이주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략,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이주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신이 본래 태어난 국가의 문화 속에 오래 동안 젖어 있다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이주자들이 겪는 과정과는 많은 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기후나 풍토,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은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 정착해 가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아주 다양하다. 이들이 겪는 경험 가운데 의미를 갖는 단위는 모두 139개로 추출됐고, 이를 범주화해 12개 주제군으로 분류됐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정착 경험의 본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12개의 주제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주제군은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갈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이다. 즉 이들의 진솔 속에서 국제결혼은 이제 특별한 경험은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게 국제결혼임을 국내로 유입된 다양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들은 실증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상화된 국제결혼이지만 이들이 실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과 문제 등은 ‘침침산중’에다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정착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표현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농촌이라는 공간은 기대했던 것만큼 풍요로운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꿈’과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속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힘듦’은 경험의 본질 가운데 핵심을 차지한다. 기후나 풍토 차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그나마 자신의 적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한 이웃의 부재와 폐쇄된 환경 등으로 느끼는 고립감과 교류단절, 가부장적 사고에 오랫동안 젖어있는 가족들의 몰이해는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문제다.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자녀출산과 양육, 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을 흔든다.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 국식 이름을 선택하는 노력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해도 누그러들지 않는 이질적 타자에 대한 차별과, 일부 가정의 개선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부담함을 느끼게 한다. 본국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지원이 일정정도 필요한 가운데 출산한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는 구조로 작용함을 이들의 진술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결혼이주여성들은 나름대로 한국의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따뜻한 남편과 딸처럼 살갑게 대하는 시부모, 이웃들의 정, 지역사회의 관심, 이따금 참여하는 이주여성 모임 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꿈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새로운 각오로 희망을 키워가는 상황이다.

2.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첩첩산중의 어려움과 ‘하늘만큼 땅만큼’ 힘든 정착과정을 거친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이라는 제한된 공간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변화를 주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에스닉 그룹으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에 절실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술들은 모두 62개의 의미단위에서 시간적 지향성과 공간적 지향성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범주화 결과를 통해 7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즉 ‘정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 배려 절실’,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바뀌야’,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되는 정체성의 경우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는 현실인식과 함께 차별적 상황에서도 바른 원칙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물론 외부의 부정한 자극에 대해 ‘확 들이받는’ 방식의 공격적 표출도 있지만 인내력을 갖고 상황을 수용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우선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언어나 문화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한 편견과 일방적인 동화주의정책에 대

해 개선을 주장하고, 보다 큰 아량과 양보, 이해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관용과 포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상대방국가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육의 필요성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부장주의에 젖은 남편들이 자녀양육에 적극 동참할 것과 함께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자상한 시어머니, 다문화가족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며 속내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들 간의 배려가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다문화정책을 일선에서 펼치며 다문화사회를 이끌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즉 중국과 베트남 중심의 운영이나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실태, 연계성 없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 일방적이고 기초중심의 적응교육 등은 관심있는 다문화여성들로부터 외면받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열악해 이용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농촌지역에서는 현재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내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역사나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개업,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취득 등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 또한 직장생활과 함께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주말이 보장되는 일자리, 결혼이주여성들의 빈곤한 경제적 수준 등을 감안한 일자리 알선과 함께 실업상태인 남편에 대한 취업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다. 당초 ‘한국은 잘 산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제 고립된 농촌생활에다 빈곤까지 중첩돼 절망감으로 이어지지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나마 타개책이 일자리로 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농협 등 지역사회 단체들이 운영하는 다문화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데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 간의 대면적

관계가 가능해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수시로 어울릴 수 있는 교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3. 질적 연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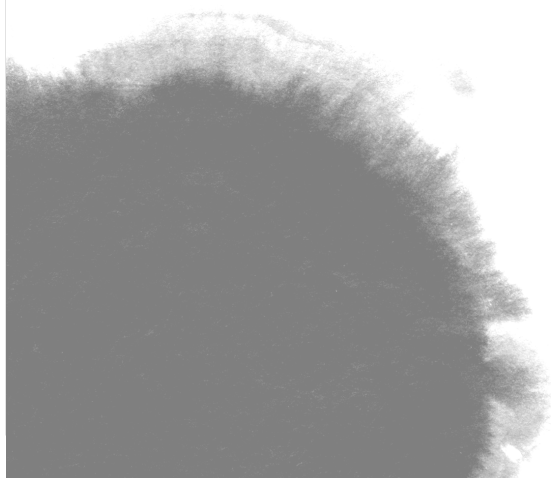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면(面) 단위 전체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을 심층면접해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대표성의 부분이다. 즉 선정된 사례지역이 과연 우리나라 농촌지역으로서 얼마나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먼저 구성하고 엄격한 선정절차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소 편의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둘째,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거주기간이 불과 40일부터 18년 정도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면지역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심층 인터뷰하다 보니 당연히 한국말에 능숙하고 한국 정서를 잘 아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즉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험과 기대 본질이 곧 지역 전체 이주여성들의 경험과 기대 본질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언제 어디서 연구를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요망된다. 셋째, 현상학적 방법론의 절차를 충실하게 따랐더라도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은 크다. 다양한 출신국가들을 배경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을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도출한 경험과 기대 본질이 과연 이들의 실제 경험과 기대본질로 귀결시킬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인터뷰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해도 적지 않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양적연구 위주인데다, 이들의 경험과 기대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한 뒤 현상학에서 중시하는 지향성에 맞춰 이들의 의식 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파악코자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7장

결론



VII. 결론

제1 절 결과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우선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구축을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지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고한 주류사회의 문화적 기반은 변하지 않은 채 동화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우월한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이나 수용 정도로 인식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오랜 순혈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지배받다보니 더욱 더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늘 수밖에 없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다문화주의의 등장은 어떻게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야 할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다문화주의가 강화되는 등 그동안 고수돼 왔던 다문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 갈 것인가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의에 에스니 시티의 관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에스니시티는 주류사회의 민족이나 국민 등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이나 결혼이주여성 등 에스닉 그룹의 입장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주류사회와 보다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착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 즉 에스니시티 이론은 주류사회의 사회구조와 관계방식 속에서 에스닉 그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는가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이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인정-재분배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주류사회의 구조와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강화해 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에스니시티의 다차원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에스닉 그룹들이 어떻게 주류사회와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해 갈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도래했고, 지금까지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촌의 다문화현상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비대칭성이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후 당사자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갈등 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다문화주의의 주요 담론인 인정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관용과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했다.

다문화사회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이 근거하고 있는 공간, 즉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행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 지역은 가족과 이웃, 다양한 단체와 조직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자의 생존을 위한 욕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하는 공간이다. 물론 이 지역은 참여와 협력 못지않게 갈등과 배척, 기득권 등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특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농촌을 주목하는 것도 바로 지역과 다문화가 밀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단지 문화적 적응이 아니라 지역적 정착이 중시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에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족 내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인간은 가족 이외의 누군가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민에 의해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다른 나라와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시작됐다. 더구나 농촌 노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가계계승, 돌봄의 필요충족이라는 도구주의적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은 현재 0.9명에 머물고 정부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 내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어쩔 수 없이 정착해 사는 동정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데서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분명히 인정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본 연구의 논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인 문제인 저출산고

령화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회자본의 관점은 도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동화주의에 국한된 다문화주의의 인식을 뛰어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회자본은 콜만이나 부르디외가 말한 배타적 형태의 개인적 자산 뿐 아니라 푸트남이 지적인 공동의 자산으로서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전통인 효를 존속시킬 뿐 아니라 공존관용 등 새로운 형태의 규범과 신뢰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범주를 지역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접근한다는 사실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높이면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둌으로써 실현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위로부터의 다문화사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다문화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한층 견고하게 다문화사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때 반다문화주의가 예상 밖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판을 확보하는 길이며, 앞으로 크게 늘 수 있는 복지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링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본 연구 분석들을 [그림 3-6] 과 같이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점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그림 3-6] 과 같이 구성한 뒤 이에 기초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재분석해 그 가능성을 실증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국내의 전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13만3,000여명 가운데 7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조사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분석할 경우 어떤 통계적 접

근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모델의 적합성을 다양하게 검토해 봤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읍면단위 이하의 농촌에 해당하는 사례 2만2,788명으로 국한해 진행했다.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한 분석을 했다. 먼저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국적·연령·거주기간·학력·한국어능력·취업여부·생활수준 등의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그 결과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자녀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도 학력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자녀출산에 있어 결혼 후 거주기간(1.157배)과 한국어 능력(1.276배)이 현재 자녀수 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학력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이 높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모형의 적합성은 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즉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1단계, 삶의 만족도가 현재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2단계,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3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적합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애당초 본 연구에 활용된 원자료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구성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모델구성에 사용됐던 변수 대부분의 상관성은 높은 데다 통계적 유의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를 새롭게 작성할 때 모델링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1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크게 늘어났고, 취업도 부적으로 영향을 줬다. 학력의 경우 가족관계에서는 그

다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나 정부지원 등을 받는 데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어능력은 가족 간의 관계증진에는 기여했으나 사회관계나 정부지원을 받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에는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컸고, 이어 사회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은 이 두 가지 변수보다 영향력이 크게 낮아 앞으로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정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며, 사회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최대한 정책적 무게를 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2를 통해서는 삶의 만족도, 성공적인 정착에는 결혼기간과 학력, 취업 등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데 반해 한국어능력과 생활수준은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기대 자녀수에는 오히려 부적 영향력이 큰데 반해 사회참여의지를 강화시키는 데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모형3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수인 ‘취업’을 조정해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그 결과 [그림 5-3] 모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 자녀수(-0.082)에 부적으로, 사회참여 의지(0.060)에는 정적으로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사회관계는 기대자녀수(0.048)와 사회참여의지(0.103)에 각각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정부지원은 현재자녀수(-0.213)에는 부적으로, 사회참여의지(0.234)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림 5-4] 모형에서는 ‘취업’ 변수를 삭제한 결과 [그림 5-3]의 모형이 다소 확연히 드러나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통계적 접근은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이 모두 만족도 제고와 성공적인 정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이어 사회관계의 강화 필요성도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통계적 접근, 양적 접근을 통한 모델링 작업은 결국 현재 자녀수 증가보다 사회참여 의지를 높여 결국은 사회자본 강화에 훨씬 기여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을 뿐 아니라 향후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처한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이들이 농촌지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체험과 어려움이 무엇이고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가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지역은 사과주산지로 알려진 ○○도 ○○시 ○○면 일대의 결혼이주여성 전수인 22명과 일부 가족들이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2011년 5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결과분석에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후설의 현상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일상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구성원들의 사고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고정관념·상식 등을 배제하고서 상호주관성에 기초해 연구참여자의 의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철저한 연구윤리 적용과 자기고찰에 기반해 사실적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을 갖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의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분석결과에 대해 현상학의 핵심인 지향성을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으로 나눠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본질은 경험적 차원과 이들이 경험을 통해 갖는 기대로 내용은 크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경험적 차원의 본질은 다시 12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즉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갈

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풀어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제결혼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가족친구친척소개, 종교, 결혼회사 등 경로는 다양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의 농촌이 생각만큼 ‘코리아 드림’을 느낄 만한 공간은 결코 아님도 알게 된다. 정착 과정은 첩첩산중 어려움의 연속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기후 차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그야말로 얘기할 바도 아니다.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의식차이에 따른 가족갈등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단절에 따른 고립감, 계속되는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외국인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에다 경제적 빈곤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통계청이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관련 통계에서 이혼율과 그 사유가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주여성들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순간순간들을 헤쳐가고 새로운 희망도 갖게 됨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대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대본질은 ‘정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배려절실’,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뀌야’,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단체 참여필요’ 등 7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즉 바른 원칙과 인내심, 때로는 강하게 들이대는 식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만큼 최소한 한국말을 구사하거나 문화적 적응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질적 타자가 아니라 그들도 한국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

로 살 수 있도록 관용과 이해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주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자신의 모국 문화를 한국사회에 소개하고 싶은 강한 욕구도 갖고 있다. 특히 남편과 가족이 정착에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 안정적 가족부양, 자녀양육 동참을 남편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잔소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자상한 시부모가 돼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경우 소수자 배려가 안 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임시적·형식적·기본적·일방적이라는데 불만이 있었다. 더구나 다문화교육의 중추역할을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에서는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데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적합성이 떨어져 차제에 다문화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확대는 농촌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적성이나 장점 등을 살려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길 원한다. 주말 휴일이 보장 되거나 야근 작업을 하지 않아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했다. 남편의 경우 실직 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문화가족 남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 이외에도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웃이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회사, 농협 등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족으로 국한된 고립된 세계로부터 벗어나 보다 넓게 사회를 체험하길 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결혼이주여성들 간의 정기적 교류가 가능하려면 접근성이 있는 읍면 단위에 별도 교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양적연구에서 발견된 특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질적 연구에서 분석된 다문화가족의 경험본질과 기대본질을 종합하면 이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

축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제2절 제언

1.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구축

본 연구는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지원을 통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마을·학교·사회단체·사회적 기업·다문화가족네트워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코자 했다. 이것은 곧 아래로부터 위로 다문화사회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저비용으로 지속적인 다문화사회 구축방안이 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자본 재구축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모색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사회자본이란 마을이나 공동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발전되려

면 현재 계속 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역량이 일정 정도로 지역사회에 투입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사회자본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중요하다.

3.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 선결

정부는 이민청 혹은 인구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농촌의 다문화가족 문제만이라도 먼저 해결하면서 향후 대두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접근 방법이 요망된다. 현재 농촌의 다문화가족에 국한해서 보면 상당수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으로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을 수립,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4.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착교육 필요

각 사·군 단위에서 설립돼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하는 농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10~20km 혹은 20km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방문교육도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연속되지 않아 여러 가지 조건상 제약점이 많아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정착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5. 결혼이주여성 도우미, 자원봉사자,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소통하고 언제든지 가족갈등이나 사회적 차별, 경제적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근거리에서 상시접촉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요구하는 별도의 공간을 거점지역에 설치, 이를 중심으로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도우미나 자원봉사들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각 읍면별로 보면 10여명에서 100여명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각 면 단위에 1곳씩 ‘다문화사랑방’ ‘다문화카페’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 상호주의적 입장에서의 다문화교육으로 이해 제고

현재 다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과 음식 만들기, 전통습관 익히기 등으로 국한돼 있다. 물론 자녀양육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국적취득, 일자리 제공 등으로 계속 확대 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동화주의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쌍방향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스니시티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스닉 그룹으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배우자나 시부모, 가족, 마을주민 등의 상호교육이 절실하다.

7.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과 보살핌에 대한 재인식

우리사회는 가부장제의 전통에 입각해 여전히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을 통해 아이를 낳아 대를 잇고 부모수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도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강하다. 이로 인해 나이가 어린 여성과 특정국가 출신이 계속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결혼 남성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 정착에는 가족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연구의 제V장에서 명확히 검증된 만큼 배우자나 시부모 등 가족들에게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8. 결혼이주여성 and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상의 문제,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 경제적 문제, 또래집단 부재, 자녀양육, 농사 혹은 직업적 조건, 개인적 문제 등으로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이주여성들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진척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9. 상시 통합프로그램 가동해야

결혼이주여성들 간에는 같은 민족이나 같은 언어권, 같은 국가출신이 아니면 소통이나 접촉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주여성들을 최대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의 프로그램이 없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배경이 다양한 점에 착안하고 학력·경제·나이·출신국·종교 등에 따라 수준차이가 크다 보니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적 매개체 없이는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한계가 있고 불안정성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10.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농촌지역에 정착함에 있어 일정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지원하면서 농촌에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는 현실적인 문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주말에 휴일이 보장되는 일자리 등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제공에 앞서 일자리의 특성과 기본적인 규칙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일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진숙·장지호·최종민, 「2008 촛불집회 참여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3(4): 7~48, 2009.
- 곽병산·김희숙,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2호, pp. 1~22, 2009.
- 김경희·엄한진·윤탈일,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한 다문화 사회교육의 가능성과 조건-강원지역 결혼이주여성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2호, pp. 5~276, 2009.
- 김기홍, 『재한화교의 Ethnicity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1995.
- _____, 『한국농촌마을 사회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2006.
- _____, 「농촌마을 사회자본 탐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농촌사회』 제 16집 1호, pp. 7~42, 2006.
- 김도화·신효선,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 19집 2호, pp. 243~273, 2009.
- 김동윤,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정치숙의 및 시민적 자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4호, pp. 38~64, 2009.
- 김성권, 「사회자본과 지속가능한 발전」, 『경상논총』, 제30집, pp. 153~176, 2004.
- 김승권·김유경·조애자·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09년 전국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 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0.
- 김승환, 「다문화담론과 로컬리티의 이원성」, 『로컬리티 인문학』 3, pp.
75~105, 2010.
-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
구』, 제46권, 2호, PP. 129~159. ’, 2007.
- _____,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 2010.
- 김응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 김이산·황정마·이진영,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김정훈,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자본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0.
- 김진숙·이혁무·이근무,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용 연구-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Vol. 30, pp. 135~166, 2010.
- 김철환, 『즐거운 경제학』, 글을읽다, 2008.
- 김진희·박옥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
만족도 비교: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91-232,
2008.
- 김현경·신동주,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현상에 관한 연
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4호, pp. 519~535,
2008.
-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정치학: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
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2006.
- 김현미·김민정·김정선, 「안전한 결혼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제24권, 제1호, pp. 122~155, 2008.
-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2, No. 2, pp. 135~159, 2010.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 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127-144, 2008.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갈등」, 『국제정치론총』, 제48집 제1호, pp. 267~292, 2008.

박대식·최은경,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박영기·박정은, 「다문화사회와 새마을운동: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1호, pp. 65~99, 2010.

박재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2005년도 한국 사회학 전기 사회학대회』, pp. 123~128, 2005.

_____, 「경기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효과 분석」, 『2009년도 한국 사회학 전기 사회학대회』, pp. 137~154, 2009.

_____,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26집, pp. 137~163, 2009.

박정숙·박옥임·김진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6호, pp. 59~70, 2007.

박종일, 「다문화시대의 정체성 연구를 위한 '에스니시티(Ethnicity)'의 개념화-민족, 인종, 종족, 그리고 소수민족과 연결하여-」, 『전국한국사회학대회논문요약집 2006년12월』, pp. 283~285, 2006.

박지영,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관련변인」,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2호, pp. 305~326, 2010.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한일비교」,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76~105, 2010.

설광석,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변화와 사회자본화』, 동아대학교대

학원, 2009.

성향숙,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집 4호, pp. 25~43, 2010.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넘어: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봄/여름호, pp. 79~106, 2009.

심우찬, 『사회복지실천평가론 강의노트 일반대학원』, 대전대학교, 2009.

양순미,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2007.

_____,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2010.

양순미·최규홍·강경하,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4):713-742, 2009.

양애경·이선주·최훈식·김선화·정혁,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양점도·김춘택,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2006, Vol. 16, No. 1, pp. 1~20, 2006.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소하, 2011.

여종현, 『현상학적 심리학과 제일철학』, 한국철학회, Vol. 49, pp. 18~217, 1996.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원승룡, 『현상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회, Vol. 32, pp. 395~426, 1992.

위선주, 「아시아 결혼이주체제에서의 출신국 정책 연구-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pp. 130~160, 2009.

유현숙·곽현근·배지연, 「여성의 동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22권, 2호, pp. 315~337, 2006.

- 윤명숙·이해경, “농촌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20(2): 191-232, 2010.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pp. 72~103, 2008.
- 이근무·김진숙,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Vol. 61, No. 1, pp. 135~162, 2009.
-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24집, 2005.
- _____, 「현상학적 사회학」,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25집, pp. 5~39, 2006.
- 이삼식·박종서·김필숙·김형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행태와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이안지영, 「영주권을 선택한 결혼이주여성의 ‘협상하는 시민권」, 『여성이론』, pp. 28~52, 2009.
- 이용재,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 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3권, 제1호, pp. 131~173, 2010.
- 이종구·임선일, 「재한 중국동포의 에스니시티(ethnicity)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6권 제1호, pp. 343~375, 2010.
- 이종렬·범령령, 「한국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에 관한 연구-중국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pp. 225~247, 2010.
- 이주연·김성일,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의 지역사회와의 갈등양상 및 통합 방향」, 『전국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요약집 2006년 12월』, pp. 241~243, 2006.
- 이창식,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Vol. 17권, 제4호, pp. 717~742, 2010.

- 이태주·권숙인·Julia Martinez-Yamamoto Kaori, 『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이형하,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연구』, 이담, 2010.
- 임석희,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실태와 적응 변인분석」, 『대한지리학회 2009년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3~26, 2009.
- 임선일, 「에스니시티(ethnicity)의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형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6권 제2호, pp. 381~422, 2010.
- 임형백,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1호, pp. 51~74, 2009.
- 임형백·이성우·강동우·김미영,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6(4):743-773, 2009.
- 정광호·최슬기·장윤희,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위탁과 바우처방식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pp. 231~255, 2009.
- 장경호,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의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상기·정운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2호, pp. 229~255, 2010.
- 조용환,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교육과학사, 1999.
- 조홍식 외, 『질적연구방법론』, 학지사, 2005.
- 최병두,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활동」,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제2호, pp. 143~165, 2010.
- _____,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17~39, 2011.

- _____, 「다문화사회와 지구지방적 시민성: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181~203, 2011.
- _____, 『다문화공생-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2011.
- 최병두·임석화·안영진·박배균,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 최신일, 「질적연구의 철학적 배경」, 『대구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Vol. 17, No. 2, pp. 263~275, 2001.
- 최원기, 「현상학적·비이분법적 방법론과 다차원적 분석방법에 대한 일 연구」, 『한국사회학』 제33집 여름호, pp. 245~274, 1998.
- 최정혜,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 2005~2010년 발간된 국내논문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22집, pp. 79~97, 2010.
- 최종렬, 「탈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문화주의」, 『사회이론』, 봄/여름호, pp. 48~78, 2009.
- _____,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이론』, 봄/여름호, pp. 229~286, 2010.
- 최종혁, 『질적연구방법론(현상학적 자기평가론)』, 양서원, 2009.
- 최종혁·안태숙·이은희,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개발을 위한 질적연구-지역 사회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62, No. 4, pp. 297~324, 2010.
- 최현덕,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사이의 갈등에 전제되어 있는 문화개념에 관하여-여성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사회와 철학』, 제20호, pp. 259~284, 2010.
- 최혜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학』, Vol. 61, No. 1, pp. 163~194, 2009.
- 표명환, 「재한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97~120, 2009.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3호, pp. 169~189, 2009.

홍석우, 「다문화 상담이론에서의 방법론적 토대로서 현상학」, 『철학』, 제 105집, pp. 143~168, 2010.

홍성하, “다문화 상담이론에서의 방법론적 토대로서 현상학”, 『철학』 105: 143~168, 2010.

홍지아, 「젠더시작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의 다문화 담론: 경향·동아·조선·한겨레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pp. 644~678, 2010.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홍현미라, 「지역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경험의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점적용」,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 4, pp. 65~92, 2006.

Barth, F., *Ethnic Group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1969.

Berry, J. W., “Socio-Psychological Costs and Benefits of Multiculturalism : A View from Canada”, *Governance and Cultural Diversity*. Ed. J. W. Dacyl and C. Westin. Stockholm: UNESCO and CIEFO, Stockholm University. 29, 7~354. 2000.

Bourdieu, Pierre, *La Distinction*. Minuit(최종철 옮김,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79.

_____, “The Forms of Capital”, pp.241~258,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3/1986.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July), 1988.

_____,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Enzo Paci, *Diario Fenomenologico*, (이찬웅 옮김, 2000, 『어느 현상학자의 일기』, 이후), 1973.
- Fukuyama, F.,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New York (구승희 옮김, 1996,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1995.
- Gibson, M. A.,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2001.
- Granovetter, M.,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1973.
- _____,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1985.
-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Clarendon Press (황민혁·송경호 역,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06.
- Mason, J., *Qualitative Researching*, Sage Publications (김두섭, 1999,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1996.
- Portes, A. & Bach, R. L., *Bach, Latin Journ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 Putnam, R.,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1993.
- _____,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1995.
- Schütz. A., *Collected Papers I*,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62.
- Taylor, C.,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奥田道大 編著, 『都市エスニシティのかの社會學 : 民族/社會共生の意味を問う』, ミネルヴァ書店, 1997.

王甫昌, 『當代臺灣社會的族群想像(Ethnic Imagination in Contemporary Taiwan), 時報文化公司』 (지은주 역, 2008, 『갈등의 정체성-현대 대만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3.

井上俊, 『時間と空間の社會學』, 岩波書店, 2000.

竹田青嗣, 『現象學入門』, 日本放送出版協會,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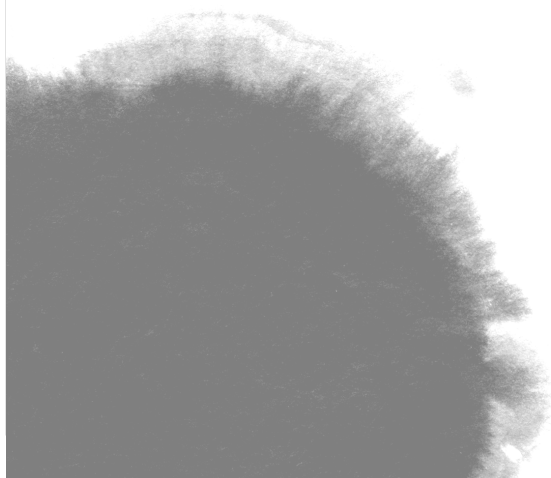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樋口明彦, “現代社會における社會的排除のメカニズム”, 『社會學評論』, Vol.55(1), 2003.

<농민신문> 2011년3월18일자 15면.

<동아일보> 2011년2월8일자 A4면.

<매일경제> 2011년7월27일자 A13면.

부 록





부록1. 질적 연구 원 자료 2차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11: ...			
10: ...			
14: ...			
17: ...			
1: ...			
3: ...			
4:			
5:			
11: ...			
9: ...			
12: ...			
22: ...			
2: ...			
13: ...			
15: ... ,			
14: ...			
19(): ...			
11: ...			
1: ,			
14: ... , 2			
16: ...			
15: ... ,			
15: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5: ...	...	...	...
7: ...			
4: ...			
5: ...			
7: ...			
9: ...			
9: ...			
3: ...			
15: ...			
14: ...			
16: ...			
4: ...			
1: ...			
3: ...			
15: ...			
1: ...			
15: ...	...	...	...
16: ...			
17: ...			
11: ...			
17: ...	...	...	...
12: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				
16: ...				
18: ...				
19(): ...				
1: ...				
9: ...				
1: ...				
17: ...				
11: ...				
17: (?)				
1: ...				
9: ...				
12: ...				
1: ...				
13: ...				
3: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1: ...				
17: ...				
1: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			
15: . , ...			
17: ...			
17: ...			
17: ?			
17: ...			
9: ...			
9: ...			
9: 5 ... ??			
14: ...			
17: ...			
14: , ,			
17: ...			
17: ...			
1: ...			
1: ,			
1: ,			
1: ,			
14: ...			
17: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				
16: ()				
1: ...				
1: ...				
11: ...				
15: ... , ...				
1: ...				
15: ...				
15: ... 10 ...				
17: 1:				
17:				
11: ...				
15: ...				
17: ...				
11: ...				
17:		,		
1: 17: ...				
15: ?				
17: ...				
1: 17:				
15: ... , ?				
17: ...				
17: ...				

[illegible]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1: ...			
1: ...			
1: ...			
13: ...			
16: ...			
12: ...			
1: ...			
11: ...			
11: ...			
10: ...			
12: ... ?			
3: ...			
15: ...			
10: ...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3: ...			
15: ...			
17: ...			
17: ...			
9: ...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17: ...				
11: 				
9:				
9:				
3: ...				
15:				
1: ...				
12:				
1: ...				
11: ... ~ () ...				
1: ... , ...				
15: ... , ... , ...				
15: TV ... , , ... , ...				
11:				
11:				
15: ...				
15: ...				
11: ...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			
22: ...			
15: ...			
1: ...			
13: ...			
16: ...			
9(): ...			
18: ...			
18(): ○○			
18: ...			
8: ...			
9(): 1 ...			
18()			
9: ...			
3: ...			
1: ...			
11: ...			
11: ...			
10: ...			
16: ...			
9(): ...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19():			
3:			
1:			
5:			
18:			
15:			
2:			
13:			
9:			
10:			
12:			
14:			
18():			
14:			
3:			
18():			
17: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9,000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	
	11-13		
	11-14		
	11-15	: , , ,	
	비발간		
	11-16-1	: , , ,	
	11-16-2	:	
	11-17-1	DB :	
	11-17-2	:	
	11-17-3	2011	
	11-17-4	2011	
	11-17-5		
	11-17-6		
	11-17-7		
	11-18		
	11-19	:	
	11-20	:	
	11-21	:	
	11-22		
	11-23		
	11-24	2011	
	비발간	2011	
	비발간	2011	
	11-25	:	
	11-26		

11-27			
11-28			
11-29			
11-30	OECD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2011		
11-37-1			6,000
11-37-2			6,000
		()	
11-37-3	(Healthy Birth Outcomes)		
11-37-4			
11-37-5		()	
11-37-6			
11-37-7			
11-37-8			7,000
		()	
11-37-9			
11-37-10			
11-37-11			
11-37-12			
11-37-13			
11-37-14			
11-37-15			
11-37-16			
11-37-17			
11-37-18			
11-37-19	DB		
비발간			
비발간			
11-37-20			8,000
		()	
11-37-21			
비발간			
11-38			
11-39-1			
11-39-2			
11-39-3			
11-39-4	DB		
11-40-1			
11-40-2			

	11-41-1			
	11-41-2	(ODA)		
	11-42			
	11-43			
	11-44-1			
	11-44-2			
	비발간			
	11-45	200	(Ⅱ)	7,000
	비발간			
	비발간			
	11-46	2011		
	11-47	2011		
■ 2010년	10-01			5,000
	10-02			5,000
	10-03			7,000
	10-04			6,000
	10-05			7,000
	10-06			7,000
	10-07			5,000
	10-08			7,000
	10-09			5,000
	10-10			5,000
	10-11			5,000
	10-12	3		8,000
	10-13			7,000
	10-14		10	7,000
	10-15			7,000
	10-16	2010		8,000
	10-17	OECD		7,000
	10-18	(ETC)		8,000
	10-19			6,000
	10-20			8,000
	10-21			8,000
	10-22		5	8,000
	10-23			7,000
	10-24			5,000
	10-25			7,000
	10-26			7,000
	10-27			6,000
	10-28	2010		10,000
	10-29			6,000
	10-30-1			17,000
	10-30-2			5,000

10-30-3					5,000
10-30-4					6,000
10-30-5					5,000
10-30-6					6,000
10-30-7	.			()	6,000
10-30-8					6,000
10-30-9					7,000
10-30-10					6,000
10-30-11					10,000
10-30-12					6,000
10-30-13					6,000
10-30-14	.				5,000
10-30-15					5,000
10-30-16	.		DB		7,000
10-30-17					6,000
10-30-18					10,000
10-30-19					6,000
10-30-20	()				5,000
10-30-21					7,000
10-31-1	2010				8,000
10-31-2	2010				9,000
10-31-3		DB	(4)	DB	7,000
10-31-4					6,000
10-31-5					6,000
10-31-6					7,000
10-31-7					5,000
10-32-1-1			1		8,000
10-32-1-2			2		11,000
10-32-2		DB			5,000
10-32-3					5,000
10-33				(3)	9,000
10-34			(1)		14,000
10-35					10,000
	(1)				
10-36			(1)	:	8,000
10-37-1	2010				14,000
10-37-2	2009		:		6,000
10-38-1	2008		(II)		11,000
10-38-2	2009		(I)		7,000
10-39			(10)		7,000
10-40			(2)		5,000